

연구보고서 2017-2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고제이 · 고경표

【책임연구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미시모의실험 기반 증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맞춤형 보육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실태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고경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2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17년 12월

저 자 고 제 이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주)다원기획

가 격 6,000원

발간사 <<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간 사회 전반에 걸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정책 개발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등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저출산 대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강화의 측면에서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바, 본 연구를 통해 양호한 자녀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고제이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고경표 연구원의 참여로 완성되었다. 연구의 내용에 관하여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박인화 초빙연구위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준욱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원내외 익명의 검독위원들께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7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17
제1절 가족정책의 유형과 지출 추이	19
제2절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구조적 한계	27
제3장 아동수당제도 운영 사례와 시사점	37
제1절 아동수당제도 운영 체계	39
제2절 기타 수당 지원과 관련 제도 현황	51
제3절 재정 위기와 아동수당제도 변화	68
제4장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77
제1절 보편적 균등 수당 지급	79
제2절 정책 대상 및 양육수당지원 제도와 중복 여부	92
제3절 현금 이외 아동수당 지급 방식의 허용	98

제5장 아동수당제도 운영 방향	105
-------------------------	------------

제1절 개선 과제	107
-----------	-----

제2절 아동수당제도 확대 운영 방향	115
---------------------	-----

참고문헌	121
-------------	------------

부 록	129
------------	------------

캐나다 아동수당 및 기타 지원 제도	129
---------------------	-----

OECD 국가 아동수당 및 기타 가족지원 관련 제도 현황	131
---------------------------------	-----

부모 설문 조사결과	153
------------	-----

표 목차

〈표 1-1〉 아동수당 제도화 추진 노력	12
〈표 2-1〉 자녀 양육 가구 지원의 범위와 유형	20
〈표 2-2〉 출산 관련 가족정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26
〈표 2-3〉 한국의 가족 지원 제도 변천	27
〈표 2-4〉 주요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제도	30
〈표 3-1〉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운영 체계	43
〈표 3-2〉 OECD 국가 아동수당 제도 소득기준 적용 현황	48
〈표 3-3〉 자녀 수별 아동수당 급여 수준 변화	50
〈표 3-4〉 프랑스의 수당 체계(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 적용; CRDS 공제(0.5%) 전 금액)	52
〈표 3-5〉 독일의 부양자녀 소득공제(2016)	55
〈표 3-6〉 주요 국가들의 자녀 관련 세제 혜택	57
〈표 3-7〉 OECD 국가들의 주요 가족지원 제도 운영 현황(휴직 제도 제외)	66
〈표 3-8〉 폴란드의 아동수당 체계(2017년 현재)	70
〈표 3-9〉 영국 아동수당 금액 변화 추이	73
〈표 4-1〉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목적과 지원 대상	80
〈표 4-2〉 2016년도 가구균등화 처분가능소득 10분위별 0-5세 양육아동수 및 시나리오별 아동수당 연간수금액 추정치	89
〈표 4-3〉 정책충격 벡터	90
〈표 4-4〉 시나리오별 성장-분배효과	91
〈표 4-5〉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지급 방식에 대한 지자체 재량권의 인정	98
〈표 4-6〉 중기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2017년도 국회 확정 예산	100
〈표 5-1〉 설문조사 개요	108
〈표 5-2〉 소득구간 별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 행태 변화 유인 인식	109
〈표 5-3〉 아동수당 도입 시 양육 행태 전환 비율	109
〈표 5-4〉 적용 비율 및 이용 시간	111

〈표 5-5〉 기준선 비용 추계 결과: (현행 보육 체계 유지 및 아동수당 10만 원 도입, 0~5세 국비+지방비 합계)	112
〈표 5-6〉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정책 목적에 대한 설문 결과	117
〈표 5-7〉 출산 장려를 위한 아동수당 자녀 수 차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117
부표 1. 캐나다 아동수당 및 기타 지원 제도	129
부표 2. OECD 국가 아동수당 및 기타 가족지원 관련 제도 현황	131

그림 목차

[그림 2-1] OECD 주요국의 가족 지출 추이와 합계출산율	22
[그림 2-2] 아동 연령별 관련 정책 현황	32
[그림 2-3] 아동 연령별 현금 및 현물 지원 수준(OECD 2013년 ppp US\$ 기준)	34
아동 연령별 현금 지원 수준(조세 혜택 포함)	34
아동 연령별 현물 서비스 지원 수준(교육 지출 제외)	34
[그림 2-4] 바람직한 자녀 양육 환경	35
[그림 4-1] OECD 국가의 자녀 양육 가구 지원 구조	93
[그림 4-2] 0~5세 아동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가구환경집단별 가처분소득의 누적밀도분포, 2016 가계동향조사	94
[그림 4-3] 아동수당 지급 연령집단별 소득재분배 효과	95
[그림 5-1] 0~5세 아동 수 전망: 2018~2022	110

Abstract <<

Issues and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e Korea child benefit

Project Head · Ko, Jayee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provide a monthly allowance of 100,000 won for all children under six years old starting from July 2018. This study aims to address problems involved in the initiation of universal child benefits in Korea. For this purpose, chapter 2 and 3 investigate family policies focusing on child benefits across 35 OECD countries. In chapter 4, controversial issues over the government bill including the justification of universal allowance are examined by policy simulations. Finally, chapter 5 presents policy strategies for consolidating related family income support programs into child benefit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대체적 생산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이 더 이상 노인부양비와 관련한 재정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출산율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저출산 대응 전략에도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 발전이 야기하는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 확대라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현금 급여가 갖는 아동수당의 정책적 기능과 가치를 살펴본다. 또한 현존하는 관련 제도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우리 사회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먼저 제2장에서는 OECD 35개국의 아동수당제도를 비롯한 기타 자녀 관련 지원 수당, 조세 혜택 및 보육 서비스 등 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가족정책이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소득-소비-시간 등 모든 형태의 정책 보조가 풀 패키지로 동시에 작동하고, 정책의 대상이 자녀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과 아동 전체를 포괄할 때 비로소 양호한 자녀 양육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현금 지원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가족 지원 체계 전반의 구조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제도 운영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각국의 아동수당 시스템 유형과 적용 범위, 아동수당 수혜 자격 요건, 재원 구조와 과세 여부, 급여 수준 및 적용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기타 관련 수당 제도의 운영 방식과 보육 서비스 지원 및 조세 혜택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덴마크, 일본, 폴란드 및 영국의 재정 위기 전후 아동수당제도의 축소/확대 과정을 검토하였다. 특히 새로운 선별 방식으로 조세 체계를 이용하고 있는 영국 HICBC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부의 아동수당법 제정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보편적 균등 지급의 적절성, 정책 대상 연령의 타당성과 양육수당 지원 제도와 중복 여부, 그리고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보편적 균등 지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증과 성장-분배 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대상자 선별 비용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다면 소득에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대상 집단 전체에 대한 자산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수급 배제 인원의 수와 상관없이 선별 비용의 크기는 고정적이며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자 규모에 비례한다. 따라서 수급 배제 기준 소득이 높을수록 즉, 배제 대상 아동 수가 작을수록 기대할 수 있는 선별 지급의 편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공부조가 아니라 아동 일반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아동수당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수급 배제 기준은 낮지 않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선별의 편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효과성을 극대화

하면서 분배적 정의를 담보하고 향후 균형적인 가족지원 체계의 확립을 위한 제도 개혁까지 고려했을 때, 제도의 출범 단계로 영유아 집단에 대한 보편적 현금 지급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지급 형태는 현금이지만 실제적 구분은 보육료 지원이며, 따라서 아동수당과 차별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현행 무상보육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아동수당과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없다. 현행 영아 무상보육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일정 정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 가족지원 체계 조성을 위하여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추진될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의 조정과 연계하여 보육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정부 제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급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고된 바와 같이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관련 세제 혜택 등은 자연스럽게 폐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곧 자녀 양육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현재보다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수당을 상품권 형태로 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세금으로 본인이 원치 않는 상품권을 강제로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이는 결국 아동수당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 이외 방식의 지급은 부적절하다.

3. 결론 및 시사점

제5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아동수당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 관련 제도들과의 조율에 있어 최우선적인 과제는 아동수당-양육수당-보육료지원 제도 간의 관계 설정이다. 이를 위하여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도입될 경우 시설 미이용을 조건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과 불필요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의 선택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0~2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1021명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아동수당 도입 시 양육 행태 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추계해 본 결과, 연간 약 2000억 원 정도 보육료 지원 재정 수요의 순증이 예상된다. 즉, 현행 영아 무상보육 체계를 유지한 채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정 양육이 필요한 영아 시기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자극하고, 반대로 저소득층 자녀의 시설 이용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재정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보육 체계와의 조정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한편, 아동수당 도입으로 보육 재정 소요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또다시 행정 주체들 간의 비용 분담과 관련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국고보조 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복지급여 사업의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형태의 아동수당 재정의 분담 구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동책임 구조를 탈피하여 국가가 재원의 조달과 전달까지 모든 집행을 책임지고, 지방은 재정의 허용 범위 안에서 고유한 아동수당 체계를 마련하여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등 독립적인 제도 운영과 집행 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라면, 일종의 재정 형평화 보조금이 아닌 진정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농 간 무차별한 기준 보조율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관련 제도를 유지한 채 월 1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을 모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아동수당제도의 출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한국 가족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합리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육 지원 체계와의 조정은 조세 지원 제도의 개편과 병행하여 아동수당제도 확대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즉, 아동수당제도 확대와 관련 제도 개편 시 요구되는 재원의 원활한 조달까지 고려했을 때,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 기능을 아동수당제도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제도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여부와 방식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아동에게 고유한 처분권이 귀속되는 소득으로 아동수당을 파악한다면, 시설보호 아동 또한 수급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해야 하며, 시설 운영자는 시설 거주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인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호 책임을 위탁받은자로 해당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아동 발달 계좌나 기타 신탁 적립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금액에 대한 물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한다. 가정양육수당 단가 문제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불필요한 혼잡비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수당 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물가 연동제와 같은 주기적 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아동수당, 가족정책, 재정시뮬레이션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 과정에 관여하여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 통합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이러한 정부 활동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가구를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데, 투자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특히 생애초기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주목받아 왔다. 이러한 점에서 저출산·인구고령화가 야기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자녀 양육 가구 지원 즉, 가족정책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지원에서부터 보육·교육 서비스를 비롯하여 금전적 지원을 통한 소득 보조까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들의 조합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동·가족수당(이하 '아동수당'으로 통칭함)을 중심으로 한 소득 지원은 가족정책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왔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생애 초기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전소득 획득의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아동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출산의 감소와 연기,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성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험의 개인화 경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주목받았고,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사회보장급여 제

도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저출산 문제가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었다(〈표 1-1〉 참조). 그러나 아동이라는 광범위한 수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현금 급여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지만 즉각적인 합계출산을 제고 효과가 나타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6년부터 수립·시행된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도입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들이 계속 발의되었고, 국회 입법조사처를 비롯한 여러 관계 전문기관과 학계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이 들어선 정부는 2017년 7월 19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공표하였다.

〈표 1-1〉 아동수당 제도화 추진 노력

시기	추진 일지
2003년 8월 12일	출산안정법안 발의(한나라당 백승홍 등): 셋째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 비용 일부나 전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함.
9월 21일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한나라당 이원형 등):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50만 원 출산수당 지급. 만 4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급
10월 31일	신빈곤대책 3대 개혁 입법(참여연대): 아동수당 도입 요구
2004년 1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 전략(정부): 출산 축하금 20만 원. 아동수당은 중장기 검토 과제(도입 시기는 2008년 이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미달 가정. 2006년 이후 출산한 둘째 아동 월 5만 원, 셋째 아동 7만 원. 5세까지.

시기	추진 일지
7월 2일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 투자 전략(정부): 6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이상. 아동수당으로 확대되는 기초.
9월 5일	저출산 기본법 발의(한나라당 소속 12명 의원 전원 서명): 아동수당 및 의료비 지원
2005년 1월 20일	복지부 주최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아동수당 제도 단계별 도입 주장이 제기됨.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제도 도입 여부를 포함,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음(홍성의 기자, 2005. 1. 20., 의학신문).
2006년 1월	여성가족부 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안(2006~2010) 발표: 아동수당제 도입 검토,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추진하되 저소득층부터 점진 확대. 시행 방안 검토.
4월 27일	여성가족부 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2006~2010) 공청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자녀 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6월 7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아동수당 제외
6월 20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한명숙 국무총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공동의장)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발표: 아동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및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 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
7월 14일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당정 협의: "일단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 늦어도 2010년까지는 도입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 등은 논의가 필요"(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 본부장) "2007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우선 시행 뒤 중산층 및 모든 가구로 확대 방침"(복지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400만 원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에 대해 첫째 아이를 제외한 둘째 아이부터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열린우리당 강기정 보건복지위 간사, 2006. 7. 14., 해럴드경제).
7월 21일	기획예산처의 아동수당 도입 반대: "저출산은 종합적 시스템의 문제, 수당을 준다고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음"(기획예산처장관).

1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시기	추진 일시
	8월 30일
	기획예산처의 ‘비전 2030 함께 가는 희망한국’: 아동수당 제외.
2008년	9월 4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발의): 5세 이하 아동 전체 및 소득 기준 전체 아동의 80%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 지급.
2009년	11월 25일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안(이낙연 의원 등 발의): 2자녀 이상 가구 중 첫째 아동을 초과하는 아동이 만 7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둘째 아동에게 월 5만 원, 그 이후 아동부터는 월 10만 원을 지급.
	12월 9일
	아동수당 법안(김우남의원 등 발의): 기본 아동수당은 12세 이하 아동 중 둘째 자녀에게 지급, 추가 아동수당은 3자녀 이상 가구에 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월 10만 원.
2010년	4월 26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등 발의):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9월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시안: 아동수당 제외.
2013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정부성과사업 평가’ 보고를 통해 0~1세 영아의 부모들은 보육시설 이용보다 양육수당을 선호하므로 보육료 대신 아동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것을 제안함.
2015년	10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20): 아동수당 제외.
2016년	1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2006년부터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 과제로 0~18세 성장기의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함.
	8월 31일
	국민의당 김원종 제5정조부위원장은 2016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워크숍에서 현 보육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0~6세 아동 대상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제안.
	9월 23일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만 15세까지 월 30만 원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되, 소득 하위 50% 가구의 만 6세 아동에게는 월 15만 원의 교육 바우처를 부가수당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10월 7일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안과 아동수당세법안 발의(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 만 12세까지 아동에게 매달 10~30만 원씩(0~2세 10만 원, 3~5세 20만 원, 6~12세 30만 원)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수급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200% 이하 소득 가구. 셋째 자녀 이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

시기	추진 일정
2017년 3월 31일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발의(김부겸 의원 등):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액 결정 주체, 지급, 수급권의 상실, 지급 정지, 아동수당액의 환수 등을 규정함.
4월	대선 후보들이 월 10만~15만 원의 아동수당을 제시: 문재인 후보는 0~5세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 지급 공약. 안철수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공약.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 초·중·고등학생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미래양성바우처 지급 공약(이데일리, 17.4.20, 김재은 기자).
7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2018년부터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함(투자 규모 10.3조 원).

주: 2006년까지의 일지는 이선주, 박선영, 김은정(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의 <부록1 :원출처: 김수정(2006),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편집하였음. 2006년 이후의 일지는 저자가 직접 조사하여 작성.

위의 <표 1-1>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제까지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논의는 합계출산율이라는 단일지표의 상승이 곧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고 단편적으로 해석하여 접근하는 측면이 강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래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인구비중의 감소가 가져올 수 있는 성장잠재력 저하와 그에 따른 재정공간(fiscal space)의 위축 가능성을 저출산·고령화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의 인간노동에 대한 생산 의존도와 같은 생산체제와 각종 사회경제적 제도들이 불변인 상태를 전제했을 때 타당하다. 하지만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대체적 생산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은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이 더 이상 노인 부양비와 관련한 재정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출산율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저출산 대응 전략에 수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술 발전이 야기하는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 확대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현금 급여로서 갖는 아동수당의 정책적 기능과 가치를 살펴보고, 현존하는 관련 제도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우리 사회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정책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들의 제도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201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관련한 쟁점을 짚어 보고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OECD 35개국의 가족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문헌 정보를 수집하여 제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정부의 아동수당 도입 방안에 대한 적절성 진단과 관련 쟁점 분석에 있어서는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장-분배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또한 영유아 부모 1021명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행태 및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보된 자료와 정부 재정통계를 연계하여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존 관련 제도들과의 조정 방안을 중장기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제 2 장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제1절 가족정책의 유형과 지출 추이

제2절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구조적 한계

2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

제1절 가족정책의 유형과 지출 추이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우리나라가 매우 빨라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선진국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었고, 그 해결책을 고민해 왔다. 그리고 그 대안은 아동수당을 포함한 가족정책의 확대에서 찾았다. 여기서 가족정책은 가족의 구성과 유지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의 다양한 지원 제도들의 집합체로, 유형의 분류나 구분이 어려운 광범위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의 근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지원 제도들을 보면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지원에서부터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직접적인 현금 이전, 보육 서비스와 육아휴직, 주거지원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하는 자녀 양육 가구의 욕구에 대응하는 각종 지원 정책들이 포함된다.

급여의 지급 형태를 기준으로 주요 가족정책들을 보면 <표 2-1>과 같이 직접적인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그리고 조세 체계를 통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고, 크게 자녀 양육과 관련한 소비지원과 소득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현물·서비스 지원 등 소비 보조에는 보육·교육서비스가 대표적이며, 주거·광열, 교통, 통신 등 자녀 양육 가구의 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각종 비용 감면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비 보조는 유럽 선진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보호자의 근로 여부, 소득수준이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2-1〉 자녀 양육 가구 지원의 범위와 유형

직접 현금 이전	현물 지원	조세 지원
-아동(가족)수당 -임신·출산·육아기 휴직급여 -한부모 소득 보조 -기타 유자녀 가구소득 지원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비용 보조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육비 특정 보조금 -출산·육아 물품 지원 -주거 관련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등	-자녀 관련 비과세감면 -자녀 관련 소득공제 -자녀 관련 세액감면 -자녀장려세제(CTC등)

현금 지원을 통한 소득 보조는 아동(가족)수당, 출산·육아 휴직 시 지급되는 급여, 자녀 관련 세액공제나 CTC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가(부모휴가, 부성휴가 포함)와 더불어 유연근무제 등 휴직 제도는 급여의 형태적 측면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잠시 일터를 떠났다가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자녀 양육 시간을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시간 보조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도화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특정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일정 부분에 대응하는 급여를 인정하는 유급휴가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소득 보조로 분류된다.

한편, 자녀 관련 조세 지원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 이전이 아니라 조세 체계를 통한 지원 형태라는 점에서는 별개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체로 소득세 감면에 집중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소득 보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성적 특징을 보면, 휴직 제도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근로 이력과 상태를 조건으로 일부 저소득·취약계층에 한정된 혜택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소득세제 혜택은 특히 인별 소득 과세 체계에서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자녀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다. 이 경우 부부 중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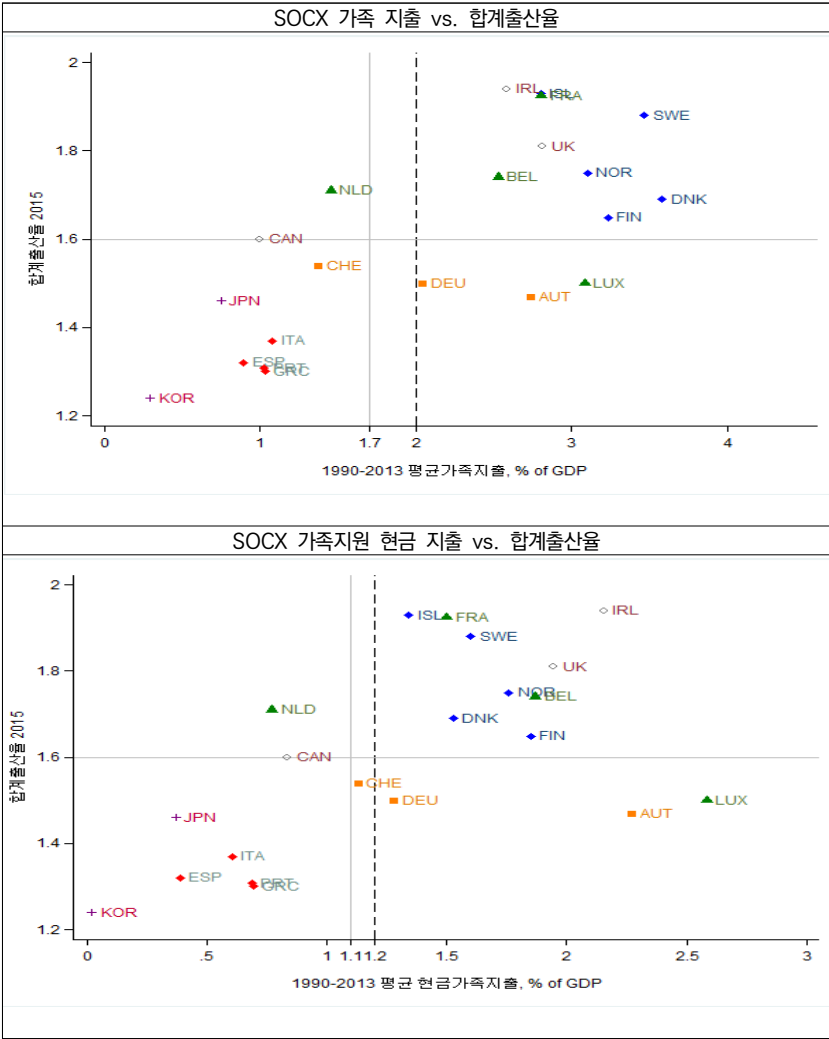
성 부양자가 실질적인 수혜자가 된다.

그에 비해 대표적인 소득 지원 제도인 아동수당은 실적으로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이들의 기회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고 그 혜택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도록 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아동의 고유한 권리로서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가정 내 자녀 돌봄 책임 분담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통상 경제적 기회비용이 큰 여성 부양자에 대한 지원으로 간주된다. 또한 개인의 생애 주기에서 아직 경제적 능력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기에 대한 개입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빈곤 위험이 큰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근로 상태나 가구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현대적 개념에 부합하는 아동수당의 기본 형태이다.

이상과 같이 광범위한 개념의 가족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제도들은 출산 장려와 같은 직접적인 인구정책의 목표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어진 사회경제적 배경과 여건에 따라 각 제도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 조합이 가능하다. 하지만 집합적 차원에서 보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 축적된 결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그에 따른 출산 유인이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정책적 기대가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공유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그림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은 장기 시계열 자료가 확보된 21개국의 2015년 현재 합계출산율과 1980년에서 2013년까지 가족 영역에 대한 정부의 평균적인 지출 수준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 2-1] OECD 주요국의 가족 지출 추이와 합계출산율



주: 그리스의 지출 수준은 2012년까지.

자료: 1)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에서 2017. 7. 12. 인출.

2) HFD. humanfertility.org에서 2017. 9. 21. 인출.

3) World Bank. 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view=chart에서 2017. 10. 10. 인출.

세로축의 실선은 1990년 21개국 가족 지출 및 가족 현금 지출의 평균을 보여주며, 점선은 가장 최근 연도인 2013년의 그것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간 모든 국가들에서 가족 관련 지출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나라별로 지출 증가의 속도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편차가 존재하므로 가족 지출과 합계출산율과 어떤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²⁾ 하지만 아래의 단순한 그림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의 가족 지출 수준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반면에 프랑스, 영국, 스웨덴과 같이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의 경우 가족 지출 수준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경우 단지 지출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현금 지원에서부터 보육·교육 서비스와 휴직 제도, 의료, 주거지원 등 자녀를 키우는 데 요구되는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부 지원이 길게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1월 UN 저출산 대응 정책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가족지원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과 양육 시간에 대한 지원,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현물급여의 3가지 유형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영아부터 나이가 많은 자녀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 네덜란드나 캐나다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족 지출 수준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는 높은 가족 지출 수준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 가족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출 규모뿐만 아니라 각국의 다양한 개별 제도들에 대한 상세한 통계자료와 제도 구성 체계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것은 본 연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별도의 추가 연구 영역으로 남겨두고자 하며 이에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 이러한 가족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국민들로부터 정부의 가족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정부가 자녀의 임신에서부터 출산, 취학과 이후 취업까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됨에 따라 자녀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UN, 2015).

이와 관련하여 Jones, Straughan & Chan(2009, p. 210)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잠재적인 부모들을 실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들 정부는 그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가족 지출과 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하여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실증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분석 대상이나 가족 지출의 유형, 실증 기간이나 자료의 처리, 실증 모형의 적용이 다르며 따라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방향 또는 개별 급여 제도들의 효과가 달리 제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지출 수준과 출산율 간에 정(+)의 효과가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는 결과로 확인된다(Sleebos, 2003; Kohler, Billari & Ortega, 2006; OECD, 2011; Luci & Thévenon, 2011 등).

급여의 유형별 효과에 관해서는는 아직 명확하게 합의된 결과는 없다. 다만,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현금 지원의 경우 상당수의 연구에서 효과의 크기에 있어서는 편차가 존재하지만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 기존 연구들을 정리한 Sleebos(2003), Kohler, Billari, & Ortega(2006), Gauthier(2007) 등에 따르면, 출산 장려 목적을 갖는 아동수당이나 출산 장려금과 같은 금전적 지원에 대한 분석 결과들에서는 대체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발견된다. Laroque & Salanié(2008)는 프

랑스 경험 분석 결과로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이 부모들의 자녀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직접적인 비용이 GDP의 0.3%에 이르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으로 합계출산율이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연구에 따라 현금 지원의 출산 제고 효과가 크지 않게 측정된 경우도 있다. 서유럽 11개국의 1969~1983년 자료를 분석한 Blanchet & Ekert-Jaffe(1994)는 아동(가족)수당 지급으로 여성 1명당 0.2명 추가 자녀 출산 유인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Gauthier & Hatzius(1997)의 22개 선진국 1970~1990년 자료를 활용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 남성 임금 수준 대비 가족 현금 급여액의 비율로 측정한 가족 현금 지원 수준이 25%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단기에 0.6% 또는 0.07명 상승하는 데 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4%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Gauthier & Hatzius, 1997, p. 11). 미시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에서도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은 대체로 확인되고 있으나, 출산 순서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Duclos et al., 2001; Laroque & Salanié, 2003 등).

한편,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결과는 현금 급여와 달리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거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현금 지원에 비해서는 효과가 낮게 확인되는 실증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Hank & Kreyenfeld, 2003; Luci & Thévenon, 2011).

2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표 2-2〉 출산 관련 가족정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정책 유형	연구	자료 및 방법	출산 유인 효과
현금 지원	아동수당 등 직접 소득 이전	Sleeboos(2003) Gauthier(2007)	가족정책 관련 출산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비교 검토
		Blanchet and Ekert-Jaffe(1994)	1969~1983년 11개 서유럽 국가에 대한 2stage OLS
		Gauthier and Hatzius(1997)	1970~1990년 OECD 국가 시계열 회귀분석
		Laroque and Salanié(2008)	프랑스 1997/1998/1999노동력조사 활용 dynamic programming
	조세 혜택	Milligan(2005)	캐나다 퀘벡 주 ANC(1987년 도입) 효과분석, 1980~1997년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DID 모형
현물 지원	시설 이용 권한/가능성	Hank and Kreyenfeld(2003)	독일 1984~1995년 미시조사자료 (GSOEP 등), Multilevel discrete-time logit
		Sleeboos(2003)	-
		OECD(2011)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정성적 평가
		Luci and Thévenon(2011)	1982~2007년 OECD 18개국, 15개 회귀모형
	보육지출 수준	Luci and Thévenon(2011)	1982~2007년 OECD 18개국, 15개 회귀모형
	육아휴직기간, 유연근로 등 기타	Sleeboos(2003)	-

자료: 상기 연구 목록에 기초하여 분류하였음.

제2절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구조적 한계

가. 정책 현황

그간 우리나라 가족 관련 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면, 1960년대 경제개발 시대 산아제한을 골자로 하는 가족계획 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합계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 급속하게 하락하여 1987년에 1.53명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억제 정책은 1995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폐기되기에 이른다. 사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인식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되었고,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시작되었다(〈표 2-3〉 참조).

〈표 2-3〉 한국의 가족지원 제도 변천

시기	육아휴직1)	아동수당	보육2)
~1980년대	□ '87.12: 육아휴직제 도입,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87.12 개정 및 '88.4 시행) □ '89.4: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89.4 개정 및 시행)	해당사항 없음	□ '21~'91: 구빈적,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 ○ 구빈 '21: 저소득층 자녀 위주 탁아사업 시작 ○ 아동복지 '62~'81: 보건복지부가 탁아관리(아동복지법) ○ 사회복지 '82: 어린이집과 새마을협동유아원 등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유아교육진흥법) ○ 직장탁아 '87: 노동부에서 직장탁아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1990년대	□ '95.8: 남성 근로자로 적용 확대.		□ '91~'04: 영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탁

2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시기	육아휴직1)	아동수당	보육2)
	단, 여성을 대신하여 신청(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85.8 개정 및 시행)		
2000년대~	□ '01.8: 적용 대상 남녀 모두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 불가, 휴직 후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임금 수준의 직무에 복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01.8 개정 및 '01.11 시행)		아에서 보육으로 발전 ○ 보육시설 확대
	□ '01.8: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근거 규정 신설(고용보험법 제25조의2, '01.8 개정 및 '01.11 시행)		○ 아동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지원
	□ '01.8: 육아휴직 급여액 월 2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 '01.8 개정 및 '01.11 시행)		○ 보육사업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02.12: 육아휴직 급여액 월 3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 '02.12 개정 및 시행)		
	□ '04.2: 육아휴직 급여액 월 4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 '04.2 개정 및 시행)		□ '04.6: 보육업무 여성가족부로 이관 □ '04.6~'08.2: 참여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 '04.6: 제1차 육아지원정책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 소득수준에 따라 육아부담 50% 경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 '05.12: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05.12 개정 및 '06.3 시행)		○ '05.5: 제2차 육아지원정책 출산을 제고 및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 보육시설 표준보육료 산정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 '07.4: 육아휴직 급여액 월 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 '07.4 개정 및 시행)		○ '06.7: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공보육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충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확대 지원 '09: 보육시설 차등보육료를 이용자의 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7.12: 생후 3년이 되는 날 경과시 휴직 불가 규정 삭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07.12 개정 및 '08.6 시행)		□ '08.3: 보육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 '10.2: 만6세 이하 초등학교 취		□ '09~'12: 아이사랑플랜 수립·시행

시기	육아휴직1)	아동수당	보육2)
	학 전 자녀(단, '08.1 이후 출생)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0.2 개정 및 시행) ☐ '10.12: 육아휴직 급여액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 원/하한액 50만 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0.12 개정 및 '11.1 시행) ☐ '12.2: 기간제·파견근로자 육아휴직 활용 촉진,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 또는 파견기간에서 제외(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2.2 개정 및 '12.8 시행) ☐ '14.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4.1 개정 및 시행) ☐ '14.9: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급여 상향(아빠의 달),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14.9 개정 및 '14.10 시행)		○ 새싹플랜 보완 수정 보육 국가 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으로 개편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 시설 미이용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 ○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 ○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등 ☐ '13.3: 보육료·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 만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 '13.12: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 보육·양육 부담 경감 ○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 공공성 및 품질관리 강화 등 ☐ '14.4: 입소대기 시스템 전산화 및 전국 확대 시행 ○ 부모 편의 증진 및 정보 투명성 증가 ☐ '15.12: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자료: 1) 육아휴직 제도 연혁은 고혜원 등(201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육아휴직 후 복귀프로그램 개발, 정책보고서, 여성가족부, p. 14의 <표 II-6>을 재구성하여 인용하였음.

2) 보육제도 연혁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1&PAGE=1&topTitle=보육정책 연혁상세보기에서 2017.10.20. 인출)

이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 과정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고 현재 <표 2-4>와 같은 주요 급여 제도들이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표 2-4> 주요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제도

대상	사업명	지원 개요(자격 기준, 급여 수준 등)															
한부모 가정 아동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소 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52% 이하 한부모/조손가정 고등학생 자녀에 대하여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 한부모/조손가정 아 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급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3세 미만 자녀 1인 당 아동 양육비 월 12만 원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 만 4100원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 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아동 양육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정을 지원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5만 원 -부/모의 검정고시 학습비 연간 154만 원 한도 내 지급 -자립촉진수당(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월 10만 원 지급															
장 애 · 입양아 동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 시 20세까지) 등록장 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table><tr><th>구분</th><th>생계/의료급 여수급자</th><th>주거/교육급 여수급자</th><th>차상위계층</th><th>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급여)</th></tr><tr><td>중증장애</td><td>월 20만 원</td><td>월 15만 원</td><td>월 15만 원</td><td>월 7만 원</td></tr><tr><td>경증장애</td><td>월 10만 원</td><td>월 10만 원</td><td>월 10만 원</td><td>월 2만 원</td></tr></table>	구분	생계/의료급 여수급자	주거/교육급 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중증장애	월 20만 원	월 15만 원	월 15만 원	월 7만 원	경증장애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월 2만 원
	구분	생계/의료급 여수급자	주거/교육급 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중증장애	월 20만 원	월 15만 원	월 15만 원	월 7만 원												
	경증장애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월 2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만 16세 이하 입양아동 월 15만 원 양육수당 지급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과 중복 지급 허용															
(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국내 입양 만 18세(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까 지 장애아동 지원 -양육 보조금: 중증 장애아동 1인당 월 62만 7000원/경증장 애 및 기타 월 55만 1000원 -의료비: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비용 지원(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입양아동 의료급여	만 18세 미만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1종 의료급여 지원(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환급)																

대상	사업명	지원 개요(자격 기준, 급여 수준 등)												
	기타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출산 전후 기간) 등												
저소득 층 아 동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생활,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월 4만 원 이내 적립 시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 -월 46만 원 한도로 추가 적립을 허용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형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등)과 중복지원 불가												
	자녀장려세제(CTC)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자녀 수를 기준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자녀1인당 연간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2015년부터 지급) -2017년도 소득/재산 기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가구원 합산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1주택 이하 -부양자녀 소득 연간 100만 원 초과,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17년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수급 시 수급 배제됨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전년도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table><tr><th>구분</th><th>총급여액 등</th><th>자녀장려금</th></tr><tr><td rowspan="2">홀벌이</td><td>2100만 원 미만</td><td>부양자녀수X50만 원</td></tr><tr><td>~4000만 원 미만</td><td>부양자녀수X[50만 원-(총급여액 등 -2100만 원)X1900분의 20]</td></tr><tr><td rowspan="2">맞벌이</td><td>2500만 원 미만</td><td>부양자녀수X50만 원</td></tr><tr><td>~4000만 원 미만</td><td>부양자녀수X[50만 원-(총급여액 등 -2,500만 원)X1500분의 20]</td></tr></table>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홀벌이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X50만 원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X[50만 원-(총급여액 등 -2100만 원)X1900분의 20]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X50만 원	~4000만 원 미만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홀벌이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X50만 원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X[50만 원-(총급여액 등 -2100만 원)X1900분의 20]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X50만 원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X[50만 원-(총급여액 등 -2,500만 원)X1500분의 20]												
	기타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시설퇴소아동 정착금지원 등 지방 이양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내부 자료.

[그림 2-2]는 지원 대상 아동 연령대를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주요 가족지원 제도 현황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개별 급여 제도의 포괄 대상이나 급여의 충분성 등 제도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다소 미흡할 수 있지만, 형태적으로는 아동수당과 같이 일반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소득 보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책들이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3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그림 2-2] 아동 연령별 관련 정책 현황

	출산	영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18+
돌봄, 교육		맞춤형보육, 시간제보육, 긴급보육바우처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 + 방과후	의무교육			학교지원, 진로·직업교육, 등	국가장학금(다자녀 등) 대학지원 등
		가정양육수당(시설미이용)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아이돌봄서비스						
휴직 제도	산전 후 휴가(90일)	육아휴직/육아기단축근로 등(부모 각1년/공무원3년)						
소득 보조(일반)		조세혜택(자녀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자녀 특별공제)						
저소득·취약계층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등)기타 연계지원						
		자녀장려세제(CTC)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학용품비지원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장애아동수당(고교재학시 만20세이하)						
	임양아동수당(만16세)/임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의료비지원 등							

자료: 고제이. (2017). 아동수당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 발표 자료.

그런데 자영업자 가구 비중이 높고, 불안정 노동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에 따라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에 있어 큰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아도 현재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85.9%인 데 비해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44.1%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통계청, 2017). 더구나 자녀 양육에 가장 필요한 시간과 소득을 보조하는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이의 실제 사용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노동 현실과 낮은 소득 대체율(월 50만~10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40%, 이 중 85%만 휴직기간 중에 지급되며 나머지 1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합산하여 일괄 지급됨)은 수급의 사각지대 문제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더구나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절약적 기술의

개발과 노동시장에서의 적용 추세를 보았을 때에 고용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휴직급여 제도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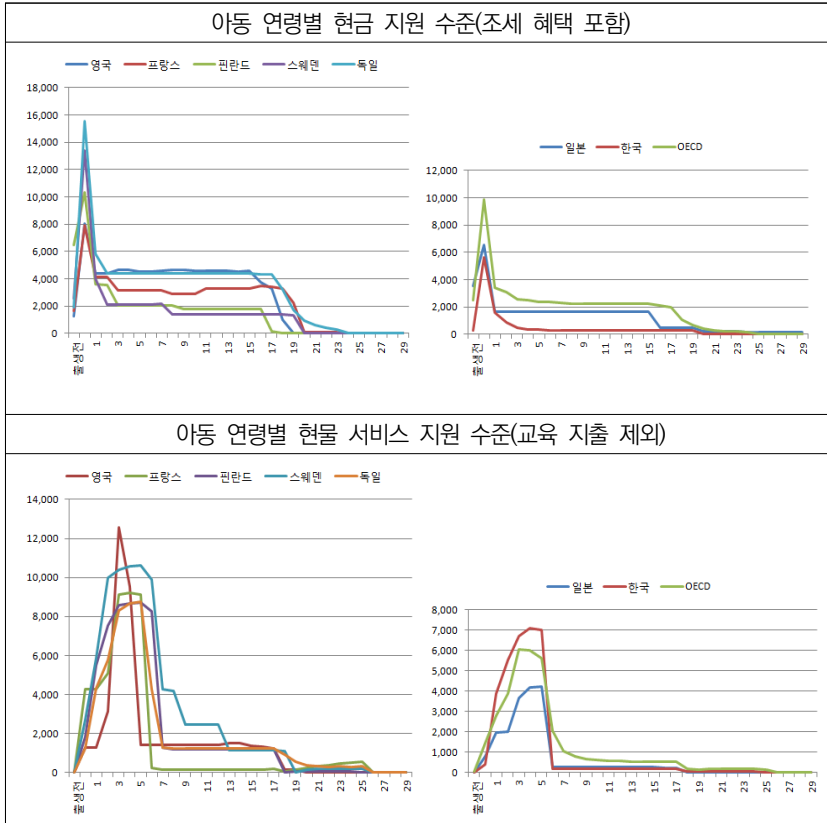
한편, 최근 도입된 CTC 등 조세 체계를 통한 소득 지원의 경우 양육자의 근로 상태나 소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혜 대상이 선별적으로 한정되며, 일괄 지급되는 형태라는 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책 효과의 크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의 가족정책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구 일반에 대한 지원은 보육과 교육에 한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OECD 가족 지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은 한국과 OECD 각국의 아동 연령별 1인당 조세 혜택을 포함한 현금 지원과 교육을 제외한 기타 현물 서비스 지원 수준을 미국 ppp 달러로 표준화하여 보여준다.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한국의 현금 지원 수준은 영국의 16.3%, 프랑스의 19.5%, 핀란드의 27.6%, 스웨덴의 28.2%, 독일의 13.9%, 일본의 36.3%이고 OECD 평균의 25%에 불과하다. 반면에 교육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현물 지원 수준은 위와 같은 순서로 66.6%, 74.9%, 56%, 49.1%, 62.7%, 93.8% 및 77.6%로 그 격차가 현금보다 크게 낮게 나타난다. 특히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는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보육 서비스 지원 수준은 프랑스의 76.4%, 핀란드의 76%, 스웨덴의 49%, 독일의 94.4%로 낮지만, 영국의 126.4%, 일본의 194.2%이고 OECD 평균 수준의 119.3%로 보육 지원에 집중된 가족정책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시점이 무상보육이 시행된 첫해인 2013년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이 보육 서비스 편향적 가족정책의 불균형성은 보다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그림 2-3] 아동 연령별 현금 및 현물 지원 수준(OECD 2013년 ppp US\$ 기준)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7. 11. 29. 인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소득-소비-시간 등 모든 형태의 정책 보조가 풀 패키지로 동시에 작동하고, 정책의 대상이 자녀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과 아동 전체를 포괄할 때 비로소 양호한 자녀 양육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보육 지원 중심의 소비 지원에 한정된 가족정책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현금 지원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가족지원 체계 전반의 구조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림 2-4] 바람직한 자녀 양육 환경



자료: 고제이. (2017). 아동수당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 발표 자료.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일반적으로 아동의 실질적인 양육자에게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제도는 다양한 정책 기능과 목표에 따라 급여 체계의 설계 방식과 대상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책 기능을 보면, 우선 현금 지원을 통해 아동 빈곤을 예방하고 완화하여 아동 발달을 도모할 수 있고, 모든 아동의 고유한 권리로서 주어진다는 점에서 아동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와 무자녀 가구들 간의 구매력 차이를 보정하여 세대 내 소득 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애 초기 인적자원 투자 형태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미래사회 생산성 확보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의 형태를 갖는 경우 낙인효과나 누락 비용 없이 사회 참여와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주목 받고 있는 정책 기능은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 충격을 완화해 줌으로써 양호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정책 기능은 크게 분배적 정의 확보와 인적자본 투자, 자녀 양육 환경 개선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기능 조합이 가능하다. 이때 지원 대상이나 급여의 수준 등 급여 체계는 추구하는 정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 목적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보육을 비롯하여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 혜택과 기타 소득 지원 제도들이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즉,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소득 지원 체계가 먼저 도입된 후에 보충성 원리에 입각하여 기타 추가 지원 제도들이 도입된 선진국과 정 반대되는 상황인 점을 인식하여, 전체적인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제도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제도 운영 사례 검토와 함께 정부의 아동수당법 제정안과 관련한 쟁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관련 제도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기능적 아동수당제도의 운영방향을 모색한다.

제 3 장

아동수당제도 운영 사례와 시사점

제1절 아동수당제도 운영 체계

제2절 기타 수당 지원과 관련 제도 현황

제3절 재정 위기와 아동수당제도 변화

3

아동수당제도 운영 사례와 《 시사점

제1절 아동수당제도 운영 체계

이 절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아동수당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하 SSA)에서 발간하는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의 보고서 중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약 및 재구성하였다.⁴⁾ SSA는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ISSA)와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에 의해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국제 서베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상당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내용들을 수집 및 보고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SSA(2016a, 2016b)는 2016년 2월 조사를 수행하여, 국가별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최신 정보들을 담고 있다.

SSA(2016b, pp. 15-16)에 따르면, 아동수당제도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현금 형태의 소득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제도의 기원에 대하여 19세기 유럽의 일부 대기업들이 대가족 노동자들에게 프리미엄을 제공했던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점차 유럽 대륙에 전파되어, 1920년대와 1930년대 일부 유럽 국가들이 가족수당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기 시작한

4) 해당 보고서는 <http://www.ssa.gov>에서 열람할 수 있다. SSA 이외에도 (특히 유럽의) 주요 국가별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정보들을 보고하는 기관 또는 보고서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SSA(2015, 2016a, 2016b)는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지역 국가들의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조사하여 공개하는 자료로서 조사 범위가 가장 넓다는 장점이 있다.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기원을 고대 로마제국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결혼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2대 입법⁵⁾과 이후 1세기 후반부터 3세기까지 지속되었던 Alimanta Program에서 찾기도 한다. 특히 알리만타 프로그램은 1세기 말 네르바 황제(96~98 AD) 시기 로마 제국 농촌지역의 심각한 빈곤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이탈리아와 로마제국 전체 저소득 아동에게 현금과 식량을 지급하는 제도로 트라야누스 황제(98~117 AD) 시대에 확대되어 3세기 초반까지 운영되다가 재정난으로 후퇴된 바 있다(Duncan-Jones, 1963; 김상엽, 2009).

하지만 보다 현대적 의미의 아동수당제도는 1945년 이후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3-1〉 및 〈부표 2〉 참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러한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SSA(2016b, p. 17)가 조사한 45개 유럽 국가들 중 무려 44개 국가(약 98%)들이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SSA가 유럽 국가로 분류한 터키를 제외하면 유럽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OECD 중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제도의 시스템 유형, 적용 범위, 재원, 수혜 자격, 급여액 등을 비교해 본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일본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 세부 분석의 대상을 OECD 주요국 중심으로 한정하는 것은 비교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우리나라에 유익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5)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lex Iulia de maritandis ordinibus와 lex Papia Poppaea 2대 입법을 통해 시민들의 결혼과 자녀 양육을 도모하고 동시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 예컨대, 법에서는 결혼 여부나 자녀 수에 따라 상속권을 부여하고, 불륜에 대한 법적 처벌, 유자녀 여성에 대한 우대 조치(3자녀 이상 자유민 여성이나 4자녀 이상 해방노예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자 제도 면제)등이 포함되어 있다(Field, 1945; 김상엽, 2006).

가. 시스템 유형과 적용 범위

SSA(2016b, p. 16)는 국가별 아동수당제도 시스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보편주의(universal)형/고용연계(employment-related)형/사회부조(social assistance)형 3가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coverage)가 상이해진다.

먼저 보편주의형 국가들은 일정 수 이상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그 나라의 거주자이기만 하면, 제도 적용 범위 내에 포함된다. 서유럽을 포함하여 동유럽,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보편주의형을 채택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용연계형의 경우 근로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 범위가 제약된다. 즉, 모든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의 경우, 자영업자/비노동자(nonemployed person)들을 적용 범위 내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고용연계형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과 아프리카 및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부조형은 소득과 같은 특정 자원이 일정 기준(대체로 최저생활 수준)에 미달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제도가 적용되며,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저개발국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많은 나라들의 제도를 이러한 3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에 따라서는 아동수당제도가 이중 또는 삼중 체계로 되어 있기도 하며, 장애 여부나 한부모, 가구 규모 또는 소득수준 등 지급 대상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서로 다른 유형 체계로 운영하는 등 사실상 분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나라별로 다양한 운영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표 3-1>과 <부표 2>에 제시된 OECD 각국의 아동수당 제도 현황을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아동수당 수혜 자격

수혜 자격은 각 나라의 세분화된 수당제도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부표 2> 참조). 여기서는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기본적인 아동수당의 일반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동수당의 수혜 자격은 대체로 아동의 나이 또는 소득 등과 연계된다.

특히 대다수의 국가들이 아동의 나이를 수혜자 자격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나이 자격 요건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범위는 14~18세로 나이 제한이 의무교육 종료 시기 또는 연령이나 통상적인 최저 취업 연령과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학업의 지속, 견습직, 직업훈련 중인 아동들에 대해 나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있다. 그리고 장애 아동에 한하여 나이 제한을 더욱 확대하거나 아예 없애주기도 한다(SSA, 2016b, p. 15). 예를 들어 영국과 독일은 16세~18세 미만 아동에게 수혜 자격을 부여하지만, 정규학생의 경우 나이 제한을 확대해준다. 독일과 스웨덴은 장애아동 또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다.

한편, 프랑스는 21세 미만 아동에게 수혜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취업 상태라면 월 순소득이 최저임금의 55%(2017년 기준 €907.19) 이하인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한다.

〈표 3-1〉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운영 체계

국가	근거 법령/운영기관	시스템 유형	적용 범위 및 수급 아동 연령/자격 조건	아동수당 급여액	제원	과세여부 등
영국	○ 최초 법 - 1945(아동수당) - 1987(가족크레딧) ○ 현행 법 - 1992(통합법) - 2002(아동세액공제수당) □ 운영기관 ○ 아동수당/세액공제 운영 -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보편 주 의형	- 1자녀 이상 영국 거주자 - 16세 미만(학생 20세)	○ 아동수당(1인당, 2016.4.기준) - 첫째: 1주 £20.70 - 둘째아 이상: 1주 £13.70	- 정부: 전액 부담	- 과세 - 고소득 수급자 과세(HICBC): 보호자 또는 그 의 배우자 연간 조정 순소득 5 만 파운드 초과 시 초과액 100파운드당 1% 과세
프랑스	□ 법령 ○ 최초 법 - 1932 ○ 현행 법 - 1946 □ 운영기관 ○ 찬반적인 감독/규정 반포 - Ministry of Social Affairs, Health, and Women's Rights/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기금 조정/재정 평형화 - National Family Allowances Fund ○ 지급 - 102 Local Family Allowances Funds	보편 주 의형	- 2자녀 이상 프랑스 거주 자(아동수당 이외의 기타 수당 제외한 경우임) - 21세 미만, 아동이 취업 한 경우 월 소득 €907.19 미만	○ 아동수당(기초급여 중 family benefit 만 제외) 최대 금액(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둘째아 €130.51 셋째아 € 297.72 셋째아 이상 1인당 추가금액 €167.21 14세 이상 1인당 추가금액 최대 €62.25 *정률수당: 3자녀 이상 가구에 1년간 월 최대 €82.52(소득에 의존) 지급하며, 첫째가 20세가 될 경우 수당 감소 *(표 3-4) 프랑스 수당 체계 참조	- 자영업자: 소득 의 5.4% - 고용주: 임금 총 액의 5.425% - 정부: 장기실업 자/재고용자 분 담금을 보장하기 위한 가변적 보 조금; 모든 개인 들의 소득을 통 해 조성한 사회 부담금 수익의 일부	- 과세 - 아동수당을 비 롯한 모든 가족 수당(단, 특별 교육수당 제외) 은 0.5% CRDS tax 부과하여 가족지원기금 으로 환수

4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국가	근거 법령/운영기관	시스템 유형	적용 범위 및 수급 아동 연령/자격 조건	아동수당 급여액	재원	과세여부 등
독일	□ 법령 ○ 최초 법 - 1954(child benefit) - 1955(시행) - 1985(child allowance) ○ 현행 법 - 2007(부모수당) - 2009(child benefit) - 2009(소득세) □ 운영기관 - 전반적인 감독: Federal Ministry for Family, Seniors, Women, and Youth - child benefit/child allowance 운영: Federal Revenue Office가 Federal Employment Agency 직부를 통해 운영	보편 주 의형	-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과세대상자가 보호 중에 있는 아동 - 18세 미만(실업 또는 구직기관 등록 시 21세가 지/학생이나 직업훈련생의 경우 25세까지/장래에 아 연령 제한 없음)	○ 아동수당(KC 기준) 첫째/둘째아: 월 €192 셋째아: 월 €198 넷째아부터: 월 €223 *자산 조사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추가 수당 지급(월 €170) ***단, 독일은 자녀소득공제와 아동수당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하나를 선택	- 정부: 전액 부담: 연방정부가 연방 고용국의 운영비용 분담 - 비과세	
핀란드	□ 법령 ○ 최초 법 - 1948 ○ 현행 법 - 1992(아동수당, 1993 시행) □ 운영기관 -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 운영(nationally):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보편 주 의형	- 1자녀 이상의 핀란드 거주자 - 17세 미만	○ 아동수당(Kela 기준) 첫째아 €94.9 둘째아 €104.8 셋째아 €133.8 넷째아 €153.2 다섯째아 이후 €172.7 ※ 한부모 추가 수당: 자녀 1인당 €48.55	- 정부: 가족수당/출산 장려금/임양 보조금 전액 부담, 지방자치기관이 가정양육수당 전액 지불 - 비과세	

국가	근거 법령(운영기관)	시스템 유형	적용 범위 및 수급 아동 연령/자격 조건	아동수당 급여액	재원	과세여부 등
스웨덴	□ 법령 ○ 최초 법 - 1947(아동수당) - 1964(양육 발전) ○ 현행 법 - 1947(아동수당) - 1993(주택수당) - 1996(양육 지원) □ 운영기관 ○ 중앙행정 및 감독 -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 운영 - regional and local social insurance offices	보편주의형	- 1자녀 이상 스웨덴 거주자 - 16세 미만	○ 아동수당(MISSOC 기준) - 공동 수당: 월 €110.9, SEK 1050 - 대가족 추가 수당: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급 2명: €15.8, SEK 150 3명: €76.8, SEK 730 4명: €183.2, SEK 1740 5명: €314.7, SEK 2990 6명: €446.3, SEK 4240	- 정부: 전액 부담 - 비과세	
일본	□ 법령 ○ 최초/현행법 - 1971(아동수당, 1972 시행) - 2010(아동수당 지급) □ 운영기관 ○ 감독 - 내각부(Cabinet office) - 산하 Children and Child-Rearing Administration ○ 부담금징수 - Japan Pension Service Branch Offices ○ 수당 지급 - 지방자치기관	보편주의형	- 중학교 졸업 연령 미만 1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 중인 자 - 중학교 졸업 연령(15세 이하)	○ 아동수당(SSA 기준) 2자녀 4인 가구 기준 가구소득 960만 엔 미만) - 0~2세 : 1만 5000엔 - 3세 이상~초등 졸업 · 첫째, 둘째아: 1만 엔 · 셋째아 이상: 1만 5000엔 - 중학생: 1만 엔 〈가구소득 960만 엔 이상〉 - 특별임시수당 1인당 5000엔	○ 0~2세 - 고용주: 47% - 중앙: 36% - 도도부현/시정촌 각 9% ○ 3~15세(또는 자영업자/실업자의 자녀) - 중앙: 67% - 도도부현/시정촌 각 17% - 비과세	

자료: 유럽 국가들의 경우 2017년 EC(Europe Commission)을 우선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EC상의 자료가 부재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17 MISSOC tables database(www.missoc.org)와 SSA(2016b)를 이용하였음. 핀란드는 Kela 홈페이지, 일본은 SSA(2016a)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다. 재원 구조와 과세 여부

각국 아동수당제도 현황을 보면 재원 조달 방법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시스템 유형의 차이와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보편주의형과 공공부조형을 채택한 국가들의 경우, 비용 전액을 정부의 일반세입(general revenue)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보편주의형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예컨대 보편주의형인 프랑스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활용하는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사회보장법전’에 따라 설치된 ‘국민가족수당기금(CNAF)’이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가족지원 급여를 집행한다. 가족 부분 지출의 재원은 주로 고용주 부담금과 일반사회기여금 및 제세금, 정부를 대신해서 지출된 공공부조성 급여(예, 무자녀 가구 주거 보조금, 극빈층 기본연대 수당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환급보조금으로 구성된다(Sécurité sociale, 2013).

고용연계형의 경우, 비용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사용자 부담금(employer contributions)과 보험 가입자 기여금을 통해 조달하는데, 사용자 부담금만으로 재원 조달이 힘들 때에는 그 부족분을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그리스가 대표적인데,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임금 총액의 1%씩 부담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금 더 독특한 재원 구조를 갖고 있는 사례는 일본이다. 일본의 아동수당은 195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1961년 정부차원에서 중앙아동복지심의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 검토가 이루어졌다. 1964년 중간 검토 보고회의에서 ‘사회보험제도’로 첫째아부터 의무교육 종료 시점 또는 18세까지 아동들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이루어졌고, 1971년 법 제정을 통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일정 소득 이하 5세 미만 셋째아 이상에 대하여 월 3000엔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었다. 도입 당시부터 3세 미만 근로자 자녀에 대한 수당은 고용주와 정부가 70:30(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각각 10)으로 분담하고, 소득기준 상한을 초과하여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받는 특례 급부에 대한 비용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2009년까지 유지되었다(김경석, 2012. p. 26).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소득기준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용주 분담 비율도 낮아져서 현재는 만 3세 미만 근로자 자녀에 대해서 7/1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충당하고 있다(김경석, 2012). 이와 같이 일본의 아동수당은 보편주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재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고용연계형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아동수당 과세 여부를 보면, 장애아 교육수당을 제외한 모든 가족/아동수당에 대하여 0.5% 세금을 부과하는 프랑스나 그리스, 스위스, 그리고 제2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라. 급여 수준과 적용 기준

아동수당 급여액 수준을 보면,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기본수당), 노르웨이(기본수당)와 같이 일부 국가들에서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소득,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아동의 수급 자격과 연계하여 부가급여 형태나 기본수당 체계에서 가구소득, 자녀의 연령, 출생 순위 또는 자녀 수, 또는 한부모나 장애아 여부 등을 반영하여 상이한 급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아동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OECD 회원국의 가구소득 기준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3-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⁶⁾

〈표 3-2〉 OECD 국가 아동수당 제도 소득기준 적용 현황

전 소득계층 지원, 균등 급여 (16개국)	전 소득계층 지원, 소득 차등 급여(5개국)	소득 상한 적용, 일정 소득수준 이상 명시적 배제(9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이스라엘, 폴란드(2016년)*	덴마크(2014년1월1일 이후 소득 연계), 프랑스(15년 7월 이후) 아이슬란드 일본(2012년) 캐나다(2016년 7월 1일 이후)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2010년 이후), 슬로베니아, 스페인, 칠레, 호주

주: 〈부표 2〉의 출처에 근거한 자료를 토대로 분류한 구분임.

자료: 〈부표 2〉의 출처와 동일함.

현재 분석 대상인 30개국 중 14개 국가들에서 가구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아동수당제도가 축소된 상황을 감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 사회보장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재정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0년 이후부터 소득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거나 수당 금액을 동결하는 등 아동수당

6) 〈표 3-2〉에는 최초의 법정 아동수당을 도입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 뉴질랜드가 제외되어 있다. 뉴질랜드는 1926년 가족수당법(The Family Allowance Act) 제정을 통해 주당 가구소득 £4(현재가치 약 \$360) 미만인 가구에 대하여 셋째자녀 이상부터 아동 1인당 1주 2s(현재가치 약 \$9)을 지급하는 선별적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NZ History 2016, <http://nzhistory.govt.nz/culture/the-1920s/1926>). 아동수당은 1938년 사회보장법 제정과 1945년 개정을 통해 보편제도로 확대 운영되었다가 197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위축되면서 1991년에 보편적 수당지급이 폐지되었다(Leigh, 2006).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의 부모의 경제활동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축소되어왔고,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자녀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체계를 중심으로 한 소득지원이 아동수당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 공공부조를 제외하고는 서유럽과 같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제도의 축소까지 이루어진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3절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아동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 호주 등은 수당 금액을 아동 연령에 무관하게 지급하는 반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은 자녀 연령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다른 부가수당까지 고려해서 살펴보면, 덴마크와 프랑스, 노르웨이의 경우 3세 미만 영아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반면에 베네룩스 국가들은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 밖에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등 다수 국가들에서는 한부모 가정과 같이 특수한 가구의 상태를 반영하여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부표 2〉 참조). 단, 그 방식은 나라마다 다른데, 영국의 경우 별도의 한부모 수당이나 부가급여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본 아동수당 체계에서 첫째아에게 더 많은 수당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한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를 상대적으로 우대한다. 노르웨이나 핀란드처럼 아동수당 체계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프랑스와 같이 별도의 한부모 수당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자녀 양육 보조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아동수당을 비롯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수준이 양부모 가정보다 3배 이상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자녀 수(또는 출생 순위)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3-3〉은 각 나라별로 자녀 수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요약한 것이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자녀수/출생 순위 외의 다른 기준(예: 소득, 연령)은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스웨덴과 같이 균일 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들의 경우,

이를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즉, 이는 오로지 자녀 수의 변화에 따른 수당액의 변화만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실제 급여 체계는 <부표 2>에 별도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3-3> 자녀 수별 아동수당 급여 수준 변화

국가	자녀 수 (명)	지급 기준	아동수당 (1인당, 월/주)	총 아동수당	한계 아동수당	평균 아동수당
서유럽	영국 (1주당 급여)	1	£20.7	£20.7	£20.7	£20.7
		2	£13.7	£34.4	£13.7	£17.2
		3	£13.7	£48.1	£13.7	£16.0
		4	£13.7	£61.8	£13.7	£15.5
	프랑스	1	0	0	0	0
		2	€129.5	€258.9	€258.9	€129.5
		3	€295.4	€886.1	€627.1	€295.4
		4	€461.2	€1,844.9	€958.9	€461.2
	독일	1	€184.0	€184.0	€184.0	€184.0
		2	€184.0	€368.0	€184.0	€184.0
		3	€190.0	€558.0	€190.0	€186.0
		4	€215.0	€773.0	€215.0	€193.3
북유럽	핀란드	1	€95.8	€95.8	€95.8	€95.8
		2	€201.6	€403.1	€307.4	€201.6
		3	€336.6	€1,009.7	€606.6	€336.6
		4	€491.2	€1,964.8	€955.1	€491.2
		5	€665.47	€2,630.3	€665.5	€526.1
	스웨덴	1	0	0	0	0
		2	150 SEK	150 SEK	150 SEK	75.0 SEK
		3	604 SEK	754 SEK	604 SEK	251.3 SEK
		4	1,614 SEK	2,368 SEK	1,614 SEK	592.0 SEK
		5	2,864 SEK	5,232 SEK	2,864 SEK	1,046.4 SEK
		6	4,144 SEK	9,376 SEK	4,144 SEK	1,562.7 SEK
아시아	일본	1	¥10,000	¥10,000	¥10,000	¥10,000
		2	¥10,000	¥20,000	¥10,000	¥10,000
		3	¥15,000	¥35,000	¥15,000	¥11,666.7
		4	¥15,000	¥50,000	¥15,000	¥12,500.0

주: 총 아동수당은 자녀 수에 따라 가구가 받게 되는 아동수당 총액을 의미한다. 한계 아동수당은 아동 1명이 추가될 때 총 아동수당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평균 아동수당은 총 아동수당을 자녀 수로 나눈 것이다. 표의 수치들은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자녀수/출생 순위 외의 지급 기준들은 모두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특정 국가의 경우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수당액은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SSA(2016a, 2016b)를 토대로 계산하였음.

〈표 3-3〉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가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아동수당의 총액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 양상은 나라마다 다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녀 수가 증가할 때마다 한계수당이 대체로 체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평균 아동수당도 증가한다. 또한 북유럽이 서유럽에 비해 체증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스웨덴은 자녀 수가 1명에서 2명이 될 때 한계수당은 150 SEK에 불과하지만 5명에서 6명이 될 때의 한계수당은 그것의 약 27배인 4144 SEK에 달한다. 이와 달리 프랑스와 독일은 한계수당이 체증하고는 있지만 스웨덴에 비해 그 변화폭이 낮다. 핀란드의 경우 넷째 자녀에서 한계수당이 가장 높고 이후 체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본도 한계수당이 대체로 체증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둘째까지 체감하고 이후 불변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아동수당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자녀들이 1명 추가될 때, 지원 수준이 체감 또는 체증하는지의 여부는 나라별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나라별로 제도의 역사나 정책 목적(사회부조, 인구성장, 인적자본 투자)이 상이하기 때문이다(SSA, 2016b, pp. 15-16).

제2절 기타 수당 지원과 관련 제도 현황

가. 수당 체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동수당을 비롯하여 양육/보육수당, 한부모수당,

장애아수당, 대가족 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세분화된 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부표 2〉 참조). 예컨대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 대부분이 아동수당과 함께 양육 또는 보육수당을 같이 지급하고 있다. 그밖에 육아 휴직 급여를 비롯하여 입양아동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들이 조세 체계나 별도의 수당 체계를 통해 지원된다.

특히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표 3-4〉는 2017년 4월 현재 프랑스의 관련 수당 제도 현황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아동수당 외에도 유아수당(출산/입양장려금, 근로감축수당 등 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수당, 신학기수당, 대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가족보조금과 이사수당, 주거 지원 성격의 주택수당 등 사실상 출생부터 취업 전까지 모든 아동기에 걸쳐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프랑스의 수당 체계(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 적용; CRDS 공제(0.5%) 전 금액)

가족 현금 지원 유형	수당 항목		월 급여액 (유로)	자산조 사여부	CRDS 과세 여부
A. 기초급여 (BasicMain- tenanceBe- nefit)	1) 아동수당 (Family benefit)	둘째아	130.51	0	1
		셋째아	297.72	0	1
		셋째아 이상 1인당 추가금액	167.21	0	1
		14세 이상 1인당 추가금액	62.25	0	1
	2) 정률수당 (Flat-rate allowance)		82.52	0	1
	3) 가족소득보조 (Familyincomesupplement)	Base rate	169.87	1	1
		Increased rate	237.89	1	1
	4) 가족지원수당 (Familysupportallowance)	-Full rate	164.82	0	1
		-Partial rate	110.2	0	1

가족 현금 지원 유형	수당 항목		월 급여액 (유로)	자산조 사여부	CRDS 과세 여부
B. 영유아부 양 급여 (PAJE)	1)출산급여 (birth grant)	1)출산급여(birth grant)	927.71	1	1
	2)입양급여 (adoption grant)	2)입양급여(adoption grant)	1855.42	1	1
	3)기초수당 (basic allowance)	-full rate	185.54	1	1
		-partial rate	92.77	1	1
	4)경제활동시간 (CLCA)/자녀 양육시간(PreParE)자유선택 보조금	-full rate 경제활동 100% 중단	394.06	0	1
		-partial rate 법정 주당 근로시 간 50% 미만 일할 경우	254.74	0	1
		-partial rate 법정 주당 근로시 간 50~80% 일할 경우	146.94	0	1
	5) 자녀보육자유선택보조금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CMG, 2014.4.1 이후 출생 적용)	(가정아이돌보미 고용 시)			
		가구소득 20,509 이하	465.1	1	1
		가구소득 20,509 초과 45,575 이하	293.28	1	1
		가구소득 45,575 초과	175.94	0	1
		(협회 또는 민간보육시설 이용시)			
		-childminder			
		가구소득 20,509 이하	703.81	1	1
		가구소득 20,509 초과 45,575 이하	586.51	1	1
		가구소득 45,575 초과	469.22	0	1
		-가정어린이집(Home child carer)			
		가구소득 20,509 이하	850.47	1	1
		가구소득 20,509 초과 45,575이하	733.13	1	1
		가구소득 45,575 초과	615.84	0	1
C.특별지원	1)장애아교육수당 (Allocation d'éducation d'en fant handicapé)	-기본수당	130.51	0	0
		-추가 수당_등급1	97.88	0	0
		-추가 수당_등급2	265.1	0	0
		*한부모 추가 금액	53.02	0	0
		-추가 수당_등급3	375.21	0	0
		*한부모 추가 금액	73.41	0	0
		-추가 수당_등급4	581.46	0	0
		*한부모 추가 금액	232.47	0	0
		-추가 수당_등급5	743.13	0	0
		*한부모 추가 금액	297.72	0	0
		-추가 수당_등급6	1107.49	0	0
		*한부모 추가 금액	436.39	0	0
	2)부모주간돌봄수당 (AJPP:Allocation journalière d'absence parentale)	-양부모(couple)(1일당 금액)	43.35	0	1
		-한부모(1일당 금액)	51.51	0	1
		-비용 보조(월 금액)	110.89	1	1

가족 현금 지원 유형	수당 항목		월 급여액 (유로)	자산조 사여부	CRDS 과세 여부
	3) 취학수당 (매 8월 연 1회 일괄지급)	6~10세	365.91	1	1
		11~14세	386.1	1	1
		15~18세	399.48	1	1
	4) 가족주택수당		-	-	-
	5) 이사수당 (1회 일괄지급)		978.82	1	0

주: 2012년사회보장재정법(SocialSecurityfinancinglaw)에 의거 매년 4월 1일 월 가구수당기준액(BMAF)이 설정, 갱신 적용되며, 2017년 4월 1일 BMAF는 월 407.84유로임.

자료:Centre des Liason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de Sécurité Sociale. <http://cleiss.fr>에서 2017. 10. 15. 인출.

나. 자녀 관련 조세 혜택

한편, 영국이나 캐나다(주정부), 호주,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국의 자녀 관련 조세 지원 내용은 <표 3-5>와 같다. 이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조세 지원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 체계에서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 납세 의무액은 가구소득의 합계액을 구성원별 부여된 part(가족계수 할당치)의 합계로 나눈 값에 해당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 후에 다시 가구 part 합계를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⁷⁾ 이때 성인의 할당치는 1로 주어지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까지 1인당 0.5part, 셋째부터는 1인당 1part가 추가된다. 또한 장애아, 한부모 등 가구원 인적 속성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part를 부여한다. 다만, 가구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 부양

7) <http://www.french-property.com/guides/france/finance-taxation/>에서 2017. 7. 9. 인출.

가족 소득공제액의 한도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자녀와 관련한 소득공제 한도는 0.5part 당 1512유로이다(2016년 귀속소득 적용 2017년도 세법 기준).⁸⁾ 이러한 과세가구 part 조정 방식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과세 소득을 낮추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소득공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식 자녀소득공제로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소득과세 체계는 세액공제 제도로 세액감면 비환급형 세액공제(tax relief; réduction d'impôt)와 환급형 세액공제(tax credit, crédit d'impôt)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표 3-6〉 참조). 이처럼 프랑스는 대표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로서 직접적인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조세 체계를 통해서도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자녀 부양 가족에 대한 전폭적인 소득 보조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소득세 체계에서 대부분의 조세 혜택은 과표를 낮추어 주는 소득공제 중심으로 주어진다. 2016년 기준으로 17세 미만 또는 교육 훈련 중인 경우 25세까지 부양자녀가 있을 때 연간 최대 7248유로의 자녀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 3-5〉 독일의 부양자녀 소득공제(2016)

자녀연령	자녀소득공제 한도(유로)
0~17세	3,624 / 7,248
18~25세	3,624 / 7,248 재학 또는 교육훈련 중,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추가 462/924

자료: PWC. 각국정보. <http://taxsummaries.pwc.com/ID/Germany-Individual-Deductions>에서 2017. 7. 9. 인출.

8) <http://www.french-property.com/guides/france/finance-taxation/>에서 2017. 7. 9. 인출.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아동수당(첫째 및 둘째 자녀 1인당 190유로, 셋째 자녀 196유로, 넷째 이상 1인당 221유로)을 받지 않거나 자녀소득공제를 통해 얻게 되는 최종적인 세금 감면액이 아동수당보다 클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을 먼저 수급하는 관계로, 소득공제로 받는 감면 혜택이 큰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이전에 수급한 아동수당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총액으로 납부하는 구조이다. 그 밖에 특정 요건에 따라 14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25세까지의 자녀 양육비 지출에 대하여 연간 4000유로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나 급여액 수준이 프랑스나 영국보다 관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동수당 이외 부가적인 수당이나 조세 지원 체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결코 많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조세 혜택 대신 아동수당과 기타 가족급여를 충분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일원화된 소득 보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6〉 주요 국가들의 자녀 관련 세제 혜택

국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요소 반영(인적공제)	양육 비용	비환급형	환급형
영국	-	-	-	○ Child tax credit - 16세 또는 20세(학생) 미만 자녀 부양 시 해당 - 기초 공제액: 연 €667.2(£545) 까지 + 아래 각 구성요소 · for each child: 연 €3,403.5(£2,780)까지 · for each disabled child: 연 €3,844.2(£3,140)까지 · for each severely disabled child: 연 €1,560.9(£1,275)까지 ○ WTC(working tax credit) 수급요건에 자녀 요소 반영, 보육료 지출 비용이 있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 환급
프랑스	- 가구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 부양가족 소득공제액의 한도가 적용됨. - 일반적으로 자녀와 관련한 소득공제 한도는 0.5 part당 1,512유로임(2016년 귀속소득 적용 '17년도 세법 기준). 즉, 2자녀 가정의 경우 최대 소득공제액 한도는 3,024유로임.	-	- 자녀교육비 세액 감면(les frais de scolarité): 중학생(collegé) 자녀 1인당 61유로, 고등학생(lycée) 및 대학생 자녀 1인당 183유로. - 성인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pension alimentaire): 21세 또는 재학 중 25세 미만	- 유아보육 비용 세액공제(les frais de garde d'enfants): 7세 미만 영유아 보육비 지출 비용 50%(아동 1인당 최대 2,300유로 한도).

국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요소 반영(인적공제)	양육 비용	비환급형	환급형
독일	○ 자녀소득공제 - 17세 미만(교육훈련 시 25세) 자녀에 대해 연간 최대 €7,248	○ 특별양육비 소득공제 - 특정 요건에 따라 14세 미만 자녀 또는 14~25세 장애가 있는 자녀(1인당)에 대한 양육비 지출 비용의 2/3(연간 최대 €4,000한도) 소득공제 허용	-	-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로 업무상 집을 떠나 교외(집에서 100km 이상) 임시숙소에 거주할 경우 임시숙소 비용 월 €250 한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	○ 법정 자녀부양비(이혼/별거)의 1/8 (연간 €80 한도) 세액공제 ○ 자녀공제 - 미성년 자녀 1인당 €50(최대 4 자녀 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 한부모인 경우 1인당 €100	-
스웨덴	- 한부모 추가 아동수당을 받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추가 근로소득공제 연간 €2,525 (DKK18,800 '16년 기준)	-	-	-
덴마크	- 16세 이상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19~22세 또는 70세 이상 인 경우 공제 금액이 증가) - 16~18세 소득세/주민세 각 38만 엔/33만 엔; 19~22세 각 63만 엔/45만 엔 - 16세 미만 자녀는 소득세법상 공제 배제/but 주민세(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할분) 산출 시 반영 가능	-	-	-
일본	- 부양가족 의료비 소득공제(납세자 본인 및 동거가족 의료비 자부담 지출)	-	-	-

국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요소 반영(인적공제)	양육 비용	비환급형	환급형
캐나다				○ GST/HST credit - 저소득 중산층 가구 자녀 양육 비용 반영 환급액 결정 ○ 근로장려세제(WITB) - 19세 미만 부양자녀 조건 적용 ○ 주정부 자녀 양육 관련 추가세 제 환급 - 브리티시컬럼비아(소독 차등): · BC영유아세액 환급(BC early childhood tax benefit): 0~5세 자녀 수와 가구소득 차등 양육 비용 세액 환급 · BC저소득층기후변화협약세액 환급(BC low income climate action tax credit): 아동 1인당 34.5달러 - 앨버타(Alberta, 소득제한) · 앨버타가 가구로 장려세 제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credit): 자녀 출생 순위 반영 출생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 환급(첫째아 \$64.41, 둘째아 \$58.58, 셋째아 \$35.16, 넷째아 \$11.66) - New Brunswick · NB자녀장려세제(NBCTB):
		○ 자녀보육 비용 공제 - 0~6세 1인당 연간 \$8,000 - 7~16세 1인당 연간 \$5,000	○ 연방소득세 - 부양자녀 세액공제/돌봄 비용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기관당 최소 \$100) 교육비지출 15% - 임양비용 세액공제: 임양비용 15%(\$2,351한도) ○ 주정부 소득세별상 별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	

국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요소 반영(인적공제)	양육 비용	비환급형	환급형
노르웨이	○ 개인표준 공제 - 자녀 요소 반영 - 개별 양육 비용 공제로 선택할 수 있음 ○ 한부모특별공제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한 부모 연간 NOK 51,804	○ 양육비 공제 - 12세 미만 아동 돌봄 비용 및 12세 이상 아동 특수 양육 비용 공제, 한도 1자녀 NOK 25,000, 2자녀 이상 1인당 NOK 15,000 추가		New Brunswick child tax benefit): 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 아동당 월 \$20.83, 가구 순소득 \$20,000 초과 시 감액 지급 ·NB근로소득보조(NBWIS: NB working income supplyment): 가구당 월 최대 \$20.83까지 NBCTB에 추가 지급 - Nova Scotia affordable living tax credit(NSALTC): 가구당 연 최대 \$255 환급 추가 적으로 아동 1명당 \$60지원, 조정 가구순소득 \$30,000 초과시 5%감액지급 - Ontario sales tax credit(OSTC): 자녀 수 반영 환급, 기타 세액공제 병행
				-

국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요소 반영(인적공제)	양육 비용	비환급형	환급형
벨기에	○ 한생 부양자녀 공제(연령 제한 없음) - 자녀 1명 공제금액 €1,550/ 2 자녀 공제금액 총 €3,980/ 3자 녀 공제금액 총 €8,920/ 4자녀 - 공제금액 총 €14,420 - 만3세 이하인 경우 상기 자녀 공 제금액에 €580 추가(단, 자녀교 육/보육비 세액공제 중복 불가)		○ 12세 미만 자녀 교육/보육비 세액공제 - 1일 보육비 한도 €11.2. 보육 비용의 45%	
	○ 법정 자녀부양비(이혼/별거) 소 득공제 ○ 최소부양가족공제 - 직계비속 소득공제: 연간 소득 €8,000 이하 첫 번째 부양 친족 소 득공제금액 €2,400, 둘째, 셋째, 넷 째 이상 각각 €2,700, €4,000 및 €4,500. - 직계비속 연령이 3세 미만인 경 우 추가로 €2,800 공제/ 장애아 소득공제 1인당 € 3,000		- 대가족 근로자 세액공제 €1,200 -	
스페인				

자료: PwC, 각국 정보(<http://taxsummaries.pwc.com>)
일본 국제청 홈페이지(<http://www.nta.go.jp>)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www.gov.uk>)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www.canada.ca)
노르웨이 국제청 홈페이지(www.skatteetaten.no/en/person/Tax-Return)
노르웨이 정부 홈페이지(<https://www.nav.no>)
SKAT. (2016). Tax in Denmark-An introduction to the Danish tax system for non-Danish speakers, The Danish Customs and Tax Administration(SKAT).

다.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⁹⁾

보육과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정규 교육과정 법정 입학 연령이나 재정 및 관리 구조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로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무상보육·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육 지원은 국가별로 더 큰 편차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자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의 주체로서 대략 1.5세 이상부터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 또는 운영하는 공보육시설의 이용 권한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시설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즉, 공보육 서비스 이용 권한의 부여와 보육료 지원은 구분된다. 지방정부에 따라 가구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보육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C 산하 EACEA(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가 공개하는 유럽의 교육정책 및 시스템 정보(EURYDICE)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3~5세 전 소득계층 아동들에 대한 무상 공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세 이상부터는 1일 최대 6시간 주당 20시간까지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 3세 미만 영아 보육을 제공하는 공립시설은 많지 않으며,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 이외 영아(0~2세)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3~4세 유아에 대해 연간 570시간(주당 15시간 38주 기간) 무상보육을 시행 중에 있다. 맞벌이 부모이거나 부모가 병가 등으로 휴직 중에 있으면서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주당 30시간까지 무상으로 보육시설을 이

9) 본 소절은 EC, EURYDICE 각국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

(<http://webgate.ec.europa.eu/fpfis/eurydice/index.php/Countries> 2017. 10. 21. 최종 접속).

용할 수 있다. 이때, 위탁아동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 무상보육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2010년부터 5세 유치원(kindergarten)교육을 의무화하여 주 4일 최소 16~20시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 서비스는 전적으로 지방 사업이며 중앙은 일부 재정 보조 방식을 취하는 구조이다. 다만 지역별로 부모가 납부한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4~6세 시간제 보육 서비스 무상 지원(Tyrol), 4~6세 종일제 보육 서비스 무상 지원(Vienna) 등 추가적인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벨기에 또한 권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3개 권역 중 프랑스어권 지방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이 제공된다.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취학 아동의 보육은 부모의 책임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취학 전 1~3년(3세 이상 또는 5세)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Rheinland-Pfalz와 Berlin의 경우 취학 전 3년 무상 유치원 교육이 지원되며 Hambrug에서는 5시간 무상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진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의무교육과정 취학 연령이 4세이며 3~5세 아동은 초등과정(6~7세) 전 2년(선택적으로 3년까지 가능)의 유치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즉, 4세부터 무상 공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공보육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이용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13세 미만 또는 초등과정 학생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동 돌봄 바우처(CSA: childcare-service vouchers for ECE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선 미만 또는 빈곤위험 가구로 CSA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돌봄 서비스 무상 이용이 가능하며, 넷째아 이상부터는 무상 공보육 서비스가 지원된다.

동유럽 국가들 중 헝가리는 3~6세아 대상 유치원(óvoda) 보육 및 교육제도를 통해 3세부터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생후 20주부터 3

세까지는 사회복지시설 주간 돌봄 서비스인 Creche(bolsócöde)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부모가 부담한다. 폴란드에서도 0~2세 보육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부모 부담이며, 지자체에서 부담료 상한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에스토니아에서는 1.5세 이상부터 정부 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은 대부분 지자체 직영의 공립시설이지만 이용 요금은 부모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부모 부담은 최저임금의 20%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의 이용에 대해 전액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탈리아는 3~6세 조기교육 제도(ECEC)를 시행하고 있다. 3세부터의 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금액으로 유치원(preprimary schools)을 이용할 수 있다. 3세 미만 영아 보육은 nursery schools(nidi d'infanzia)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자체와 민간 공급자들이 지역별 조례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고, 서비스 이용료는 부모가 전액 부담한다.

가장 발달된 보육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은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덴마크에서는 생후 26주부터 공보육 서비스 이용 권리를 갖지만 기본적으로 부모 부담 이용 원칙이 적용되며,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free place funding, Sibling funding 또는 Socio-educational free place funding을 통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생후 11개월 이상부터 정부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노르웨이는 국회에서 부모 부담금 한도를 설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데, 보육시설 이용 부담금이 가구소득의 6%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책정하고 있다(Kindergarten 이용 시 이용 요금 아동당 월 NOK 2730, 연간 NOK 3만 30 이하). 또한 가구소득 NOK 41만 7000 미만 3~5세아

Kindergarten 이용 시 1주일 20시간 무상 이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공보육 서비스 지원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교육법에 따라 지방정부 책임으로 만 1세부터 12세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1세 이상부터 최소 1일 3시간 또는 주당 15시간 공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3세 이상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연간 최소 525시간의 무상 유치원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시설 서비스 이용 요금은 부모와 정부가 분담하는 구조이다. 이때 부모 부담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어 저소득 가구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납부하는 이용 요금은 월 140유로(2017년 기준)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이 주어져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도 의무교육 취학 전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는 그 비용을 부모와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또한 최소 연령 기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영아기 가정 양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보편성 원리에 기반한 아동수당과 달리 보육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선별 지원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밖에도 프랑스나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에서 부모의 보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동수당과 별도의 양육/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중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은 우리나라의 가정양육수당과 같이 시설 미이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육료 대체 성격의 수당을 지급한다. 반면에 프랑스나 헝가리,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 다수 국가들에서는 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영유아 양육 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 성격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부표 2〉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OECD 국가들의 주요 가족지원 제도 운영 현황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자면 〈표 3-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7〉 OECD 국가들의 주요 가족지원 제도 운영 현황(유지 제도 제외)

	아동 수당	보육				조세 혜택		출산/임양 수당	취약계층 자녀 양육 가구 수당 지원		
		영아 보육료 (0-2세)	유아교육 (보육료) 지원 (3+)	보육 시설 보조	비환급형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	환급형 (CTC 등)	저소득 가구		한부모	장애아	
호주	△	△	△	?	X	●	△	●	●	●	
오스트리아	●	△	●	●	●	●	X	●	●	●	
벨기에	●	△	●	●	●	X	●	●	●	●	
캐나다	●	X	?	●	●	●	●	△	●	●	
체코	△	X	●	●	●	?	●	X	●	X	
덴마크	●	△	△	●	●	X	●	●	●	●	
에스토니아	●	X*	△	●	●	X	●	X	●	●	
핀란드	●	X*	△	●	●	X	●	X	●	●	
프랑스	●	X	●	●	●	●	●	●	●	●	
독일	●	X	△	●	●	X	X	X	●	X	
그리스	△	X	●*	△	●	?	●	●	△	X	
헝가리	●	X	●	●	●	X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X	△	△	△	
일본	●	△	△	●	●	X	?	?	●*	●	
한국	X	●	●	●	●	●	●	●	●	●	
라트비아	●	△	●	●	●	X	X	●	X	●	
룩셈부르크	●	△	●	●	●	●(tax bonus)	●	●	X	●	
네덜란드	●	X	●	●	●	?	X	●	X	●	
노르웨이	●	△	△	●	●	X	●	●	●	●	

	이동 수당	보육				조세 혜택		출산/입양 수당	취약계층 자녀 양육 가구 수당 지원		
		양육 수당	영아 보육료 (0-2세)	유아교육 (보육료) 지원 (3+)	보육 시설 보조	비환급형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	환급형 (CTC 등)		저소득 가구	한부모	장애아
폴란드**	●	●	X	●	●	?	●(FTC)	●	△	●	●
포르투갈	△	X	X	△	●	●	X	●	●	●	●
슬로바키아	●	●	X	△	△	?	?	●	●	X	●
슬로베니아	△	X	△	△	●	●	X	●	●	●	●
스페인	△	X	X	●	●	●	X	●	X	●	●
스웨덴	●	△	△	●	●	X	X	●	●	X	●
스위스	●	X	△	●	●	●	△	●	△	X	△
영국	●	X	X	●	●	X	●	●	●	X	●

주: ●: 제도 시행(아동수당의 경우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급여인 경우를 의미하며, 조세 및 취약계층 관련 지원은 제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하였고, *보육료 지원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유치원교육 포함) 일정기간 이상의 무상보육시간이 주어질 경우 ●로 분류).

●●: 급여의 수/급액 수준/대상 등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

△: 자산조사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한정적(명시적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상 배제)이거나,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거나, 기타 자격 요건을 적용하여 다른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될 경우.

X: 제도 없음.

자료: <부표 2>의 출처와 같음.

제3절 재정 위기와 아동수당제도 변화

앞서 제1절에서 아동수당 급여 체계의 소득 연계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08년 말 세계 금융·재정 위기는 그 충격의 크기에 따라 각국의 가족정책에 차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가족정책을 구성하는 다양한 급여 제도들은 경제회복을 위한 경기활성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확대되거나 혹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축소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라마다 시기별로 상이한 변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가. 선별 제도로의 퇴행 vs. 보편제도로의 발전

아동수당과 관련한 주요 변화 사례를 보면, 대체로 급여의 수준을 동결하거나 가구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지출 통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포르투갈은 2010년부터 아동수당 수급 요건에 상한을 적용하였고, 프랑스는 2015년 7월부터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에 대한 차등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 역시 2014년 1월 1일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덴마크 아동수당제도는 1987년부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 당시 수당 금액은 연령이나 소득 또는 자녀 수 등과 무관하게 아동 1인당 연간 DKK 5,200(약 90만 원)이며,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1990년부터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되는 차등 구조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부표 2〉 참조).

재정 위기 이후 주요 변화를 보면, 2011년부터 7세부터 17세까지 아동을 다시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15~17세에 대해서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월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아동수당 금액은 2004년부터 물가수준과 연동하여 매년 조정되는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2010년 6월 경제 회복협정에 따른 긴축 과정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점진적인 아동수당 지출 삭감이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2011에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수혜 금액의 총량을 DKK 3만 5,000으로 제한하는 급여총량제가 도입되어 시행된 바 있으나 2012년 재정법을 통해 폐지되었다. 그 대신 2012년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기본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2%를 아동수당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수당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현재 감액 소득기준은 개인과세소득이 DKK 74만 9,000(약 1억 4,000만 원)이다(덴마크 세무부).

한편, 재정 위기는 유럽 이외의 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다. 일본과 캐나다가 대표적이다. 2009년 일본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0세부터 중학교 졸업 때까지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 대하여 15년간 매월 2만 6,000엔을 지급하는 기존의 소득 제한을 적용하는 아동수당과 차별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선언하였다. 민주당 집권 후 2010년 법 제정을 통해 2011년 4월부터 월 2만 6,000엔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인하여 2만 6,000엔 지급 계획이 철회되고 2011년 9월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1만 3,000엔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천문학적인 복구비용 마련이 우선되었다. 이에 ‘2011년 아동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2012년 3월까지 3세 미만과 셋째아 이상 아동은 월 1만 5000엔, 3세 이상 초등학생까지 첫째아와 둘째아는 월 1만엔을 지급하고, 소득제한은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에 또다시 지진 복구비용 마련을 이유로 ‘가구소득 제한 부활’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아동수당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김경석, 2012).

이에 따라 현재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4인 가구 기준 약 1억 원) 아동 1인당 아동수당 금액은 월 5,000엔만 지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아동수당제도 후퇴 사례와 정반대로 오히려 선별 제도에서 보편제도로 이행한 사례도 있다. 폴란드의 Family 500+ 둘째아 이상 보편아동수당의 도입이 그것이다. 폴란드는 2014년에 합계출산율이 1.3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음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음에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심각한 빈곤 문제가 커져 가고 있었다. 당시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빈곤 위험률은 36%로 전체 인구 빈곤위험률 17%의 두 배에 이르렀다(Sowa, 2016). 2015년 11월 새롭게 들어선 폴란드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는 ‘LODZINA 500+ (Family 500+)’ 정책을 입안하여 4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2016년 2월 법제정). 이를 통해 현재 폴란드의 아동수당 체계는 기존 소득조사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24세 미만 아동에게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기본아동수당과 18세 미만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 소득과 무관하게 기본아동수당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는 이층 구조의 보편제도로 이행하였다.

〈표 3-8〉 폴란드의 아동수당 체계(2017년 현재)

1) 기본아동수당(자산조사)	
○ 0~5세: 아동당 월 2.8만 원(€21.8)까지	
○ 6~18세: 아동당 월 3.6만 원(€28.4)까지	
○ 19~24세: 아동당 월 4.0만 원(€30.9)까지	

*2017년도 소득기준: 가구원 1인당 월 소득 22.2만 원(€172.8; PLN754; 가구원 중 장애가 있는 경우 소득기준 PLN844).

*2016년 1월 1일부터 상기 소득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소득제한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급여액이 감소하도록 조정(2015년까지 소득기준 초과 시 수급 배제). 예컨대 가구 1인당 소득 PLN100 초과 시 이 금액을 수당액에서 차감.

2) Family 500+ 둘째아 이상 보편아동수당

○ 전 소득계층 18세 미만 둘째아 이상 아동 1인당 월 14.7만 원(€ 114.6; PLN500) 정액급여 지급

*가구원 1인당 월 소득 23.5만 원(PLN800) 미만 시 첫째아부터 지급(장애아인 경우 1인당 소득 월 35.3만 원(PLN1200)).

*새로운 아동수당은 기존 가족수당에 추가하여 지급됨.

자료: <부표 2>의 출처와 같음.

나. 새로운 선별 방식의 도입: 영국 아동수당 소득과세(HICBC)¹²⁾

한편, 영국의 재정 위기 이후의 대응은 프랑스나 덴마크 등처럼 소득 제한을 도입하여 차등 지급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었다. 재정 긴축 과정에서 영국은 아동수당 금액을 동결함과 동시에 보편적인 급여 체계는 유지하되, 고소득자가 수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한 소득과세(HICBC: High Income Child Benefit Charge)를 통해 최대 100%까지 환수하는 새로운 선별 방식을 도입하였다. 2013년 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HICBC는 영국의 아동수당제도 변천 과정과 이를 추동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영국은 자국에 거주하는 만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아는 주당 20.7파운드, 둘째아 이상은 이보다 적은 금액인

12) 본 소절의 HICBC제도 소개 내용은 영국 하원의회보고서(Kennedy, 2012)와 HM Revenue & Customs(2012; 2016) 및 영국정부 홈페이지 각 제도 소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주당 13.7파운드씩 지급하고 있다. 현행 아동수당제도는 1975년 아동수당법(Child Benefit Act 1975) 제정을 통해 기존의 아동세제 환급(Child Tax Allowance)과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을 통합하여 197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77년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가족수당은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되었고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이 수급자였다. 또한 수급한 금액은 소득세 부과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었다.

1975년 5월 노동당 정부는 첫째아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에게 비과세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안(Child Benefit Bill)을 발표하였다. 당시 정부는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가족수당과 아동세제 환급을 통합하여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의 실질적인 양육자인 엄마에게 첫째아부터 비과세로 지급하는 명실상부한 보편적 아동수당이라고 제도 도입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특히 그동안 아동세제 환급(CTA) 제도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득 조사(means-test)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에 의존하던 가구들이 이제 당연한 권리로서 그들 소득의 상당 부분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첫째아까지 포함됨에 따라 가족수당제도에서 배제되었던 아동과 한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큰 가치를 부여하였다.

1977년에는 아동수당과 아동수당 인상제가 도입되었고, 아동세제 환급(CTA)에 대한 금액연동제(index-linked)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동세제 환급은 바로 다음해인 1978년에 완전히 폐지된다. 보수당 집권 이후 아동수당 금액의 실질가치는 명목금액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지 못하였고, 1986년 사회보장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수당 금액이 동결되었다. 1990년 10월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아동수당 금액 인상이 발표되었으나, 첫째아에 대해서만 주당 급여액을 1파운드 인상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고

정하는 방식이었다. 다음해인 1991년 4월부터 다시 첫째아 급여액이 주당 1파운드 추가로 인상되었고, 둘째아 이상에 대한 급여는 같은 해 10월이 되어서야 첫째아 인상수준보다 낮은 인상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재정적자가 지속되었고 1997년에 들어선 노동당 정부는 일련의 재정 긴축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8년 고든 브라운 총리는 1999년 4월부터 인플레이션에 연동한 일상적 금액 인상과 더불어 첫째아 수당 금액을 20% 이상(주당 2.5파운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표 3-9〉 영국 아동수당 금액 변화 추이

(단위: 파운드/주)

시행 연월	첫째아	둘째아 이상	한부모
1992년 4월	9.65	7.80	15.50
1993년 4월	10.00	8.10	16.05
1994년 4월	10.20	8.25	16.35
1995년 4월	10.40	8.45	16.70
1996년 4월	10.80	8.80	17.10
1997년 4월	11.05	9.00	17.10
1998년 4월	11.45	9.30	17.10
1999년 4월	14.40	9.60	17.10
2000년 4월	15.00	10.00	17.55
2001년 4월	15.50	10.35	17.55
2002년 4월	15.75	10.55	17.55
2003년 4월	16.05	10.75	17.55
2004년 4월	16.50	11.05	17.55
2005년 4월	17.00	11.40	17.55
2006년 4월	17.45	11.70	17.55
2007년 4월	18.10	12.10	-
2008년 4월	18.80	12.55	-
2009년 1월	20.00	13.20	-
2010년 4월	20.30	13.40	-
2011년 4월	20.30	13.40	-
2012년 4월	20.30	13.40	-
2013년 4월	20.30	13.40	-
2014년 4월	20.50	13.55	-
2015년 4월	20.70	13.70	-
2016년 4월	20.70	13.70	-

자료: HM Revenue & Customs. (2016). Child Benefit Statistics.

이러한 수당 금액 인상과 별도로 같은 해 3월 예산서(Budget statement)에서는 고소득 계층의 아동수당 수급에 대한 과세안이 제안되었다. 이후 1998년 7월 14일 통합지출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에서 브라운 총리는 16세 이상에 대한 아동수당을 소득조사 기반 교육보조수당으로 대체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3년 신노동당 정부는 복지 수급자의 근로 유인과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근로 조건부 소득조사 기반 현금 지원 제도로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를 도입하였고, 경기회복과 더불어 육아 휴직의 제도화와 확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8년 심각한 금융재정 위기 이후 2010년 집권한 연립정부가 다시 사회급여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재정합리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 금액은 2014년까지 동결되었다. 또한 오랫동안 검토되었던 고소득층 아동수당 과세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되어 2013년 1월 7일부터 고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수급한 아동수당 금액에 대하여 연간 개인 조정순소득 5만 파운드 초과 100파운드당 1%씩 과세하여 최대 100%(99.999%, 계산상)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HICBC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HICBC의 설계 과정을 보면, 2010년 10월 보수당 회의에서 2013년 1월부터 고소득 납세자 가구에 대하여 지급된 아동수당 금액을 전액 과세하여 환수하는 형태로 고안되었다. 하지만 기준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외별이 가구의 경우 전액 환수되는 반면에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기준 소득 금액 이하이지만 합산 소득이 전자의 외별이 가구보다 많은 경우 전액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소득기준선 근방에 위치한 사람들의 근로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2년 예산법안에서는 소득 상한 초과 시 아동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과세하는

HICBC가 채택되었다.

HICBC는 아동수당 수급 금액에 대한 분리과세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아동수당 수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연간 조정순소득(adjusted net income)이 5만 파운드를 초과했을 때 적용되며, 계산상 6만 파운드 이상 이라면 전액 환수되는 구조이다. HICBC 과세 금액은 개인의 조정순소득이 50,001~59,999파운드 구간에 대하여 다음의 산출식 (1)을 통해 결정된다.

$$\text{납부해야 하는 HICBC} = \frac{Y-L}{X} \% \times \text{아동수당 수급액 (1)}$$

이때 Y는 개인(최고소득자)의 조정순소득, L은 50,000파운드, X는 100파운드임.

맞벌이 부모 각각의 개인 조정순소득이 5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 최고 소득자에게 납세 의무가 부과되며 그의 소득을 기준으로 HICBC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때 배우자 관계에 있다는 의미는 법적 혼인 관계 이외의 동거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조정순소득(adjusted net income)은 개인공제가 적용되기 전의 총 과세소득(taxable income)¹³⁾에서 연금기여금, 퇴직연금계약(Retirement annuity contracts), 자전거 패키지 구매 계획(Cycle scheme), 기부금(Gift Aid) 공제를 통해 연간 소득이 6만 파운드를 초과하더라도 공제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HICBC는 아동수당 수급액보다 적을 수 있다.

HICBC 과세액은 자기평가(Self Assessment)를 통해 영국의 과세당국(HM Revenue & Customs)에 납부하게 된다. 아동수당 수급을 원치

13) 이때 과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간 7,500파운드(2016기준, Rent a Room Scheme 소득상한)를 초과하는 주거임대사업소득, 직장에서 받는 복지혜택, 신탁자산소득이 포함됨. ISA또는 국민저축계좌 등 비과세 저축 이자소득, 개인저축공제 한도까지의 이자소득, 국민복권 당첨금, Rent a Room 한도까지의 주거임대소득 및 비과세 복지급여는 비과세 소득임(영국 정부 홈페이지 소득세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 www.gov.uk에서 2017. 10. 20 인출).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과세당국에 수급 배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HICBC를 면제받는다. 아동수당 수급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수급 배제를 신청했고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않더라도 수급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전업주부 등 일하지 않는 보호자의 경우 그의 공적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보험 크레딧(National Insurance credit)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 사실을 모르고 수급 배제 신청을 하는 엄마들도 많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요약하면, 부부 모두 일을 하는 경우로서 부부 각각의 개인 조정순소득이 6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 HICBC 면제를 위해 아동수당 수급 배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경우 수급 배제 신청을 통해 더 이상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가구원 구성의 변화나 소득수준의 변동 등 가구현황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HICBC는 제도 원리상 여전히 외벌이와 맞벌이 간 불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자산 조사에 기반하여 선별적인 아동수당제도로 전환하는 대신 지급한 수당 금액에 대하여 과세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정책의 주목적이 고소득층에 대한 수당 지급액 절감분을 저소득층에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중립적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수급 배제를 유인함으로써 ‘아동수당 재원을 절감’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일부 소득계층에 대한 수급 배제를 위하여 2016년 8월 말 현재 740만 가구 1,288만여 명 아동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각종 행정적 사회적 비용 문제와 선별 제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선별 오류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 4 장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제1절 보편적 균등 수당 지급

제2절 정책 대상 및 양육수당지원 제도와의 중복 여부

제3절 현금 이외 아동수당 지급 방식의 허용

4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각국의 아동수당제도는 해당 국가의 제반 여건과 분배적 정의 확보, 인적자본 투자, 출산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3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통해 상이한 구조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았다.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그러나 대체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갖추고 있으며, 조세를 근간으로 운용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나 자녀 수, 아동 연령 등과의 연계 여부나 방식, 수준은 나라별로 편차가 존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정부가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예고한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안과 관련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적절성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해 보기로 한다.

제1절 보편적 균등 수당 지급

가. 규범적 근거와 집행 효율성

우선 가장 첨예한 논쟁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 모든 대상 아동에 대하여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균등 수당액 지급 원칙이다.

〈표 4-1〉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목적과 지원 대상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2.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아동수당 지원대상 등)

- 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말한다)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수준을 초과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전문에서 발췌

정부의 아동수당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에 따르면, 입법 목적을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균등한 기회’ 보장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아동수당의 보편적 균등 지급 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제2조는 수당의 수급권자를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수당을 아동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균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4조의 아동수당 지원 대상 등에 대한 규정에서는 제1항에서 연령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수급 대상을 한정

하고, 수당 금액의 균등 지급 원리를 규정하며, 제2항에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 다시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하위 법령에 유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구소득 기준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

소득기준의 적용 여부는 아동이 수급권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처분권이 보호자 즉, 경제활동 세대인 부모에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의 규범적 근거는 제정안 목적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UN 아동권리협약(UNCRC: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UN 아동권리협약 전문은 세계인권선언(제2조)과 국제인권협약에서 선언된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성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며, 특히 아동기에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다는 인권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유니세프 홈페이지).

2016년 한국 정부가 제정·선포한 아동권리헌장 역시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고,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서는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따라서 보편적 균등 수당의 지급은 이상의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

국 헌법(전문, 제10조, 제34조 등)과 이를 구체화한 아동복지법이 요구하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주권적 단일체로서의 국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입법조치라 할 수 있다. 즉, 가구소득 수준 등 부모 계급의 특성에 기준한 선별적 지원을 부정함으로써 아동을 부모에 종속된 객체가 아니라 아직 사회경제적 계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미래 사회 구성 주체로서의 아동의 가치를 구체화된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수평적 재분배의 문제이다. 동일한 소득수준에 있는 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의 구매력은 자녀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소득계층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일정 금액의 지급을 통해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자녀를 키울 수 있고 그에 따른 소득충격을 경험하거나 양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수당은 생애주기에 걸친 자원의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Bennett, F. and Dornan, P. 2006; Kennedy 2012).

셋째, 이와 유사한 근거로 세대 간 재분배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즉,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자란 아동들이 미래에 생산 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현재 자녀가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불특정적으로 배분된다는 점에서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차원에서 아동의 부모와 함께 양육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Bennett, F. and Dornan, P. 2006; Kennedy 2012). 또한 생애주기에 있어 경제적 능력이 확정되지 않은 아동기에 있는 경제주체에 대한 투자이고 그 편익을 사회전체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이라는 자격여부만을 고려한 균등지원은 충분한 정당성을 갖는다.

넷째, 생애 주기 수혜 기회의 평등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동수당은 자격 기준에 연령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노령기 지원에 비해 상대적

으로 평등한 수혜 기회를 부여한다. 즉, 아동 개인의 미래 소득 능력이 확정되지 않은 평등한 상태에 있고, 수혜의 기회 역시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지원 수준에 있어서의 차별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다섯째, 소득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현실적 문제점으로 우선 선별 비용의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복지급여에 있어 현금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선별의 필요성과 실제 적용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수많은 논쟁과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어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급여 또는 수당을 인간 권리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지급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반면에 재분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고, 한정된 재원을 고려했을 때 선별적으로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념은 공공부조의 근간을 구성하며 대체로 사회보장제도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편, 정치적 이념이나 동기 역시 선별 여부에 대한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돕는다는 점에서는 선별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실행에 있어 과연 누가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인가를 판단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선별성이 전체 이전지출 프로그램의 비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효과적인 수급 대상의 선별을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 선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행정 비용 이외 숨겨진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RHVP프로그램의 정책보고서 분류에 따르면 사회적 이전 프로그램의 선별비용은 구체적으로 행정비용, 민간의 사적비용, 간접비용, 사회적 비용 또는 장기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RHVP 2007).

어떤 방식의 선별이든 이와 관련해서는 항상 인력과 기술, 시간, 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대상자격의 변동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비용 또한 소요되며 모두 행정비용에 속한다. 한편, 민간의 사적비용은 잠재적 수급대상자가 자격을 증빙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의미하며 쉽게 말해서 민간의 행정 불편비용이라 할 수 있다. 간접비용은 수급자격 유지 또는 획득을 위해 수급대상자가 행태를 바꿈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하며 빈곤함정과 같은 문제를 의미하며, 일부 계층을 분리함으로써 낙인 효과를 유발하고, 사회적 연대나 사적이전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등의 잠재적인 사회적 손실비용을 모두 포괄한다.

보편적 현금 이전을 지지하는 이념적 주장에 따르면 가구소득과 무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또는 차별을 줄이고, 수혜자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며, 사회관계성을 이끌어내며 사회적 책임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근래에 들어 아프리카 저개발국 사회적 현금 이전 프로그램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지지되고 있다(UNICEF-ESARO/Transfer Project, 2015, pp. 32-36 참조).

정치적 비용이란 예컨대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한정된 제도에 집중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비수혜 계층이나 혹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부유층으로부터의 정치적 지지를 잃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는 손실을 의미한다(RHVP 2007; Cornia and Stewart 1993). 여기서 잠깐 소득기준을 적용해서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생각해 보자. 관련 소득기준 선별안을 보면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의 50~150% 수준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체계의 생계급여 제도는 자녀 수나 연령과 무관하게 단순히 가구원

수만 반영하여 급여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 지원은 선별적 아동수당과 같은 새로운 별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현행 생계급여 체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자녀의 수와 연령을 반영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소득 상한 기준을 충분히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맞춤형 개별 급여 제도로 개편된 것 이외 사실상 생계급여의 대상 범위는 실질적으로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생계급여 체계의 조정을 통한 선별적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같은 제안이나 유사한 제도개편 노력이 이제껏 시도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쩌면 ‘정치적 비용’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별 비용과 관련하여 최근 IMF는 전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득 지원 즉, 기본소득 제도의 효율성에 주목하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산조사 기반 급여 제도의 경우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여 선별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을 선별하며 급여를 전달하는 비용의 문제가 최종 수혜 대상의 규모를 최적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보편적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전달비용을 줄이고 수혜 계층의 확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 진보와 자동화 또는 경제위기 등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보편적 현금 급여의 소득 보장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IMF, 2017).

여섯째, 관련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정부 제정안의 정책 대상과 목적을 공유하는 가족정책인 영유아 보육/교육은 전 소득계층 무상지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아동수당 수급 연령의 확대를 가정한다면, 무상급식이나 의무교육제도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 현실에

서 아동수당에 대해서만 소득에 연계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거나 일부 소득계층에 대하여 수급을 제한할 당위성이 부재하다.

마지막으로 세제개편(안)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조정의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검토해 볼 문제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자녀 1인당 연간 150만 원의 소득공제와 자녀 2명까지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초과 1인당 연 15만 원씩 추가 공제해 주고, 출생 및 입양 신고 자녀에 대해서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등의 추가 출생세액공제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아동수당제도 신설과 병행하여 2018년부터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 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2021년부터는 자녀 1인당 15만 원 세액공제 대상에서 만 6세 미만을 배제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세액공제의 경우 대부분 고소득층이 주 수혜 대상이라는 점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계획된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녀세액공제와 같은 조세 혜택보다 아동수당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 급여 방식이 더 선호된다.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조세 혜택의 주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남성 부양자라는 점에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조세 혜택을 폐지하고 아동수당과 같은 직접적인 소득 지원 제도로 편입하는 노력을 추진해 왔다. 그 밖에도 급여 지급의 빈도에 따라 자원 투자와 배분에 대한 수급자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데, 그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효과와 크기에 차이가 발생한다. 자녀세액공제나 지자체의 출산 축하금과 같은 일회성 지급 방식은 국지적인 효과에 한정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즉, 소득 흐름

의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에 생애 소비 평탄화가 가능하며, 따라서 일회성의 또는 간헐적인 현금 이전은 내구재나 준내구재와 같이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소비나 저축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 성장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비정기적인 이전 성격을 갖는 조세 혜택은 정기적 이전소득 제도보다 소비 평탄화 효과가 낮고 따라서 경제적 효과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이 일반적 지식이다. 또한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한꺼번에 일괄 지불하는 형태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소득수준별 자녀에 대한 투자 지출의 불평등 완화 효과 역시 크지 않으므로 중복적 성격의 조세 지원을 아동수당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성장-분배 효과¹⁶⁾

이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별 여부에 따른 중장기적 성장-분배 효과를 시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선별 제도의 편익을 측정하여 적절성 여부를 가늠해 본다. 2016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상 파악되는 0~5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이 국민경제 전체 순환 과정에서 상이한 부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초래하는 소득변화와 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고제이 등(2014; 2015)에서 사용한 사회계정행렬(SAM:social accounting matrix)을 보정하여 활용하였다.¹⁷⁾

정책 시뮬레이션 과정은 다음과 같다.¹⁸⁾ 77개 내생계정(n)으로 구성된

16) 본 소절의 정책시뮬레이션은 발간예정에 있는 용역보고서(보건복지부 2017)의 정책시나리오를 추가 확장하여 시산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7) SAM의 개념과 작성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고제이, 노용환, 오미애, 이우진, 최현수, 장인수 등(2014)을 참조하기 바란다. 중복 우려로 본고에서 설명을 생략하는 것에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18) 산식(2)는 고제이 등(2014, p. 111)에서 식 (1)을 재인용한 것임.

SAM의 승수행렬($(I-A)^{-1}$)과 아동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각각의 외생변수 지출 합으로 주어지는 충격벡터 x 의 연산 식 (2)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효과를 측정한다.

$$y_n = A_n y_n + x = (I - A)^{-1} x = M_n x \quad (2)$$

$$\text{단, } A_n = \begin{pmatrix} O & O & A_{13} \\ A_{21} & A_{22} & O \\ O & A_{32} & A_{33} \end{pmatrix}$$

A_n : n 개 내생계정으로 구성된 SAM을 생산요소, 제도, 생산 부문으로 분할할 때 각 계정의 평균 지출성향을 의미함.

정책 효과 시산에 적용하는 외생충격벡터 x 는 2016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확보 가능한 소득계층별 0~5세 아동 수 분포와 아동수당 지급 시나리오별 연간 지급액 추정분포를 사용하였다. 이때, 소득계층별 대상 연령 아동 수는 2016년도 1세 연령별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가계의 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소비-저축행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여기서는 아동수당 시나리오별 가처분소득 분포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시나리오별 충격벡터를 구성하였다.

〈표 4-2〉 2016년도 가구균등화 처분가능소득 10분위별 0-5세 양육아동수 및 시나리오별 아동수당 연간수급액 추정치

(단위: 명, 백만원)

소득분위	0-5세 아동 수	아동수당 연간수급액							
		(전소득계층 월10만원 균등지급, 기준선)	소득하위 90% 지급				소득하위 80%지급		
			재정절감1	재정중립 2	재정중립 3	재정중립4	재정중립 2-1	재정중립 3-1	재정중립 4-1
1분위	70,316	84,379	84,379	344,480	147,942	101,874	520,261	190,899	113,698
2분위	217,418	260,901	260,901	260,901	457,439	314,996	260,901	590,263	351,555
3분위	372,918	447,501	447,501	447,501	447,501	540,286	447,501	447,501	602,992
4분위	384,735	461,682	461,682	461,682	461,682	557,407	461,682	461,682	622,100
5분위	342,885	411,462	411,462	411,462	411,462	411,462	411,462	411,462	411,462
6분위	376,917	452,301	452,301	452,301	452,301	452,301	452,301	452,301	452,301
7분위	367,202	440,643	440,643	440,643	440,643	440,643	440,643	440,643	440,643
8분위	213,455	256,146	256,146	256,146	256,146	256,146	256,146	256,146	256,146
9분위	146,485	175,782	175,782	175,782	175,782	175,782	0	0	0
10분위	216,751	260,101	0	0	0	0	0	0	0
전체	2,709,080	3,250,896	2,990,796	3,250,896	3,250,896	3,250,896	3,250,896	3,250,896	3,250,896

주: 통계청 2016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전국 2인이상 가구균등화 처분가능소득 10분위별 인구가 중치 적용 0-5세 가구원 수 분포를 기준으로 2016년 주민등록 연앙인구수와 가계동향조사 아동 수와의 차이 비율을 보정계수(0.1517)로 사용.

자료: 저자 산출

아동수당 파급효과 분석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총 8개다. 먼저 기준선은 정부 당초 계획과 같아 0-5세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연계 선별지급 시나리오는 국회 예산절결과 같이 소득상위 10%를 제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시나리오1)과 재정중립을 가정하는 시나리오 2~4-1까지 6가지 지급안이다. 재정중립 시나리오 2는 소득상위 10% 배제에 따른 재정절감액 (260,100백만원) 전액을 1분위 0-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안이다. 재정중립 시나리오 3은 재정절감액을 2분위 이하 대상 아동에게 균분하여 지급하는 안이다. 재정중립 시나리오 4는 재정절감액을 4분위 이하 대상 아동에게 균분 지급하는 안이다. 재정중립 시나리오 2-1에서 4-1은 소득상위 20% 수급 배제에 따른 재정절감액(435,882백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각각 균분하여 하위 소득계층 아동에게 추가 지급하는 안이다.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가처분 소득 변화가 고려된 소득계층별 수급액 분포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정책효과 시산에 활용한 가계소득 충격벡터는 다음과 같다(〈표 4-3〉).

〈표 4-3〉 정책충격 벡터

(단위: 백만원)

계정	기준선	소득하위 90% 지급				소득하위 80%지급		
		재정절감1	재정중립 2	재정중립 3	재정중립4	재정중립 2-1	재정중립 3-1	재정중립 4-1
...	0	0	0	0	0	0	0	0
67	78,211	78,211	106,165	66,893	94,427	114,943	86,316	99,753
68	188,291	188,291	418,334	325,066	209,960	377,160	371,484	231,710
69	392,764	392,764	394,867	527,407	473,677	510,228	637,347	509,238
70	506,205	506,205	506,205	506,205	602,280	599,021	506,205	682,196
71	409,108	409,108	409,108	409,108	454,335	409,108	409,108	487,563
72	461,218	461,218	461,218	461,218	461,218	461,218	461,218	461,218
73	463,950	463,950	463,950	463,950	463,950	463,950	463,950	463,950
74	291,316	291,316	291,316	291,316	291,316	291,316	291,316	291,316
75	199,734	199,734	199,734	199,734	199,734	23,952	23,952	23,952
76	260,101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재정 규모	3,250,896	2,990,796	3,250,896	3,250,896	3,250,896	3,250,896	3,250,896	3,250,896

자료: 저자 산출

위 산식 (2)를 통해 각각 제도상태에서의 파급효과는 〈표 4-4〉와 같이 정리된다. 이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비용이 보편지급 시 재정총량의 5% 이상이라면 선별지급에 따른 분배측면의 편익은 0에 가까운 반면 모든 경우에서 보편적 지급에 비해 성장측면에서의 손실이 확인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과 같이 단지 고소득층에 대한 수급을 제한하는 재정절감의 경우 성장손실을 감수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분배측면의 이익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상자 선별비용이 무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다면 소득에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대상 집

단 전체에 대한 자산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수급배제 인원의 수와 상관 없이 선별비용의 크기는 고정적이며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자 규모에 비례한다. 따라서 수급배제 기준소득이 높을수록 즉, 배제대상 아동수가 작을수록 기대할 수 있는 선별지급의 편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공부조가 아니라 아동 일반에 대한 소득지원이라는 아동수당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수급배제기준은 낮지 않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선별의 편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4〉 시나리오별 성장-분배효과

(단위: %, 지수)

구분	기준선	소득하위 90% 지급				소득하위 80%지급		
		재정절감1	재정중립 2	재정중립 3	재정중립4	재정중립 2-1	재정중립 3-1	재정중립 4-1
성장	순 총소득증가율							
	-선별비용 0 가정	0.1950%	0.1803%	0.1960%	0.1961%	0.1961%	0.1966%	0.1967%
	-선별비용 3% 가정	0.1950%	0.1792%	0.1950%	0.1951%	0.1951%	0.1956%	0.1956%
	-선별비용 5% 가정	0.1950%	0.1785%	0.1943%	0.1944%	0.1944%	0.1949%	0.1949%
	단위 성장효율성 (천억원 당)							
	-선별비용 0 가정	0.0060%	0.0060%	0.0060%	0.0060%	0.0060%	0.0060%	0.0060%
	-선별비용 3% 가정	-	0.0058%	0.0058%	0.0058%	0.0058%	0.0058%	0.0058%
	-선별비용 5% 가정	-	0.0057%	0.0057%	0.0057%	0.0057%	0.0057%	0.0057%
분배	GINI	0.2737	0.2736	0.2732	0.2733	0.2734	0.2730	0.2730
	-분배효과 (초기가처분소득 GINI 0.2749대비 편차)	0.0012	0.0013	0.0016	0.0016	0.0015	0.0019	0.0019
	단위 분배효율성 (천억원 당)							
	-선별비용 0 가정	0.0000	0.0000	0.0001	0.0000	0.0000	0.0001	0.0001
	-선별비용 3% 가정	-	0.0000	0.0000	0.0000	0.0000	0.0001	0.0001
	-선별비용 5% 가정	-	0.0000	0.0000	0.0000	0.0000	0.0001	0.0001

주: 분배효과는 초기가처분소득 기준 GINI계수와와의 차이를 의미.

자료: 저자 산출

한국의 관련 제도현황을 보면, 저소득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사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아동수당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더라도 최소한의 분배적 형평성은 담보될 수 있다.

양호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and 건강한 아동발달을 도모하여 미래사회 생산성 확보를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정부가 분담한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으로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이 타당하다.

아동수당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목적을 추구한다고 할 경우라도 그 구현 방식을 지급수준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소득 연계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이나 일부 소득계층 아동에 대한 수급 제한과 같은 부정적인 방식보다, 일정 소득수준 이상에서의 아동수당 수급액에 대한 소득과세를 통해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모든 아동에 대한 균등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의 배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담보하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제2절 정책 대상 및 양육수당지원 제도와의 중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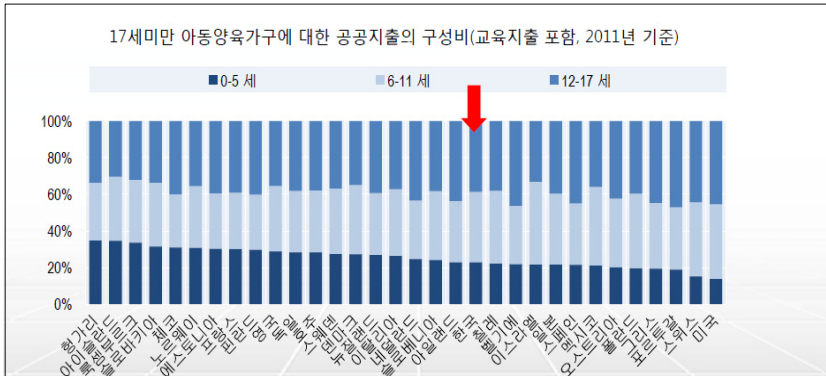
가. 정책 대상 연령의 적절성

선진국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을 보면 대체로 취업 전 연령까지의 지원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한정적인 대상에 국한하여 도입된 후 차츰 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효과성을 극대화하면서 분배적 정의를 담보하고 향후 균형적인 가족지원 체계의 확립을 위한 제도 개혁까지 고려했

을 때, 제도의 출범 단계로 영유아 집단에 대한 보편적 현금 지급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0~17세 아동에 대한 공적 이전 총액의 배분 구조를 보면, 0~5세 23%, 6~11세 38%, 12~17세 39%로 영유아 지원이 상대적으로 과소하다. 2013년 무상보육 등 영유아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낮다. 2015년 결산 기준 으로 월평균 1인당 정부투자액을 추산해 보면, 초등학교 생 지원이 영유아 대비 약 1.7배 크게 나타난다.

[그림 4-1] OECD 국가의 자녀 양육 가구 지원 구조



자료: 1)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7. 9.1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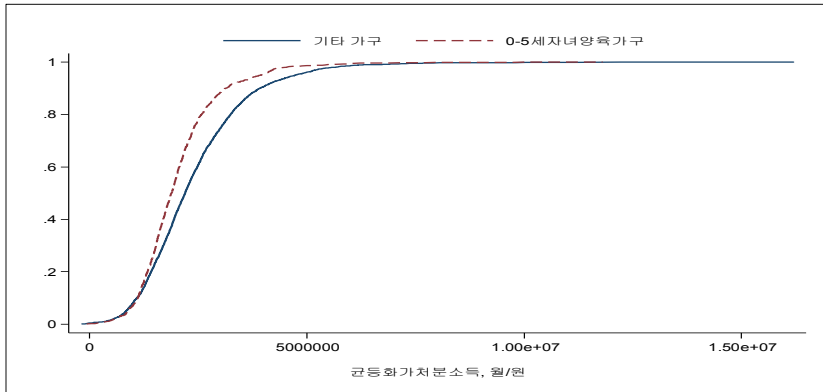
2) 고제이. (2017). 아동수당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 발표자료.

통계청 2016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기준 연령대별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즉각적인 아동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시산 결과, 약 3조 원 투자를 통해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 빈곤과 소득불평등은 각각 2.2%와 0.9%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히 작은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2016년 기준 공적 이전과 조세를 통해 시장소득 기준 아동 빈곤과 소득

불평등은 각각 15.6%와 12.3% 개선되었는데 이때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약 185조 원이고 주요 현금성 급여 지출은 78조 원에 이르렀다. 현금 급여 1조 원 당 아동 빈곤은 0.2%, 소득불평등은 0.16% 완화된 것이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0~5세 아동수당의 빈곤과 분배 효과를 살펴 보면, 각각 1.25%와 0.23%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이전 제도에 비해 재정 효율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제이, 2017).

아래 그림은 0~5세 아동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가구환경집단별 가처분소득의 누적밀도분포를 보여준다.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누적 밀도분포가 좌측에 위치하여 확률지배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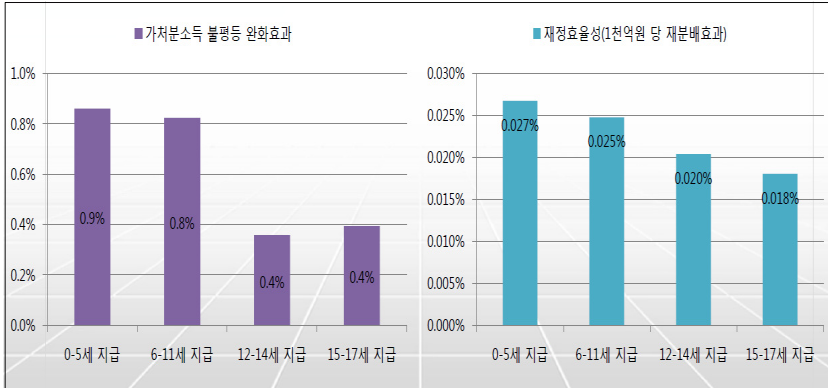
[그림 4-2] 0~5세 아동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가구환경집단별 가처분소득의 누적밀도분포, 2016 가계동향조사



자료: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3]의 대상 연령집단별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를 통해 0~5세 아동에 대한 재정 투입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 아동수당 지급 연령집단별 소득재분배 효과



자료: 고제이. (2017). 아동수당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 발표 자료.

나. 양육수당과의 중복 지원 여부

정책의 대상이 보육 연령과 중복되며, 똑같은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 지원이라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지급 형태는 현금이지만 실제적 구분은 보육료 지원이며, 따라서 아동수당과 차별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2009년 7월 도입 당시 가정양육수당은 농어촌이나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으나, 현재 동 제도는 부모에게 양육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무상보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일정 정도 제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OECD(2011)을 비롯하여 Waldfoegel, Han & Brooks-Gunn(2002), Brooks-Gunn, Hann & Waldfoegel(2010),

Felfe & Hsin(2012) 등 다수의 연구에서 낮은 질의 보육 서비스, 장시간 동안의 보육시설 이용, 영아의 보육 서비스 이용 등은 아동 행동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인지능력 형성에 부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고제이 등, 2015에서 재인용). 여성 고용률이 높고 육아휴직과 공보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도 0~2세 영아의 보육 시설 이용률이 47.3%(2014년)에 불과한데, 한국은 65%로 영아의 시설 이용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16년 현재 1세와 2세 시설이용률은 72%와 88.1%에 이른다.

영아기 가정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보육료지원에 비해 크게 낮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수준이 가정양육이 가능한 부모들로 하여금 시설보육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다. 요약하면,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투자를 통한 미래 생산성 확보, 아동 권리 증진 등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아동수당과 전혀 다른 정책 기능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헝가리, 라트비아,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3-4〉 참조).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통합 가능성에 관하여 잠시 살펴보자. 앞서 보았듯이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영아를 포함한 무상보육 체계에서 가정양육수당은 불필요한 영아기 보육시설 이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유일한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는 전면 확대 시행 이후 4년 동안 2013년 설정된 연령별 명목금액 수준에 고정된 반면(영아는 2011년 이후 고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0~2세 무상보육 시행 이후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영아 시설보육 이용에 따른 재정 비효율을 적절

히 제어하고 동시에 영아기 필요한 가정 양육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적 도구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적극적으로 양육수당 지원 단가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3년 연속 실패한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시설보육 지원 단가는 가정양육 지원 단가의 3~4배에 이른다.

지원 단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은 결과적으로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을 왜곡하는 유인 체계를 마련하게 되고, 불필요한 보육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한다. 특히 점진적으로 하락하던 0세 이용률과 1세 이용률이 최근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가정양육수당 단가를 현실화하거나 영아 무상보육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무상보육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아동수당과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없다. 현행의 영아 무상보육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일정정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 가족지원 체계 조성을 위하여 현재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추진될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의 조정과 연계하여 보육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제3절 현금 이외 아동수당 지급 방식의 허용¹⁹⁾

정부 제정안 제10조는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급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방식의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해당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있다. 기본적으로 현금 급여와 현물 또는 바우처는 선택권과 정책 대상의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을 지니기에, 사회보장급여 제공 방식의 선택은 해당 복지제도 고유의 특성과 목적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표 4-5〉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지급 방식에 대한 지자체 재량권의 인정

제10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

- ④ 아동수당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이하 “수급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방법·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전문에서 발췌

19) 본 절은 발간 예정에 있는 용역보고서(보건복지부, 2017)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다.

현금 급여가 소비자 선택의 폭과 소비자 주권에서 유리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수급자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용 비용도 낮은 장점이 있음에도,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에서 현물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았던 것은 한정된 복지재원의 제약 하에서 수급자 관리의 효율화가 강조된 측면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복지의 양적 규모만이 아니라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확대되어, 국가의 관리 효율화보다는 수급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더 중시되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와 달리 과거 현금 급여가 주를 이루었던 OECD 국가들에서는 지출 구조의 합리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현금 급여 중심의 급여 제공을 현물 급여 제공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수요자의 선택권만이 아니라 공급자 측면의 관리 효율화가 최근 들어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아동수당 제도 설계에서 적합한 지급 방식의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본래의 목적 달성에 있기에, 먼저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일차적 목적이 미래 경제활동 주체인 아동에 대한 투자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면, 지급된 아동수당의 이용 시기나 지역, 사용처를 사전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현금 급여 형태를 통해 부모들의 자녀 양육과 투자 방식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금 급여 지급 방식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직접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자녀 양육 가구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분배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취지에 적절히 부합하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가족지원 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부합한다.

반면, 현금 급여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현재 논의 중인 상품권(고향사랑 상품권 또는 영세상공인상품권) 지급 방식은 이것이 지향하는 정책 목적이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나 골목상권과 같은 특정 지역 또는 일부 산업 부문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기에 아동수당제도가 명시한 법적 목적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상품권 제공은 소비자, 특히 양육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선택권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만드는 문제로 인해, 아동에게 필요한 투자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권 방식은 정책적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경제·산업 지원 제도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부 재정 사업이 확대·추진 중에 있다(〈표 4-6〉참조). 그에 추가적으로 동일한 산업정책 목적을 지향하는 상품권 제공을 아동수당에 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동수당제도가 실제 도입도 되기 전에 그 취지를 퇴색시키거나 혼돈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표 4-6〉 중기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2017년도 국회 확정 예산

분야	부문	회계	프로 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7년 예산 (백만 원)
산업·중소 기업및에너지	산업 진흥· 고도화	지역발전특별회계	소상 공인 · 전통 시장 지원	전통시장및중소유 통물류기반조성 (지특)	전통시장및중소 유통물류기반조 성(지특, 제주)	4,020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통시장및중소유 통물류기반조성 (지특)	전통시장및중소 유통물류기반조 성(지특, 생활기 반)	72,153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통시장및중소유 통물류기반조성 (지특)	전통시장및중소 유통물류기반조 성(지특, 세종)	18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 (기금)	소상공인창업지 원	13,130

분야	부문	회계	프로 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7년 예산 (백만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 (기금)	소상공인성장지 원	50,79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 (기금)	소공인특화지원	32,04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 (기금)	소상공인재기지 원	10,0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 (기금)	소상공인지원인 프라	7,80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용자 (기금)	소상공인지원 (용자)	1,625,0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용자 (기금)	소상공인 이자보전	8,96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통시장활성화지 원(기금)	시장경영혁신지 원(ie. 온누리상품권)	170,08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통시장활성화지 원(기금)	전통시장주차환 경개선	99,808
계						2,147,122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부자료).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는 현물 지급 방식은 이러한 외형적인 정책 목적상의 부조화 문제만이 아니라, 양육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실제 소비 선택을 특정한 방향으로 구속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를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즉, 상품권 적용 범위의 협소함으로 인해 상품권 이용 소비 품목이 양육 가구의 기존 소비 품목을 적절히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권의 지급은 당초 기대했던 대체 효과나 소득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0~5세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연령이 현재 30대 초중반의 비교적 젊은 세대이며 대체로 맞벌이가 많은 특성에 따른 소비 패턴을 생각했을 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이용에 한정하는 것 또한 실제 수혜자의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책 효과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제도가 의도했던 아동에 대한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제고 기능은 미약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지급 방식의 문제로 제도

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내적 부정합성이 초래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아동수당을 상품권(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만일 아동수당을 상품권, 특히 특정 부문이나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상품권으로 지원한다면, 이를 더 이상 아동수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며, '산업진흥 아동상품권' 또는 '온누리 아동상품권'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편적인 아동수당의 핵심이 기회균등에 있다고 할 때, 일부 지자체에 한해 현금 대신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제약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 사회보장의 수평적 형평성에 위배되며, 보편성 원칙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또한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의 효용성에 차이가 나면, 지역 간 양육 지원의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어, 보편성의 원칙은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품권이 지급되는 일부 지자체 주민은 소비자 주권의 침해로 인해 수평적 불평등을 인식하게 되고,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의 확보도 요원해지며, 새로운 갈등만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 불평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수당제도의 보편성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현금 급여 지급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은 분명하다. 지급 방식의 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지급방식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더 선호될 것인지, 현금 이외 현물 지급 방식은 그것이 의도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지, 아동수당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은 수당의 지급 방식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지, 음성적 거래 등 재정 낭비의 가능성은 없는지,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 예상 가능한 사회적 반발과 불만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진흥 상품권으로 아

동수당을 대체하는 경우, 심각한 유인 수요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0~5세 자녀 양육 부모는 연령상 20대 후반~30대 초반에 해당하는 데, 이들은 현존 세대 중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세대로서 핵심 담세자 계층에 해당하고, 맞벌이 비중이 높으며 소비 패턴이 기성세대와는 크게 차별화된다. 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주요 고객층이 아니며, 따라서 다자녀 가정이 아니더라도 미이용 상품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의 상품권 지급 사례를 적용해 보면, 전통적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0~5세 자녀 양육 부모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비 총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소비 항목과 장소 등의 제약에 따라 대규모의 상품권 음성 거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품권 제도의 이차적인 수혜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수익은 크게 증대되지 못한 채, 현금화에 따른 재정 누수와 상품권 지급 행정 비용만 낭비되고, 아동수당 수급자는 불필요한 효용감소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하여 부모의 소득처분권을 제한하는 상품권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현금을 자녀 양육 이외에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정부당국의 불신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고된 바와 같이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관련 세제 혜택 등은 자연스럽게 폐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곧 자녀 양육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현재보다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수당을 상품권 형태로 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세금으로 본인이 원치 않는 상품권을 강제로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결국 아동수당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제 5 장

아동수당제도 운영 방향

제1절 개선 과제

제2절 아동수당제도 확대 운영 방향

5

아동수당제도 운영 방향 <<

제1절 개선 과제

앞서 우리는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의 가족지원 현황과 아동수당제도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도입을 준비 중에 있는 아동수당제도와 관련한 쟁점 사항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보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동 일반에 대한 보편적인 소득 지원이 가능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통해 한국 가족정책의 기능을 부가하고 동시에 이를 지렛대 삼아 관련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제도들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바람직한 자녀 양육 환경의 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가족정책 체계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양육수당과의 통합 가능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관련 제도들과의 조율에 있어 최우선적인 과제는 아동수당-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제도 간의 관계 설정에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지급 방식이 현금이라는 점에서는 아동수당과 같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부모의 돌봄 노동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아동수당과 차별된다는 점은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다만, 현재의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이분화 된 구조에서 지원 단가의 격차가 영아들의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유인할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즉, 무상보육 체계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부모들의 양육 방식 선택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0~2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1,021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표 5-1〉 참조).²⁰⁾

〈표 5-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만 0~2세 자녀를 둔 부모 1021명
표본 크기	어린이집 이용가구 515,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 506
조사기간 및 방법	2017년 5월12일~2017년 5월 25일
조사 방법	전화 면접 조사

조사된 부모의 26.2%가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없이 아동수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경우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의 경우 20.4%이며, 아동의 나이별로 보았을 때,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세 아동의 가구’가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일반 이용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보았을 때 200만 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부모들 중 32%, 아동의 나이별로

20) 상기 조사의 목적은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도입될 경우 시설 미이용을 조건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과 불필요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의 선택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한 분석에 활용되지 않는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고 부록에 수록하는 것으로 생략한다.

보았을 때 2세에서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을 기준해서는 800만 원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유인과 가정 양육 유인 제공 여부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가정 양육으로 전환 또는 유지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결과는 아동수당 도입 공약으로 양육 행태를 바꿀 유인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행태 변화와는 무관하다.

〈표 5-2〉 소득구간 별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 행태 변화 유인 인식

소득구간(월, 만 원)	어린이집 이용 유인 제공(%)	가정 양육 유인 제공(%)
0~199	10.45	1.49
200~299	32.84	28.36
300~399	13.43	35.82
400~499	23.88	10.45
500~799	11.94	17.91
800 이상	7.46	5.97
계	100	100

실제 양육 행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 방식 계획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계획에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공약이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방식 전환 여부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전환율은 다음의 〈표 5-3〉과 같다.

〈표 5-3〉 아동수당 도입 시 양육 행태 전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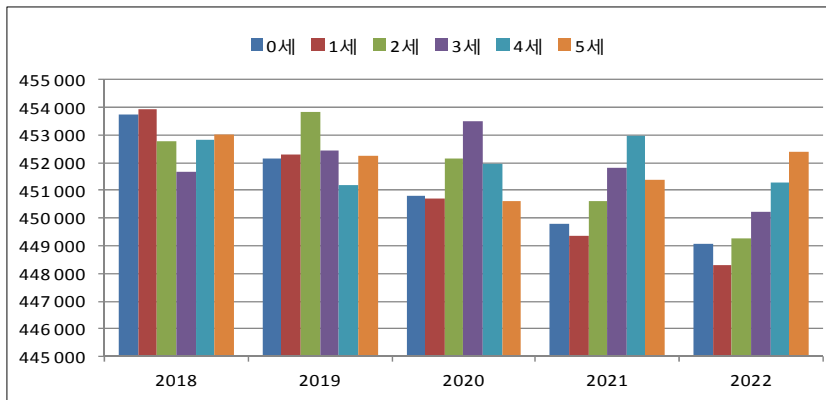
연령	현 보육료-양육수당 단계체계 유지 및 아동수당 월 10만 원 도입 시 전환율(2017조사)	
	시설→가정	가정→시설
0세	0.0588	0.0886
1세	0.0582	0.1031
2세	0.0456	0.1067
3세 이상	-	-

이상의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아동수당 지급 재원 이외 부모들의 양육 행태 변화로 인하여 보육 재원이 추가로 요구되는가를 추계해 볼 수 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의 경우 동일한 아동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지원 단가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재정 소요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보육료 지원의 경우 적용되는 보육 단가는 아동의 생활 연령이 아니라 보육반 연령을 기준한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양육 행태 변화에 따른 순비용 추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종일반·맞춤반 보육료지원 및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규모는 각 항목별 지급 대상 아동수에 해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때 지급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값)을 기준으로 0~5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추출 모수로 활용하였다.

[그림 5-1] 0~5세 아동 수 전망: 2018~2022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가정).

먼저 <표 5-4>의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종일반/맞춤반) 및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아동 수를 산출하고, <표 5-5>의 항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연령별 월 지원 총액 규모를 산출하여 연간화하였다. 이때, 긴급보육바우처 적용 단가는 2016년 10월 기준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아동의 자부담 제외 월평균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였다.

<표 5-4> 적용 비율 및 이용 시간

(단위: %, 시간)

연령	가정 양육 비율	맞춤반 비율	긴급보육바우처 이용률	긴급보육바우처 월평균 이용 시간
0세	0.7203	0.300	0.683	13.1
1세	0.4901	0.300	0.803	13.6
2세	0.2328	0.300	0.825	13.6
3세 이상	0.1008	-	-	-

주: 1) 가정 양육 비율-2016년 12월 말 기준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양육수당 수급 아동, 유치원 재원 아동(3세 이상) 수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2) 맞춤반 비율은 2017년 3월 현재 4만 651개 어린이집 0~2세반 재원 아동 71만 7552명, 맞춤반 아동 21만 5272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3) 긴급보육바우처 이용률 및 월평균 이용 시간은 2016년 10월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아동 기준, 자부담 제외 이용 아동의 월평균 이용 시간을 산출한 값임.

자료: 1) 보건복지부. (2017). 내부 자료.

2) 고재이 등. (2016). 맞춤형 보육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실태 분석.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음으로 현행 가정양육수당/보육료 단가 체계 유지를 전제로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시 0~2세 부모의 양육 행태 변화에 따른 순전환 비용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위의 <표 5-3>의 양육 행태 전환율을 적용하여 각 전환 대상 아동 수를 구하고 연령별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시설 이용 아동의 가정 양육 전환에 따른 양육수당 증가분과 보육료 감소분, 가정 양육 아동의 시설 이용 전환에 따른 보육료 증가분과 양육수당 감소분을 산출하였다. 이를 합산한 후 연간화를 통해 연도별 순전환 비용을 계

산하였다. 단, 생활 연령과 보육반 연령의 차이와 함께 현재 보육반 연령 구성을 반영하여 1세의 경우 시설⇔가정양육 전환 시 보육료는 0세반 기준 평균 보육 단가를 적용하고 가정양육수당은 0세의 평균 보육 단가를 적용하였다. 이때 연령별 평균 보육 단가는 전환 아동의 맞춤형/종일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령별 보육비 지원(종일반+맞춤반+긴급보육바우처)을 해당 연령별 시설이용 아동 수로 나누는 값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추계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 0~5세 아동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동수당 월 10만 원 도입 시 보육료 지원 재정 소요는 약 2000억 원 순증이 예상된다.

<표 5-5> 기준선 비용 추계 결과: (현행 보육 체계 유지 및 아동수당 10만 원 도입, 0~5세 국비+지방비 합계)

(단위: 억 원)

연도	양육수당	종일반		맞춤반			누리과정	현행 0~5세 보육·교육 지원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긴급보육 바우처		계	(누리과정 포함)
2018	14,755	21,067	11,572	7,215	4,959	1,089	32,226	60,657	(92,883)
2019	14,714	21,045	11,552	7,207	4,951	1,088	32,188	60,558	(92,745)
2020	14,673	20,972	11,513	7,182	4,934	1,084	32,191	60,360	(92,551)
2021	14,639	20,908	11,480	7,160	4,920	1,081	32,194	60,189	(92,383)
2022	14,610	20,857	11,454	7,143	4,909	1,078	32,140	60,051	(92,191)

(계속)

아동수당	아동수당 도입 전환 비용			아동수당 도입 후 0~5세 지원	
	양육수당 증감	보육료 증감	순비용	계	(누리과정 포함)
32,616	-631	2,701	2,070	95,343	(127,569)
32,570	-629	2,690	2,061	95,189	(127,376)
32,517	-627	2,681	2,055	94,931	(127,123)
32,471	-625	2,675	2,050	94,709	(126,903)
32,406	-624	2,670	2,046	94,503	(126,644)

주: 0~5세 지원 규모만 합산, 국비+지방비 총액 기준.

이러한 결과는 현행 영아 무상보육 체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정 양육이 필요한 영아 시기에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자극하고, 반대로 저소득층 자녀의 시설 이용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재정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보육 체계와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아동수당 도입으로 보육 재정 소요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또다시 행정 주체들 간의 비용 분담과 관련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고보조 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복지급여 사업의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형태의 아동수당 재정의 분담 구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시작되면서 보육(누리)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중앙-지방 간 재정 갈등은 막대한 혼잡비용을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재정 부담 확대로 봉합된 상태이다. 아동수당 도입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인상, 부양 의무자 요건 완화 등 수급자 규모 증가와 함께 지방 대응비 증가가 필연적인 상황이다. 현재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진행 중에 있는 논의 결과에 따라 아동수당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여부와 분담 구조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지난 수년간의 경험과 일본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²¹⁾ 재정 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21) 이와 관련하여 우리와 유사한 사회보장 분담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일본 역시 사회보험은 중앙 주도, 사회복지(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예산사업은 국가와 지방(광역과 기초)이 재원을 분담하고, 최종 전달은 기초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한다. 복지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은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 1999년 지방분권추진일괄법을 통해 기관위임사무 제도 폐지,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 분담 및 지자체 규제 재검토 등 개혁이 단행한 바 있다. 이후 2001년/2002년 고이즈미 정부에서는 '삼위일체' 개혁, 즉 4조 엔 국고보조금 삭감, 2조 엔 세원의 지방 이양, 5조 엔 지방교부금 삭감을 실현하기에 이르렀다. 1972년 아동수당 도입 당시 중앙과 지방의 분담 비율은 2:1(0~2세 고용주 부담 제외)이었으나 삼위일체 개혁 이후 1:1(각 주체별 1/3) 비율로 변화하였다. 2009년 민주당의 새로운 아동수당제도 도입 공약 발표 당시 전액 국가 부담을 공표하였지만, 정부 내부 반발 등에 따라 기존의 분담 구조를 유지(1:1:1)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의 반발이 거세졌고 국가 부담률 인상 요구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현재 중앙-지방 분담률은 2:1로 환원되었다(김경석, 2012).

추진된다고 하여도 지금과 같은 중앙-지방 매칭 방식은 갈등 비용만 초래하고 국가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는 보조율의 설정에 있어 과도한 지방재정 형평화 기능이 부여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교부금과 같은 배분 상태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에 기존의 공동 책임 구조를 탈피하여 국가가 재원의 조달과 전달까지 모든 집행을 책임지고, 지방은 재정의 허용 범위 안에서 고유한 아동수당 체계를 마련하여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등 독립적인 제도 운영과 집행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표 1>에 제시한 캐나다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제도 또한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일종의 재정 형평화 보조금이 아닌 진정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농 간 무차별한 기준보조율 적용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화 또는 지방교부세의 국고보조금화 등의 문제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다. 즉,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다양한 교부금 제도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배분이 중첩적으로 재정 형평화를 추구함으로써 형평화 효과가 과도하여 지자체 간 재정력을 역전시키는 부정적 기능이 발생하는 것인데, 김현아(2012), 주만수(2014), 최병호(2015) 등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교부액 간에는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고보조금이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와 유사한 형태로 배분되는 상태에서, 재정 형평화 보조금이 아님에도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주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신설되며 기준보조율의 경우 지방의 재정 격차를 고려하여 서울 등 도시 지역의 기준보조율을 낮게 설정하고 농촌 지역은 높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재정력을 고려한 차등 보조율 제도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율 설정 방식은 ‘급여 대상자 수’와 ‘급여 수준’ 그리고 ‘급여 사업의 수’에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특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분야 국고보조금의 재정 형평화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아동수당제도 확대 운영 방향

현행 관련 제도를 유지한 채 월 1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을 모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아동수당제도의 출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한국 가족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합리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세-보육-아동수당 제도 연계 조정을 통한 아동수당제도 확대 방향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결론을 갈음하겠다.

제1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육 지원 체계와의 조정은 조세 지원 제도의 개편과 병행하여 아동수당제도 확대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수당제도 확대와 관련 제도 개편 시 요구되는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고려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 기능을 아동수당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먼저 보육 지원 체계의 조정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보육 지원 구조를 보면, 보육시설 이용 권한은 적어도 만 1세 이상 아동에게 부여된다. <표 3-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도적으로 이용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부모의 부담을 요구하며, 정부는 부모의 시설 이용 부담과 관련하여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보조하

고 있다. 덴마크가 유일하게 생후 26주부터 시설 이용 권리를 부여하지만 부모 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 0~2세에 한하여 무상보육의 전면 수정을 전제로 제도 시행 연차별로 새로 태어나는 아동 그룹을 새로운 제도로 편입시키는 방식을 통해 양육수당 및 부모 보육료를 아동수당으로 통합 지급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양육수당을 폐지하여 아동수당과 통합하거나, 프랑스 등과 같이 아동수당 체계에서 별도의 부가급여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현재 시설로 직접 지급되는 부모 보육료 또한 점진적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전환을 말한다. 한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가구의 소득이나 상태를 고려하여 무상이용 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어찌 보면, 2013년 무상보육 시행 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아동수당제도와 소득세 공제제도 간의 조율 방안을 생각해 보자.

현재 도입 검토 중에 있는 아동수당 급여 체계에는 자녀 수 또는 출생 순위 등에 따른 추가 지원과 같은 자녀 출산 유인이 부재하다.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은 아동수당을 일종의 출산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표된 금액 수준 및 체계에 있어 출산 유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표 5-6〉 및 〈표 5-7〉 참조).

〈표 5-6〉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정책 목적에 대한 설문 결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책의 기본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양육 가정의 빈곤 완화	출산 장려	계
어린이집 이용 가구	(81) 15.73	(117) 22.72	(317) 61.55	(515) 100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103) 20.36	(123) 24.31	(280) 55.34	(506) 100
계	(184) 18.02	(240) 23.51	(597) 58.47	(1,021) 100

〈표 5-7〉 출산 장려를 위한 아동수당 자녀 수 차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첫째보다 둘째, 둘째보다 셋째에게 더 많은 금액 지원)

구분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	아니다, 차등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야 한다	계
어린이집 이용 가구	(387) 75.15	(128) 24.85	(515) 100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398) 78.66	(108) 21.34	(506) 100
계	(785) 76.89	(236) 23.11	(1,021) 100

한편, 현행 소득세제상 자녀세액공제는 다자녀 가구 지원에 다소 집중되어 있으며, 0~5세 아동 월 10만 원 수당 지급 체계와 상호 보완 가능한 구조이다. 다만, 조세 지원의 경우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한꺼번에 일괄 지불하는 형태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소득수준별 자녀에 대한 투자 지출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크지 않다. 또한, 미환급 세액공제라는 점에서 전체 자녀 양육 가구의 일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기적 지급성을 갖는 아동수당제도로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

현재 상태에서는 양 제도 간 수혜 대상 연령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아동수당 수급 대상 연령 기준 완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아동수당제도 확대 시 현행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 의료·교육 관련 특별세액공제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 하거나 출산 장려를 위한 부가수당 지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근로연령 계층에 대한 보편적인 현금 지원으로 막대한 재정 소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재정의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평적 형평성 왜곡에 따른 재분배의 비효율성, 근로 의욕 저하와 복지 의존성 등 부정적인 효과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도록, 가구수당 한도 적용과 같은 보완 장치의 선제적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재정 긴축 시 복지 지출 삭감을 위한 사후적 조치로 도입됨에 따라 경기침체 시 소득 충격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자동적인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한도 적용 급여항목의 선별, 적정 한도 수준의 설정 및 조정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담보할 수 있다.

한편,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여부와 방식에 있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에게 고유한 처분권이 귀속되는 소득으로 아동수당을 파악한다면, 시설보호 아동 또한 수급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해야 하며, 시설 운영자는 시설 거주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인 국가/지자체로부터 보호 책임을 위탁받은 자격이라는 점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수당의 관리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아동 발달 계좌나 기타 신탁 적립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금액에 대한 물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한다.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등은 아동수당

금액을 물가나 소득수준에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한다. 가정양육수당
단가 문제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불필요한 혼잡비용을 초
래하지 않으면서 수당 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물가 연동제
와 같은 주기적 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 고제이. (2017). 아동수당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 발표자료.
- 고제이·노용환·오미애·이우진·최현수·장인수·최요한. (201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제이·신윤정·강신욱·오미애·안형석. (2015).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계분석.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제이·최현수·오미애·전진아·하솔잎·안형석·천미경. (2016). 맞춤형 보육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실태 분석.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혜원·김봄이·김소나·전희선. (201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육아휴직후 복귀프로그램 개발. 정책보고서. 여성가족부.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내부자료).
- 김경석. (2012). 일본의 아동수당법 개정. 최신외국법제정보 2012년 제6호. 외국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 김상엽. (2006). 고대 로마의 저출산 현상과 아우구스투스의 결혼법령. 호서사학 제44. pp.121-141.
- 김상엽. (2009). 서기 2세기 로마제국의 알리멘타(alimenta)프로그램. 역사와 담론. 54. pp.185-203.
- 김수정. (2006).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김현아. (2012).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 노르웨이 국세청. <www.skatteetaten.no/en/person/Tax-Return. 2017.12.11. 최종 접속>
- 노르웨이 정부 홈페이지. <<https://www.nav.no>. 2017.12.15. 최종 접속>
- 덴마크세무부. <www.skm.dk/skattetal/emneord/boerne-og-ungegydelse,

2017.10.30. 인출>

보건복지부. (2016). 아동권리현장 리플렛.

보건복지부. (2017).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아동수당 도입방안 및 효과성 분석. 용역보고서(발간예정).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40628?lsNm=%EC%95%84%EB%8F%99%EC%88%98%EB%8B%B9%EB%B2%95>에서 2017.9.1.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2017.10.20. 최종 접속.>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www.gov.uk>. 2017.12.15. 최종 접속>

오스트리아 가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en.bmfj.gv.at>. 2017.12.1. 최종 접속>

유니세프 홈페이지. 아동권리협약. <www.unicef.org/magic/media/documents/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 2017. 7.3. 최종 접속>

이선주·박선영·김은정. (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2017.11.15. 최종 접속>

일본 후생노동부. <<http://www.mhlw.go.jp/english/index.html>. 2017.11.15. 최종 접속>

주만수. (2014). 지방정부의 재정력격차와 재정력역전 분석: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활용. 경제학연구. 제62권제3호. pp.110-145.

최병호. (2015). 효율적 복지정책을 위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개편과제. 응용경제 제17권제3호. pp.161-198.

캐나다 정부홈페이지. <www.canada.ca. 2017.12.10. 최종 접속>

통계청. (2017.8).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호주 휴먼서비스부 홈페이지. <<http://www.humanservices.gov.au>. 2017.12.15. 최종 접속>

- Bennett, F. and Dornan, P. (2006). Child Benefit fit for the future: 60 years of support for children. CPAG policy briefing. Aug. 2006. <<http://cpag.org.uk/sites/default/files/CPAG-Child-Benefit-Fit-Future-0806.pdf> 2017.03.05. 인출.>
- Blanchet, D., & Ekert-Jaffe, O. (1994). "The demographic impact of family benefits: Evidence from an micro-model and from macro-data." In J.Ermisch and N.Ogawa(Eds.). *The Family, The Market and the State in Aging Societies*. Oxford: Clarendon Press, pp. 79-103.
- Brooks-Gunn, J., Han, W., & Waldfogel, J. (2010), First-year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First 7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75, No. 2, pp. 144-145.
- Centre des Liason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de Sécurité Sociale. <<http://cleiss.fr> 2017.10.15.인출>
- Cornia, A. and F. Stewart. (1993). Two Errors of Targeting. *Innocenti Occasional Paper, Economic Political Series 36*. UNICEF-ICDC. Florence.
- Duclos, E., Lefebvre, P., & Merrigan, P. (2001). A 'Natural Experiment' on the Economics of Storks: Evidence on the Impact of Differential Family Policy on Fertility Rates in Canada. Working paper No.136. Center for Research on Economic Fluctuations and Employment.
- Duncan-Jones, R. (1963). The Purpose and Organisation of the Alimenta. *Papers of the British School at Rome*. Vol.32. pp.123-146. <www.jstor.org/stable/40310645>
- EC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http://ec.europa.eu/>

- social/main.jsp?catId=858&langId=en의 각국 정보>
- EC. EURYDICE. <[http:// webgate.ec.europa.eu/fpfis/eurydice/index.php/Countries](http://webgate.ec.europa.eu/fpfis/eurydice/index.php/Countries)>의 각국 정보 2017. 10. 21. 최종 접속>
- Felfe, C. & A. Hsin. (2012). Maternal Work conditions and child development.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 31. No. 6. pp.1037-1057.
- Filed, J.A. (1945). The Purpose of the lex lulia et Papia Poppaea. *The Classical Journal*, 40(7). pp.398-416.
- Gauthier, A. H., & Hatzius, J.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3). pp.295-306. <<http://www.jstor.org/stable/2952473>>
- Gauthier, A. H. (2007). “The impact of family policy on ferti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6(3), pp. 323-346.
- Hank, K., & Kreyenfeld, M. (2003), “A multilevel Analysis of Child Care and Women’s Fertility Decisions in Western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5. No.3, pp.584-596. <www.jstore.org/stable/3600025>
- HFD. <<http://humanfertility.org> 2017.09.21. 인출>
- HM Revenue & Customs. (2012). Child Benefit: Income Tax Charge for Those on Higher Incomes. 2012 Budget.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41007023213/http://www.hmrc.gov.uk/budget2012/tiin-0630.pdf> 2017.10.21.인출>
- HM Revenue & Customs. (2016). Child Benefit Statistics.
-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2017). Fiscal Monitor: Tackling Inequality. Washington, October.
- Jones, G.W., Paulin Tay Straughan, & Angelique Chan(2009).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 Issues, London: Routledge.
- Kela 홈페이지. <<http://www.kela.fi/web/en>. 2017.12.07. 최종 접속>
- Kennedy. S. (2012). Child Benefit for higher income families. 영국하원 의회 보고서. <<http://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SN06299/SN06299.pdf>. 2006. 2017.10.25. 인출>
- Kohler, H.-P., F.C.Billari, and J.A. Ortega. (2006). “Low Fertility in Europe: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In F.R. Harris(Ed.), *The Baby Bust: Who will do the Work? Who Will Pay the Taxe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 48-109.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357.4258&rep=rep1&type=pdf>>
- Laroque, G., & Salanié, B. (2003). “Fertility and Financial Incentives in France”, CESifo Venice Summer Institute 2003 Workshop on Taxation and the Family. <www.cesifo-group.de/portal/pls/portal/!PORTAL.wwpob_page.show?_docname=48949.PDF>
- Laroque, G., & Salanié, B. (2008). “Does Fertility Respond to Financial Incentives?”, IZA Discussion Paper, No.3575. <<http://ftp.iza.org/dp3575.pdf>>
- Leigh, G. R. (2006). *The Case For Reintroducing Universal Child Allowance in 21st Century New Zealand*. MA Thesis. Massey University, Palmerston North, New Zealand.
- Luci, A. & Thévenon, O. (2011). “The Impact of Family Policy Packages on Fertility Trends of OECD Countries”, Population American Association, Washington, 30 march-2 April.
- Milligan K. (2005), “Subsidizing the stork: new evidence on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87. No.3, pp.539-555. <www.jstor.org/stable/40042947>
-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http://www.missoc.org/INFOR>>

- MATIONBASE/COMPARATIVETABLES/MISSOCDATABASE/comp
arativeTableSearch.jsp>.
- NZ HISTORY. <<http://nzhistory.govt.nz/culture/the-1920s/1926>,
2017.09.23.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7.9.10; 11.29. 인출>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tp://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htm 2017.7.21. 인출>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98732-en>>
- PWC. 각국 정보 <<http://taxsummaries.pwc.com>>
- RHVP. (2007). Targeting: Social Transfers. RHVP Policy Briefs on
Social transfers.
- Sécurité sociale. (2013). La branche Famille de la Sécurité sociale.
<[www.caf.fr/sites/default/files/cnaf/Documents/DCom/Quisom
mesns/plaquette%20branche%20Famille.pdf](http://www.caf.fr/sites/default/files/cnaf/Documents/DCom/Quisommesns/plaquette%20branche%20Famille.pdf)>
- SKAT (2016). Tax in Denmark-An introduction to the Danish tax
system for non-Danish speakers, The Danish Customs and Tax
Administration(SKAT).
- Sleebo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15, OECD Publishing.
<<http://ideas.respec.org/oec/elsaaa/15-en.html>>
- Sowa, A. (2016). “Family 500+”: A new family income-supporting
benefit in Poland. ESPN Flash Report 2016/45. European
Commission.
- SSA (2015).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The
Americas, 2015.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ublication

- No.13-11802(March 2016 공개).
- SSA (2016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sia and the Pacific, 2016.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ublication No.13-11802(March 2017 공개).
- SSA (2016b).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2016.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ublication No.13-11802(March 2016 공개).
- UN (2015). The influence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Franc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Policy Brief No.7.
- UNICEF-ESARO/Transfer Project. (2015). Social Cash Transfers and Children's Outcomes: A Review of Evidence from Africa.
- Waldfogel, J., Han, W., & Brooks-Gunn, J. (2002). The Effects of Early Maternal Employment on Child cognitive Development, Demography, Vol. 39, No. 2, pp. 369-392.
- World Bank. <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view=chart 2017.10.10.인출>

〈기타 참고자료〉

- UN 홈페이지. 세계인권선언.
<www.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
2017.9.11.최종 접속>

부 록 <<

부표 1. 캐나다 아동수당 및 기타 지원 제도

아 동 수 당 수 급 자 격	연령	- 18세 미만
	소득	전 소득계층 지급, 단, 소득수준과 자녀 수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 '16년 7월 기존 자녀장려금 & 통합아동 양육 보조를 대체, 기존제도와 달리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많은 15만 달러 이상 받고, 고 소득층은 덜 받는 구조로 변경
아동수당 급여 수준		○캐나다 연방정부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CCB) - 0~5세: 최대 월 47.7만 원(€371.6) - 6~17세: 최대 월 40.3만 원(€313.5) ○ 개별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주정부 아동수당제도 병행 운용 -앨버타 아동수당(Alberta child benefit): 가구 순소득 \$41,750 미만, 첫째아 \$92.83, 둘째아 이상 각각 \$46.41 -유콘 아동수당(YSB):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68.33, 가구소득 \$35,000 초과 시 부분 지급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아동수당(NBCB): 18세 미만 아동, 첫째아 월 \$32.16, 둘째아 \$34.16, 셋째아 \$36.66, 넷째 이상 \$ 39.33, 가구순 소득 \$17,397 이상 감액 지급 -북서부권역 아동수당(Northwest Territories child benefit): 18세 미만, 가구소득과 자녀 수 및 연령 차등 지급 1) 0~5세: 자녀 수 1명 월 \$67.91, 2명 \$122.25, 3명 \$166.41 4명 \$ 203.75, 자녀 수 추가 1인당 \$30.58추가 지급 2) 6~17세: 자녀 수 1명 월 \$54.33, 2명 \$97.83, 3명 \$133.08, 4명 \$163, 자녀 추가 1인당 \$24.41 추가 지급 -누나부트 아동수당: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7.5, 가구소득 \$3,750 이상인 경우 자녀 수 반영 근로장려금 추가 지급되며 이때 가구소득 \$20,921 초과 시 감액됨 -온타리오 아동수당: 18세 미만, 아동당 월 최대 \$114.83, 조정가구순 소득 \$21,037 초과 시 감액 지급
아동수당 재원구조		조세

세제 지원	소득 공제	인적요소 (인적공제)	없음
		양육 비용	○자녀보육 비용 공제 -0~6세 1인당 연간 \$8,000 -7~16세 1인당 연간 \$5,000
	세액 공제	비환급형	○연방소득세 -부양자녀 세액공제/돌봄 비용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기관당 최소 \$100) 교육비 지출 15% -입양비용 세액공제: 입양비용 15%(\$2,351 한도) ○주정부 소득세법상 별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
		환급형 (CTC등)	○ GST/HST credit -저소득 중산층 가구 자녀 양육 비용 반영 환급액 결정 ○ 근로장려세제(WITB) -19세 미만 부양자녀 조건 적용

		○주정부 자녀 양육 관련 추가 세제 환급 -브리티시컬럼비아(소득 차등): ·BC 영유아 세액 환급(BC early childhood tax benefit): 0~5세 자녀 수와 가구소득 차등 양육 비용 세액 환급 ·BC 저소득층기후변화협약세액 환급(BC low income climate action tax credit): 아동 1인당 34.5달러 -앨버타(소득제한) ·앨버타 가구근로장려세제(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credit): 자녀 출생 순위 반영 출생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 환급(첫째아 월 \$64.41, 둘째아 \$58.58, 셋째아 \$35.16, 넷째아 \$11.66) -뉴브런즈윅 ·NB 자녀장려세제(NBCTB: New Brunswick child tax benefit): 18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 아동당 월 \$20.83, 가구순소득 \$20,000 초과 시 감액 지급 ·NB 근로소득보조(NBWS: NB working income suppliment): 가구당 월 최대 \$20.83까지 NBCTB에 추가 지급 -Nova Scotia affordable living tax credit(NSALTC): 가구당 연 최대 \$255 환급, 추가적으로 아동 1명당 \$60지원, 조정가구순소득 \$30,000 초과 시 5% 감액 지급 -Ontario sales tax credit(OSTC): 자녀 수 반영 환급, 기타 세액공제 병행
--	--	---

육아 휴직 / 보육 등	육아휴직	○출산휴가(모성휴가) 및 부모휴가 -고용보험급여 -출산후 최대 52주(출산휴가 최대 15주), 보험 가입 임금 수준의 55%(17년 연간 최대 보험 가입 임금 51,300달러, 휴직급여 주당 543달러)
	보육료지원	○주정부별 보육료 지원 -퀘벡을 제외한 대부분 이용자 부담 원칙 적용 -앨버타: 12세 미만 또는 7학년 진급 이전 학생, 소득조사 기반, 연령 및 보육 서비스별 차등 지원 -브리티시컬럼비아 보육 보조금: 가구소득 \$40,000 미만(특수한 경우 \$55,000까지), 이용 시설 유형, 시간, 아동 연령, 근로형태, 가구소득 & 가구원 수, 시설이용 사유 등에 따라 보육료 사후 보조(시설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타 주/준주별 독립적인 보육료 지원 체계 운영
	양육수당	○주정부 지원 -브리티시컬럼비아(예시) ·BC 가족보너스(BC family bonus):18세 미만 자녀 양육비 보조(저소득층 및 중산층 대상) ·가정양육수당: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 보육료 보조 대신 신청/지급
	기타	-

자료: 1) SSA. (2015).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The Americas, 2015.

2)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www.canada.ca)

부표 2. OECD 국가 아동수당 및 기타 가족지원 관련 제도 현황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지등 지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스웨덴 (47년~, 1.880)	보편적 적용	- 16세 미만 (MISSOC 기준)	- 자녀 수 - 출생 순위	○ 아동수당(MISSOC 기준) - 공통 수당: 월 14.2만 원(€110.9, SEK 1,050) - 대가족 추가 수당은 아이의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됨.	조세(tax-financed)	○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 부모휴가수당(parental cash benefit) · 아동 1인당 양부모 합산 총 480일, 다테아 출산 시 자녀당 180일 추가됨. 480일 휴가기간 중 390일은 병가수당으로 지급되며 90일은 최저 수준 수당이 지급됨. (390일간 임금 80%, +90일 간 €19.2). - 양성평등 보너스 (gender equality bonus: jämställdhetsbonus) · 부모휴가를 나누어 사용 중인 양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81.4만 원(€1,443) 추가 수급 가능하며, 다테아의 경우 최대 금액 증가. ○ 모성급여(maternity allowance) - 임신으로 인한 휴직 시 50일간 임금 80%(일정 소득수준 미만 적용) ○ 지자체 아동 양육수당 - 1~3세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고 있으며, 최소 250일간 부모 휴가를 사용한 경우 아동 1인당 월 최대€321(SEK3000) 지급. - 일부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모휴가수당과 중복수급은 불가함. ○ 기타 자녀 관련 수당 - 저소득아동 보조양육수당 - 주거수당 - 자녀보육수당 - 입양수당						
				<table><tr><th>자녀 수</th><th>추가 수당</th></tr><tr><td>2명</td><td>2.0만 원(€15.8, SEK 150)</td></tr><tr><td>3명</td><td>9.9만 원(€76.8, SEK 730)</td></tr><tr><td>4명</td><td>23.5만 원(€183.2, SEK 1,740)</td></tr><tr><td>5명</td><td>40.4만 원(€314.7, SEK 2,990)</td></tr><tr><td>6명</td><td>57.3만 원(€446.3, SEK 4,240)</td></tr></table>			자녀 수	추가 수당	2명	2.0만 원(€15.8, SEK 150)	3명	9.9만 원(€76.8, SEK 730)
자녀 수	추가 수당											
2명	2.0만 원(€15.8, SEK 150)											
3명	9.9만 원(€76.8, SEK 730)											
4명	23.5만 원(€183.2, SEK 1,740)											
5명	40.4만 원(€314.7, SEK 2,990)											
6명	57.3만 원(€446.3, SEK 4,240)											
영국 (45년~, 1.810)	- 보편적 적용 ※ 단 High income child benefit charge: 보호자 또는 배우자 연간 소득	- 16세 미만 - 학생 - 20세 미만 (EC 기준)	- 출생 순위	○ 아동수당(EC 기준) - 첫째: 월 13.0만 원(€101.4) - 둘째 이상 아동당 월 8.6만 원(월 €67.1)	○ 조세(tax-financed)	○ 보호자수당(guardian's allowance)(EC 기준) - 아동수당에 더하여 지급되며 비과세임. - 주당 £16.55 ○ 출산수당(16년 기준) - 고수당: 기대출산일 11주 전부터 39주간 주 €188.7 또는 평균 주 수입의 90% 중 낮은 액수 - 저수당의 경우 14주간 주당 €36.5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차등 지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이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이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덴마크 (52년~, '1.690)	보편적 적용+ 소득연계	18세 미 만 (EC 기준)	연령 소득	<table><tr><th>가구소득(€)</th><th>기본+14세 이상 추가 수당(€)</th></tr><tr><td>~67,408</td><td>129.47+64.73(≈24.9만 원)</td></tr><tr><td>67,408~89,847</td><td>64.73+32.37(≈12.5만 원)</td></tr><tr><td>89,847 ~</td><td>32.37+16.18(≈6.2만 원)</td></tr><tr><td>~73,025</td><td>295.35+64.73(≈46.2만 원)</td></tr><tr><td>73,025~95,464</td><td>147.67+32.37(≈23.1만 원)</td></tr><tr><td>95,464~</td><td>73.84+16.18(≈11.6만 원)</td></tr><tr><td>~78,642</td><td>461.23+64.73(≈67.5만 원)</td></tr><tr><td>78,642~101,081</td><td>230.61+32.37(≈33.8만 원)</td></tr><tr><td>101,081 ~</td><td>115.31+16.18(≈16.9만 원)</td></tr></table>	가구소득(€)	기본+14세 이상 추가 수당(€)	~67,408	129.47+64.73(≈24.9만 원)	67,408~89,847	64.73+32.37(≈12.5만 원)	89,847 ~	32.37+16.18(≈6.2만 원)	~73,025	295.35+64.73(≈46.2만 원)	73,025~95,464	147.67+32.37(≈23.1만 원)	95,464~	73.84+16.18(≈11.6만 원)	~78,642	461.23+64.73(≈67.5만 원)	78,642~101,081	230.61+32.37(≈33.8만 원)	101,081 ~	115.31+16.18(≈16.9만 원)	통합된 이들의 기여를 보 장하기 위한 가정보조금, 개인소득세로 조성한 사 회부담금 수익의 일부	기타 이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가구소득(€)	기본+14세 이상 추가 수당(€)																					
				~67,408	129.47+64.73(≈24.9만 원)																					
				67,408~89,847	64.73+32.37(≈12.5만 원)																					
				89,847 ~	32.37+16.18(≈6.2만 원)																					
~73,025	295.35+64.73(≈46.2만 원)																									
73,025~95,464	147.67+32.37(≈23.1만 원)																									
95,464~	73.84+16.18(≈11.6만 원)																									
~78,642	461.23+64.73(≈67.5만 원)																									
78,642~101,081	230.61+32.37(≈33.8만 원)																									
101,081 ~	115.31+16.18(≈16.9만 원)																									
(EC 기준)	- 14세 이상 자녀 1인당 추가 수당(2차녀 가구 중 첫째 제외): 월 €16.18~€64.73(소득에 의존) - 공립수당: 3자녀 이상 가구에 1년간 월 €20.47~ €81.86(소득에 의존) 지급하며, 첫째가 20세가 될 경우 수당 감소	○ 아동수당(EC 기준) - 비과세 수당임. - 0~2세: 아동당 월 25.8만 원(€201.1, DKK 1,497) - 3~6세: 아동당 월 20.4만 원(€159.2, DKK 1,185) - 7~17세: 아동당 월 16.1만 원(€125.2, DKK 932) - 15~17세: 아동당 월 16.1만 원(€125.2, DKK 932) - 소득 연계: 부 또는 모의 과세표준이 DKK 749,000 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2%만큼 수당에서 공제.	조세(tax-financed)	※ 이동수당 등 가족수당에 대한 과세, 특별교육수 당을 제외한 모든 가족 수당은 0.5% CRDS tax 로 가족당여기금으로 환 수함.	- 휴가급여 1일당 최소 €9.67~최대 €83.58 〈부성휴가〉 - 아버지휴가 시작 전 3개월 평균임금 100%. - 처음 3일간은 고용주가 급여 부담, 4일차부터 11일, 다테 아 출산 시 18일. - 아버지휴가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처음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함. - 월 임금 상한액 기준 €3,218 - 휴가급여 1일당 최소 €9.67~최대 €83.58 - 아버지휴가급여는 매 2주마다 지급. ○ 그 외 각종 수당 〈별표 1〉 참조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출생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인명 이상 아동의 경우 지자체 70%(시설지급), 부모 30% 분담. ○ 장애허가수당(MISSOC 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에 따른 소득대체: 월 €4,023(DKK 29,918) -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에 따른 추가 비용 상환: 연 €639(DKK 4,752) ○ 한부모수당(MISSOC 기준) - 가구당 월 €62(DKK 461) 추가 지급 ○ 임양수당(MISSOC 기준) - 일사불 €6,935(DKK 51,583) ○ 다태아수당(MISSOC 기준) - 1명 이상 태아 출산 또는 임양 시,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아동당 분기 당 €301(D K 2,239) ○ 특별 수당(MISSOC 기준) - 학업 중인 부모, 은퇴 부모 등을 위한 특별 수당
핀란드 (48년~ 1.649)	- 보편적 적용	- 17세 미만 (EC 기준) (준)	- 출생	○ 아동수당(Kela 기준) - 첫째 12.2만 원(€94.9) - 둘째 13.5만 원(€104.8) - 셋째 17.2만 원(€133.8) - 넷째 19.7만 원(€153.2) - 다섯째 이후 22.2만 원(€172.7€) ※ 한부모 추가 수당: 아동당 6.2만 원(€48.55)	조세(tax-financed)	○ 출산수당(maternity grant)(Kela 기준) - 임신 5개월 이상인 경우 모성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비과세 현금 급여 €140 또는 2)출산용품의류, 수유제품, 등 선택 가능. ○ 모성휴가수당(maternity allowance)(Kela 기준) - 일반적으로 출산 30일 전부터 105영업일(약 4개월)간 모성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모성휴가수당 수급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가능). - 회화 또는 전염병 관련 직종 등 위험직군 종사자의 경우 모성휴가 기간 동안 특별보상휴가수당(special maternity allowance) 수급. ○ 부성휴가수당(paternalty allowance)(Kela 기준) - 자녀출산 시 최대 54(영업일)의 9주) 아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1~18(영업일) 또는 3주 동안은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음. ○ 부모휴가수당(parental allowance)(Kela 기준) - 총 158영업일에 대하여 엄마 또는 아빠 휴가를 사용할 수 있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들 자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으며, 휴가 사용자에게 해당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 - 생동이 출산 시 추가로 60일의 부모휴가 기간이 부여됨. ○ 모성휴가수당/부성휴가수당/부모휴가수당 금액(Kela 기준) - 각 수당은 수급자 소득의 70% 수준에서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며, 질병이나 학업 또는 실업 여부 등에 따라 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최소 수당 금액은 월 €600으로 학생인 경우 최소금액 수급. - 휴가수당은 과세소득으로 포함됨. ○ 가정양육수당(child care allowance)(Kela 기준) - 부모휴가가 끝난 이후 수급. 국공립 보육시설 미이용 조건 - 기본수당: 0~2세 1인당 월 €342.53 - 추가 수당 · 0~2세 추가 자녀 1인당 월 €102.55 · 3~7세 추가 자녀 1인당 월 €65.89 · 부모 소득에 따라 자녀 1명에 한해 월 최대 €183.31 지급. ○ 개인주관보육수당(private day care allowance)(Kela 기준) -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 대상 - 기본수당 아동 1인당 월 €174.28, 저소득층의 경우 아동 1인당 추가 월 €146.64 ○ 유연근무양육수당(flexible care allowance)(Kela 기준) - 0~2세 자녀 양육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주 30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월 €162.78~244.18 수급. ○ 부분양육수당(partial care allowance)(Kela 기준) - 1~2학년 재학 중인 자녀 돌봄을 위해 주당 30시간 미만 일할 경우, 월 €98.9 - 부분양육수당은 과세대상소득으로 포함. ○ 장애아동수당(Kela 기준) - 16세 미만 장애/상병 아동에 대하여 장애/질병의 심각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기본분: 월 €92.14, 중위분: 월 €215, 고위분: 월 €416.91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등 지원 고려 사항	이동당 수당 금액	이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이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독일 (54년~, '15년 1.5)	보편적 적용	- 18세 미만 - 실업 또는 구직 기간 중 - 출생 후 시 21세까 지 - 학생 직업훈 련 25 세까지 - 장애아 제한 없 음 (EC 기준)	- 출생 순위 - 저소득 가구 - 추가 수 당(자산 조사)	○ 아동수당(EC 기준) - 첫째/둘째: 월 24.7만 원(€192) - 셋째: 월 25.4만 원(€198) - 넷째부터: 월 28.6만 원(€223)	조세(tax-financed)	○ 출산/육아휴직급여(보편)(EC 기준) - 모성휴가: 여성근로자 질병유치기간 가입자의 경우 출산후 가 전 3개월 평균 순소득의 100%, 1일 최대 €13, 출산 전 6주/출산 후 8주간 지급. 미가입 여성의 경우 요건에 따라 최대 €210 정부 지원. ○ 부모수당(Parental allowance, 자산조사)(EC 기준) - 0~14개월 자녀 양육 저소득 부모 대상 - 기본부모수당(Basistemeld):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 또 는 무직 부모가 자녀를 집에서 양육할 경우 지급(0~14개월 자녀). 지급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최대 12개월이며 맞벌 이의 경우 추가 2개월 지급(총14개월). 기본부모수당 지급 액 한도 월 €1,800. - 추가부모수당(Eltierm geldPlus): 2015년 7월 1일 이후 출생 아에 대하여 기본부모수당 지급 기간의 두 배에 이르는 수 당 신청가능. 주당 평균 25~30시간 4개월 연속 부모 모두 일할 한 경우, 해당 4개월에 대하여 추가부모수당을 추가 지급. 추가부모수당 지급액 한도 월 €900. ○ 저소득 가구 추가 수당(자산조사)(MISSOC 기준) - 월 €170
이탈리아 (37년~, '137) 1.37)	-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또는 사회보 험 가입자 - 소득/자산 조 사 및 기준 적용	- 18세 미 아동 - 대학생 수 26세까 지 - 장애아 제한 없 음 (EC 기준)	- 가족 수, 가구소득 등에 따라 월 최대 €2,294.38까 지 차등 지급 * 예시(4인 가족 일반가구) · 연소득 €14,383.37 이하: 월 33.2만 원(€258.33) · 연소득 €27,270.86~€27,385.90: 월 17.5만 원 (€135.92) · 연소득 €77,670.15 초과: 지급 안함. ※ 수당액은 소득에 반비례하고 가족 수에 비례함(EC 기준).	○ 가족수당(MISSOC 기준) - 가족 수, 가구소득 등에 따라 월 최대 €2,294.38까 지 차등 지급 * 예시(4인 가족 일반가구) · 연소득 €14,383.37 이하: 월 33.2만 원(€258.33) · 연소득 €27,270.86~€27,385.90: 월 17.5만 원 (€135.92) · 연소득 €77,670.15 초과: 지급 안함. ※ 수당액은 소득에 반비례하고 가족 수에 비례함(EC 기준).	○ 사회보험형(SSA 기준) - 고용주: 임금 총액의 0.68%(임금 상한액 없음) - 정부 보조금(고용주 기여 금의 1.8%또함) - 근로자: 0% (사회보험료 납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	○ 출산육아휴직급여(보편) - 모성휴가 · 보편 가입자: 휴가 시작 마지막 달 1일 평균임금의 80%, 출산 전 2개월/출산 후 3개월 간 지급 · 자영업자: 휴가 시작 전 12개월 1일 평균임금의 80%, 출산 전 2개월/출산 후 3개월간 지급 - 부성휴가 · 휴가 시작 전 마지막 달 1일 평균임금의 80%, 법정 1일 휴 가(출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 사용); 유급모성휴가 2일 대신 부성휴가 2일을 추가 사용 가능. 한부모인 경우 3개월간 지급 가능하며, 3개월 유급모성휴가를 부성휴가로 대체할 수 있음. - 부모휴가(육아휴직) · 휴가 시작 전 달의 1일 평균임금의 30%, 자녀가 8세가 되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들 지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네덜란드 (39년~ 1.71)	- 기본 아동수 당: 보편적 적용 - 추가 수당: 소득조사 (EC 기준)	- 18세 미만 (EC 기준)	- 기 본 수 당 : 연 평 - 0~5세: 월 8.6만 원(€66.9) - 6~11세: 월 10.4만 원(€81.2) - 12~18세: 월 12.3만 원(€95.5) ※ 장애 등의 이유로 아동 비동거 시 수당 2배 ※ child budget(소득조사) · 아동수당에 더해져, 부모 소득, 자녀 수, 연령에 따 라 추가 수당 지급. (MISSOC 기준) 1자녀 연 €1,142, 2자녀 · €2,030, 3자녀 €2,325, 4자녀 이상 자녀당 €285 추가	아동수당(EC 기준) - 0~5세: 월 8.6만 원(€66.9) - 6~11세: 월 10.4만 원(€81.2) - 12~18세: 월 12.3만 원(€95.5) ※ 장애 등의 이유로 아동 비동거 시 수당 2배 ※ child budget(소득조사) · 아동수당에 더해져, 부모 소득, 자녀 수, 연령에 따 라 추가 수당 지급. (MISSOC 기준) 1자녀 연 €1,142, 2자녀 · €2,030, 3자녀 €2,325, 4자녀 이상 자녀당 €285 추가	○ 조세(tax-financed) - 가구 연소득 · €46,700(15년 기준) 초 과 시 지급 제외. - 아동 연령 16~17세의 경 우, 해당 아동의 소득이 분기당 €1,266을 초과할 경우 지급 제외.	기 전까지 6개월간 지급. · 자영업 모의 경우 자녀가 1세가 되기 전까지 3개월 간 지급. ○ 양육비우체(child-raising vouchers(MISSOC 기준)) - 최대 6개월간 월 €600까지 ○ 다자녀가구 지원수당(family support allowance, 소득 조사) - 부부+3자녀 가구가면서 ISEE(equivalent economic situation indicator) 월 €8,555.99인 가구에 월 €141.3 지급(12월에 13번째 급여 포함)
노르웨이 (46년~ 1.75)	보편적 적용	18세 미만 (EC 기준)	- 연 평 - 자 녀 수 - 학 생 - 자 녀 수 - 직 업 교 육, 중 증 장애	아동수당(EC 기준) - 기본 아동수당 월 13.4만 원(€104.4, NOK 970) ※ 한부모 월 13.4만 원(€104.4, NOK 970) 추가 지급. ※ 0~3살 영아 양육에 대한 신생아 보조금 월 9.1만 원 (€71.0, NOK 660) · 한부모는 추가 수당과 신생아 보조금 중복 수급 가능	○ 조세(tax-financed) - 가구 연소득 · €46,700(15년 기준) 초 과 시 지급 제외. - 아동 연령 16~17세의 경 우, 해당 아동의 소득이 분기당 €1,266을 초과할 경우 지급 제외.	○ 영유아기정양육수당(Cash-for-care)(EC 기준) - 생후 13개월~23개월,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서 양육할 경우 월 €645.8 ※ 주당 19시간 이하로 보육시설 이용 시, 월 €322.9; 주당 20시간 이상 보육시설 이용 시 미지급.
오스트리아 (48년~ 1.470)	보편적 적용 (MISSOC 기준)	- 18세 미만 - 학 생 - 자 녀 수 - 직 업 교 육, 중 증 장애	- 연 평 - 자 녀 수 - 학 생 - 자 녀 수 - 직 업 교 육, 중 증 장애	아동수당(EC 기준) - 기본수당: 연행별 차등 · 0~2세: 월 14.4만 원(€111.80) · 3~9세: 월 15.4만 원(€119.60) · 10~18세: 월 17.8만 원(€138.80) · 19세~: 월 20.8만 원(€162.0)	○ 사회보험형(SSA 기준) - 고용주 임금 총액 4.5% - 정부: 조세수입 일정부 보조	○ 자녀 양육수당(child-raising allowance)(EC 기준) -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할 경우 지급. 부모는 단일수당과 소득기반 수당 중 선택 할 수 있음(수급 기간 차이 있음). · 0~14개월: 1일 €33 · 0~18개월: 1일 €26.6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등 지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자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아동 2 4 세 미만 - 군복무 또는 사 회봉사 활동 중 인 경우 2 5 세 미만 (EC 기준)		- 자녀 수 반영 - 2자녀: 자녀당 월 0.9만 원(€6.90) 증가(총 1.8만 원 추가) - 3자녀: 자녀당 월 2.2만 원(€17.0) 증가(총 6.6만 원 추가) - 4자녀: 자녀당 월 3.3만 원(€26.0) 증가 - 5자녀: 자녀당 월 4.0만 원(€31.4) 증가 - 6자녀: 자녀당 월 4.5만 원(€35.0) 증가 - 7자녀 이상: 자녀당 월 6.5만 원(€51.0)으로 정격적 증가 ※ 중증장애아동: 월 €152.90		- 0~24개월: 1일 €20.80 - 0~36개월: 1일 €14.53 - 또는 소득조사기간 14개월까지 소득의 80% 최대 1일 €66 - 한부모 등 저소득 가구 추가 지급 - 3자녀 이상에 대해 추가 양육수당 지급(소득기준적용) ○ CCT(차녀장려제)(EC 기준) -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 - 아동 1인당 월 €58.4 - 가족수당을 수급하는 모든 부모에게 negative income tax로 지급 ○ 개학수당(school start amount)(EC 기준) - 6~15세에 대해 2011년부터 9월 가족수당에 1인당 €100 지급
그리스 (58년~, 1.3)	- 사회보험가입 근로자 - 소득기준 적용	- 1 8 세 미만 미혼 자녀 - 2 4 세 미만의 아동 - 교육기관에 등록 된 19 세 미만 의 아동 - 2 4 세 미만의 학생 - 2 4 세 미만의 장애 아동(67% 이상)	- 가구 소득 수 - 비파세 - 다자녀가구 특별수당(special benefit for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 3자녀 가족의 연소득이 €45,000 미만 또는 4자녀 가족의 연소득이 €48,000 미만일 경우 아동 1인당 월 5.4만 원(€41.7) 지급. 4자녀 이상의 가구는 아이가 한 명 추가될 때 마다 소득기준이 €4,000씩 증가함.	- €6,001~€12,000: 아동 1인당 월 3.4만 원(€26.66) - €12,001~€18,000: 아동 1인당 월 1.7만 원(€13.33) - €18,001~€24,000: 아동 1인당 월 1.7만 원(€13.33) ○ 다자녀가구 특별수당(special benefit for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 3자녀 가족의 연소득이 €45,000 미만 또는 4자녀 가족의 연소득이 €48,000 미만일 경우 아동 1인당 월 5.4만 원(€41.7) 지급. 4자녀 이상의 가구는 아이가 한 명 추가될 때 마다 소득기준이 €4,000씩 증가함.	- 사회보험형(SSA 기준) - 가입자(근로자): 임금 총액 1% - 고용주: 임금 총액 1% - 정부: 보조금 ○ 미보호 아동수당(benefit for unprotected children)(EC 기준) - 소득조사 - 아동당 월 €44.0 ○ 보형 미가입자 모성수당(maternity benefit for uninsured individuals)(EC 기준) - 소득조사 - 산전·후 총 €440.2	- 0~24개월: 1일 €20.80 - 0~36개월: 1일 €14.53 - 또는 소득조사기간 14개월까지 소득의 80% 최대 1일 €66 - 한부모 등 저소득 가구 추가 지급 - 3자녀 이상에 대해 추가 양육수당 지급(소득기준적용) ○ CCT(차녀장려제)(EC 기준) -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 - 아동 1인당 월 €58.4 - 가족수당을 수급하는 모든 부모에게 negative income tax로 지급 ○ 개학수당(school start amount)(EC 기준) - 6~15세에 대해 2011년부터 9월 가족수당에 1인당 €100 지급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들 자원 고려 사항	이동당 수당 금액	이동수당 자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이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포르투갈 (42년~, 1.307)	자산 기준 적용 (2010년)	- 16 세 미 만 미 취업 아동 - 학 생 / 장 애 자 2 4 세 미만(특 수 정 요 인 - 소 득 증 속 시 3세 연 장) (MISSOC 기준)	연 령 - 자 녀 - 소 득	○ 아동수당(MISSOC 기준) 〈레벨1: 기준 소득이 IAS 0.5배 미만〉 - 0~11개월: 월 18.8만 원(€146.42) - 12개월~35개월: 월 7.1만 원(€54.90) - 36개월 이상: 월 4.7만 원(€36.60) 〈레벨2: 기준 소득이 IAS의 0.5배~1.0배〉 - 0~11개월: 월 15.5만 원(€120.86) - 12개월~35개월: 월 5.8만 원(€45.33) - 36개월 이상: 월 3.9만 원(€30.22) 〈레벨3: 기준 소득이 IAS의 1.0배~1.5배〉 - 0~11개월: 월 12.2만 원(€95.08) - 12개월~35개월: 월 5.8만 원(€45.33) - 36개월 이상: 월 3.5만 원(€27.35) 〈레벨4: 기준 소득이 IAS의 1.5배~2.5배〉 - 36개월 미만: 월 1.2만 원(€9.46) 〈레벨5: 기준 소득이 IAS의 2.5배 초과〉 - 자격 없음 ※ 둘째 출산(또는 arrival) 시 12~36세 해당하는 각 아 동에게 추가 수당 지급: €91.50(1레벨), €75.55(2 레벨), €65.95(3레벨); 셋째의 경우 €128.10(1레 벨), €105.77(2레벨), €93.33(3레벨). ※ 소득/자산조사(MISSOC 기준) - 가구소득이 IAS(the reference social support index)의 2.5배 미만이고, 가구유동자산이 IAS의 240 배 미만 ※ 한부모인 경우, 아동수당 35% 증가(MISSOC 기준) ※ 장애아동 특별수당(MISSOC 기준) - 14세 미만 월 €61.57; 14세~18세 월 €89.67; 18 세~24세 월 €120.04	조세(tax-financed)(SSA)○ 기타 수당 - 장애보조금, 태아기 아동수당, 학업보조금 등	
호주 (41년~, 1.833)	- ??	한 부 모 여부	○ 부모수당(Parenting Payment) : 소득/자산조사 - 양부모 6세 미만, 한부모 8세 미만 -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한부모 2주당 66만 원	조세(tax-financed)	*호주 정부 공개 자료 기준으로 장정함. ○ 가족지원세제(FTB: Family Tax Benefit) (소득조사 기반) 1) FTB Part A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차등 지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752.6, €513.7), 양부모 42.7만 원(\$486.5, €332.1), 질병으로 인해 별거 중인 양부모 51.1만 원(\$582.8, €397.8) 지원 ○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소득/자산조사 - 16~21세 구직자/18~24세 학생/16~24세 정규 교육 훈련생/16~17세 교육을 위해 독립한 학생 - 독립/부양/피부양 자격별 소득 요건에 따라 2주당 최대 21만~66만 원(\$239.5~\$752.6)까지 차등 지급			- 아동 1인당 2주당 기준 금액 \$58.66 <연령별 최대 금액> - 0~12세 아동 1인당: 가구소득에 따라 월 최대 40.2만 원 (\$458.7) - 13~19세이면서 중등교육 중인 아동 1인당: 가구소득에 따라 월 최대 50.7만 원(\$ 578.2) - 0~19세 인종돌봄기관 거주 아동: 월 최대 10.9만 원 (\$127.4) * 아래 표의 연간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월액 계산.

아동 1인당	2주 최대지급액 (호주\$)	연간 최대지급액
0~12세	182.84	5,504.2
13~19세	237.86	6,938.65
0~19세 인종돌봄기관 거주	58.66	1,529.35

*연말 추가 수당 포함 금액임.

○ 기타 FTB partA 수당

- FTB PartA 보조수당. 예년지 보조수당 PartA, 다태아 수당, newborn upfront payment and newborn supplement, 주거 보조금

2) FTB Part B

- 한부모, 조부모, 외벌이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

- 0~5세 미만: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대 32.2만 원(\$ 367.7)

- 5세~18세: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대 23.3만 원(\$ 265.8)

* 아래 표의 연간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월액 계산.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들 지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이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table><tr><th>최연소 자녀 연령기준</th><th>2주 최대지급액 (호주\$)</th><th>연간 최대지급액</th></tr><tr><td>0~5세</td><td>155.54</td><td>4,412.65</td></tr><tr><td>5~18세</td><td>108.64</td><td>3,190.10</td></tr></table> * 2주 지급 금액은 FTB Part B 연말 추가 수당 \$357.7 미포함, 연간 지급액에는 포함. ○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소득/자산조사) - 등록/인가 보육,교육시설 서비스 이용 - 미취학 아동 인가 보육시설 이용료 1시간당 \$4.3(1주 \$215) 기준 가구소득, 보육시설 이용 자녀수, 보육 서비스 유형, 이용 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취학 아동의 경우 미취학 아동 지원 수준의 85% - 미취학 아동 등록보육시설 이용료 시간당 \$0.719(주당 \$35.95)기준 50시간까지 지원, 취학 아동의 경우 미취학 아동 지원 수준의 50% ○ 보육 비용 환급(child care rebate): 소득자산 조사 없는 보편 지원 - 인가보육시설 서비스 이용 비용의 50% 환급(아동 1인당 연간 \$7,613 한도) ○ JET보육비 지원 * CCR 또는 JET 보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CCB를 청구해야 하며, CCB 심사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CCR과 JET보육비 지원 자격 판단 * 단, 2018년 7월 2일부터 CCB와 CCR을 대체하는 보육비 보조금 제도 시행 예정. ○ 기타 가족지원 급여 - 고립아동 지원(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e)(소득/자산조사): boarding allowance, second	최연소 자녀 연령기준	2주 최대지급액 (호주\$)	연간 최대지급액	0~5세	155.54	4,412.65	5~18세	108.64	3,190.10
최연소 자녀 연령기준	2주 최대지급액 (호주\$)	연간 최대지급액													
0~5세	155.54	4,412.65													
5~18세	108.64	3,190.10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병 지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home allowance, distance education allowance,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 사회보장수급자 추가 지원(additional assistance to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energy supplement, health care card, pension supplement, pensioner concession card, pharmaceutical allowance, remote area allowance, rent assistance, telephone allowance, utilities allowance						
스페인 (38년~, 1.320)	소득기준 적용	- 18세 미만 - 중증장애 - 장애 없음 - 한부모 - 가구 소득 - 연령 - 장애 - 수급 (MISSOC 기준)		○ 아동수당(EC 기준)	조세(tax-financed)	○ 다태아 출산/임양 보조금(EC 기준) - 쌍둥이(또는 2명 임양): €2,830.8 - 세쌍둥이(또는 3명 임양): €5,661.6 - 네쌍둥이(또는 4명 이상 임양): €8,492.4						
				아동 1인당 월 지급액								
				<table><tr><th>나이</th><th>일반</th><th>장애 (33% 이상)</th></tr><tr><td>18세 미만</td><td>월 3.1만 원(€24.25)</td><td>월 10.7만 원(€83.33)</td></tr><tr><td>18세 이상</td><td>장애(65% 이상) 장애(75% 이상)</td><td>장애(75% 이상)</td></tr><tr><td></td><td>47.4만 원(€368.90)</td><td>71.1만 원(€553.40)</td></tr></table>			나이	일반	장애 (33% 이상)	18세 미만	월 3.1만 원(€24.25)	월 10.7만 원(€83.33)
나이	일반	장애 (33% 이상)										
18세 미만	월 3.1만 원(€24.25)	월 10.7만 원(€83.33)										
18세 이상	장애(65% 이상) 장애(75% 이상)	장애(75% 이상)										
	47.4만 원(€368.90)	71.1만 원(€553.40)										
				※ 대가족, 한부모 또는 장애가 있는 모의 경우, 일시불 128.4만 원 (€1,000) 지급(EC 기준)								
				※ 아동수당 수급 시 기타 가족관련 지원 수당 수급예제 (MISSOC 기준) - 연 가족소득은 €11,576.83을 초과해서는 안 됨. 3 자녀인 경우 이 기준은 €17,423.84로 증가하고 이 후 1자녀 추가될 때마다 €2,822.18씩 증가. - 장애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소득 조사 해당 안 됨.								
벨기에 (30년~, 1.74)	보편적 적용 (EC 기준)	- 18세 미만 - 학업 / 직업훈련 - 출생 - 기본수당 - 첫째: 월 11.8만 원(€92.09) - 둘째: 월 21.9만 원(€170.39)		○ 아동수당(EC 기준) - 첫째: €1,247.58(쌍생아일 경우 각각) - 둘째: €938.66 - 임양아동당: €1,247.58	조세(tax-financed).	○ 출산보조금(EC 기준) - 첫째: €1,247,58(쌍생아일 경우 각각) - 둘째: €938.66 - 임양아동당: €1,247.58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들 자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체코 (45년~, '1530)	- 보편적 적용 - 소득조사(EC 기준)	- 교육·출입 전 또는 학업 및 학업 장애 의 경우) 26세까지 (EC 기준)	연령	○ 아동수당(EC 기준, 소득조사) - 6세 미만: 2.3만 원(€18.5, CZK 500) - 6세~15세: 2.8만 원(€22.6, CZK 610) - 15세~26세: 3.2만 원(€25.9, CZK 700)	조세(tax-financed)	○ 모성휴가(Maternity leave)(EC 기준) - 6개월 이상의 경제활동, 사회보장기여금 최소 금액 납부 이 력이 있는 임금 근로자, 실업자 및 자영업자 대상 - 임금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 6주/출산 후 9주 총 15주 후 가 휴직급여 수급은 첫 30일에 대해서는 임금의 82%(한도 없음), 3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75%(한도 적용) 지급. 2017년 1월 1일부터 1일 최대 €101.94 적용. -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3주(출산 전 1주/출산 후 2주에서 최대 12주까지(다배출산 13주) 휴가, 일정 주당 금액 지급 (17년 기준으로 전일제 €458.31, 시간제 €229.15) - 실업자의 경우, 첫 30일간 실업수당과 같은 금액+충한도임 금의 19.5%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이후는 실업수당 금액 과 같은 금액에 추가로 충한도임금의 15% 지급. 2017년 1 월 1일 기준 한도: 첫 30일간 €108.05, 이후 €101.94 ○ 부성휴가/출산휴가(Paternity leave or birth leave) - 아빠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자녀당 10일간의 아빠휴가가 주어진(출산 후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함). - 아빠휴가 기간 첫 3일은 고용주가 아빠수당을 지급하며, 나 머지 7일간의 상호보험기금(mutual insurance fund)을 통해 1일 임금(한도 €135.91 적용)의 82% 수준으로 수당 지급.
				· 셋째 및 그 이상: 월 32.6만 원(€254.40) ※ 고아: 45.4만 원(€353.76) - 연령 추가 수당(기본수당에 더하여 지급) - 6~11세 중 첫째에게 월 2.1만 원(€16.04), 그 외 4.1만 원(€31.99) · 12~17세 중 첫째에게 월 3.1만 원(€24.43), 그 외 월 6.3만 원(€48.88) · 18세 이상 중 첫째에게 월 3.6만 원(€28.16), 그 외 월 8.0만 원(€62.15) ※ 한부모, 실업, 장애, 연금수급자의 경우 · 첫째: 장애아동 13.0만 원(€100.80), 그 외 6.0만 원 (€46.88) · 둘째: 3.7만 원(€29.06) · 셋째 이후: 한부모 3.0만 원(€23.43), 그 외 0.6만 원(€5.10)		○ 출산보조금(소득조사)(MISSOC 기준) - 첫째 출산: 일시불 CZK 13,000 - 둘째 출산: 일시불 CZK 10,000 - 부모수당(parental allowance)(EC 기준, 소득조사) - 부모는 아이가 4살이 되기 전까지 최대 CZK 220,000 수 급 가능 ※ 소득조사(EC 기준) - 가구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2.4배 미만 - 가족구성원별 최저생계비 · 1번째 성인 CZK 3,140 · 2번째 성인 CZK 2,830

14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등 지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 6세 미만 아동 CZK 1,740 · 6-15세 아동 CZK 2,140 · 15-26세 아동 CZK 2,450																												
헝가리 (38년~ 1.440)	보편적 적용	- 18세 미만(아동육가) - 중등 교육/직업 훈련 20세까지 - 특수교육 23세까지 - 중증장애 가정 없음(EC 기준)	- 자녀 수 - 한 부모 여부	○ 아동수당(EC 기준) <table><tr><th>자녀 수</th><th>부모</th><th>수당(아동 1인당)</th><th>한부모</th></tr><tr><td>1명</td><td>5.0만 원(€39.2)</td><td>5.6만 원(€44.0)</td><td></td></tr><tr><td>2명</td><td>5.5만 원(€42.7)</td><td>6.1만 원(€47.5)</td><td></td></tr><tr><td>3명 이상</td><td>6.6만 원(€51.4)</td><td>7.0만 원(€54.6)</td><td></td></tr><tr><td>장애아동</td><td>9.4만 원(€75.1)</td><td>10.5만 원(€83.5)</td><td></td></tr><tr><td>장애택아동 (18세 이상)</td><td>9.5만 원(€73.9)</td><td>10.7만 원(€83.2)</td><td></td></tr><tr><td>위탁아동 ('16년 기준)</td><td>6.1만 원(€47.5)</td><td></td><td></td></tr></table>	자녀 수	부모	수당(아동 1인당)	한부모	1명	5.0만 원(€39.2)	5.6만 원(€44.0)		2명	5.5만 원(€42.7)	6.1만 원(€47.5)		3명 이상	6.6만 원(€51.4)	7.0만 원(€54.6)		장애아동	9.4만 원(€75.1)	10.5만 원(€83.5)		장애택아동 (18세 이상)	9.5만 원(€73.9)	10.7만 원(€83.2)		위탁아동 ('16년 기준)	6.1만 원(€47.5)			조세(tax-financed)	○ 출산보조금(MISSOC 기준) - 최저 노령연금의 225% 일시불: €207 - (생동이) 최저 노령연금의 300% 일시불: €276 ○ 가정양육수당(EC 기준) - 월 €82.8(자녀 수에 무관) - 3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중단한 부모에게 지급(양아는 10세 미만) - 쌍둥이의 경우 자녀 취학 전까지(약 6세)지급 ○ 다자녀 양육수당(EC 기준) - 월 €82.8×자녀 수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가장 어린 자녀가 3~8세인 경우 부모에게 지급
자녀 수	부모	수당(아동 1인당)	한부모																															
1명	5.0만 원(€39.2)	5.6만 원(€44.0)																																
2명	5.5만 원(€42.7)	6.1만 원(€47.5)																																
3명 이상	6.6만 원(€51.4)	7.0만 원(€54.6)																																
장애아동	9.4만 원(€75.1)	10.5만 원(€83.5)																																
장애택아동 (18세 이상)	9.5만 원(€73.9)	10.7만 원(€83.2)																																
위탁아동 ('16년 기준)	6.1만 원(€47.5)																																	
룩셈부르크 (47년~ 1.5)	보편적 적용	- 18세 미만 - 학생/장생/25세 미만 (EC 기준)	- 연령 연령	○ 아동수당(EC+MISSOC 기준) - 균일수당: 아동당 34.0만 원(€265) - 연령 추가 수당 · 6~11세: 추가 월 2.6만 원(€20) · 12세 이상: 추가 월 6.4만 원(€50) - 중증장애아동 추가 수당(MISSOC 기준): 월 25.7만 원(€200)	조세(tax-financed)	○ 출산수당(EC 기준) - €580.03를 3년 할부 지급 ○ 육아휴직수당(EC 기준) - €1,998.59~€3,330.98(육아휴직 전 12개월 간 평균근로시간에 의함) ○ 임파수당(보편급여), 최저소득보조(양공부조), 특별수당(양공부조) 등(SSA 기준)																												
아이슬란드 (46년~ 1.990)	보편적 적용 - 자산조사 (EC 기준)	- 출생 순위 - 18세 미만 (EC 기준) 모여부 (영유아 추가수당 ※ 0~6세 특별추가 수당: 월 10,239.9)	- 출생 순위 - 소득 - 한부모 여부 (영유아 추가수당 ※ 0~6세 특별추가 수당: 월 10,239.9)	○ 아동수당(소득 차등) 최대 금액(EC 기준) - 양부모 자녀 · 첫째: 월 16.5만 원(€128.4, ISK 17,152.8) · 둘째 이상: 월 19.6만 원(€152.9, ISK 20,423.9) - 한부모 자녀 · 첫째: 월 27.5만 원(€213.9, ISK 28,578.3) · 둘째 이상: 월 28.2만 원(€219.4, ISK 29,315.6) - 둘째 이상: 월 28.2만 원(€219.4, ISK 29,315.6) · 0~6세 특별추가 수당: 월 9.8만 원(€76.7, ISK 10,239.9)	○ 조세(국세청 지급) - 부부합산 · €40,422, 한부모인 경우 · €20,211 초과 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액 지급 - 0~6세 특별수당의 경우 기준 소득 초과 시 4% 일 관 감액 - 수평적: 부부 공동분할	○ 아동교육수당(SSA 기준) - 18세 이상 20세 미만 학생 또는 직업훈련 시 월 €220.6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증 지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이집트 (44년~ 1940)	- 보편적 적용 (EC 기준)	- 만 16세 미만 - 학 생 군인 18세가 지 (EC 기준)	○ 아동수당(또는 아동 무조건, MISSOC+EC 기준) - 아동당 월 18.0만 원(€140) - 쌍둥이인 경우 1.5배, 3쌍둥이 이상 2배	아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 출산수당(MISSOC 기준) - DELFIQNF €10.16 ○ 모성수당(EC 기준) - 26주간 주당 €235 ○ 부성수당(EC 기준) - 최대 2주간 주당 €235 ○ 한부모가족수당(소득조사)(EC 기준) - 1주 당 최대 €193 - 부양자녀 추가보조 자녀 1인당 €29.8 ○ 가족소득 보조(소득조사)(EC 기준) - 일정 소득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소 주당 €20 ○ 가정양육수당 (domiliary care)(SSA 기준) - 주 7일 집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해 월 €309.5 - 주 2-6일 집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해 월 €154.75 ○ 직장복귀수당(SSA 기준) - 첫째 자녀 수 4명까지 자녀 1인 주당 €29.8, 두 번째 해 1인 주당 €14.9 ○ 기초생활보조수당(소득조사)(SSA 기준)	○ 출산수당(MISSOC 기준) - 출산 또는 입양에 대해 각(canton)에 따라 일사불 €793~ €1,867 ○ 임신부수당(maternity benefit)(EC 기준) - 산후 14주까지 가임자 평균소득의 80%(일일 최대 CHF 196) ○ 기타 가족수당(16세 SSA 기준) - 직업훈련수당(vocational training allowance) - 가구수당(household allowance)
스위스 (52년~ 1940)	- 연방 프로그램 - 연방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 - 즉 프로그램: 비농업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근로자인 배우자, 미망인	- 16세 미만 능력 상실 인 군인	○ 아동수당(EC 기준) - 연방 프로그램(농업 부문) · 저지대 거주자: 아동당 월 22.9만 원(€183.5, CHF 200) · 산악지대 거주자 25.2만 원(€201.8, CHF 220) · 주프로그램(비농업 부문) · 아동당 월 22.9만 원(€183.5, CHF 200)(최저 법정 수당), 추에 따라 그 이상 지급	○ 사회보험형(출처: ??) - 가입자: 없음(단, 발레 주) - 자영업자: 추와 기금별로 총 소득의 0.3%~3.4%, 자영 농업자는 없음(연방 프로그램). - 정부: 농업 근로자에 대한 잔여 비용과 자영 농업자 총 비용의 66.7%는 연방, 33.3%는 주 정부가 부담.	○ 출산보조금(birth gram)(MISSOC 기준) - 출산 또는 입양에 대해 각(canton)에 따라 일사불 €793~ €1,867 ○ 임신부수당(maternity benefit)(EC 기준) - 산후 14주까지 가임자 평균소득의 80%(일일 최대 CHF 196) ○ 기타 가족수당(16세 SSA 기준) - 직업훈련수당(vocational training allowance) - 가구수당(household allowance)	○ 출산수당(MISSOC 기준) - 출산 또는 입양에 대해 각(canton)에 따라 일사불 €793~ €1,867 ○ 임신부수당(maternity benefit)(EC 기준) - 산후 14주까지 가임자 평균소득의 80%(일일 최대 CHF 196) ○ 기타 가족수당(16세 SSA 기준) - 직업훈련수당(vocational training allowance) - 가구수당(household allowance)
멕시코 (73년~ 2015)			※ 일반적인 아동수당에 해당되는 수당 없음.		○ 가족수당 구성 - 탁아소 서비스(day care center) - 본인보조금 - propera cash grant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등 지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자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미국 (79년, 1.843)	-	-	-	※ 일반적인 아동수당 없음		※ 연방, 주, 지방 정부별로 운영되는 80개의 자산조사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현금 수당, 사회 서비스, 학업 보조, 주거 비 보조, 직업훈련, 의료 지원, 에너지와 유틸리티 지원, 보육 등 프로그램 제공 - 자산조사, 저소득층 한정 지원 - 자녀 수, 혼인 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Earned Income Tax Credit이 연방 조세 체계를 통해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에 환급 가능 크레딧 제공함. 환급액은 소득수준, 혼인 상태, 자녀 수 등에 따라 변동함: <table><tr><th>자녀 수</th><th>혼인 상태별 연소득 기준 (2015년 기준)</th><th>환급액 범위</th></tr><tr><td>0자녀</td><td>미혼 \$14,880까지 혼인 \$20,430까지</td><td>월 4.9만 원(€38.1)까지</td></tr><tr><td>최소</td><td>미혼 \$47,955</td><td>월 61.2만 원(€472.1)까지</td></tr><tr><td>3자녀</td><td>혼인 \$53,505</td><td></td></tr></table>	자녀 수	혼인 상태별 연소득 기준 (2015년 기준)	환급액 범위	0자녀	미혼 \$14,880까지 혼인 \$20,430까지	월 4.9만 원(€38.1)까지	최소	미혼 \$47,955	월 61.2만 원(€472.1)까지	3자녀	혼인 \$53,505	
자녀 수	혼인 상태별 연소득 기준 (2015년 기준)	환급액 범위																
0자녀	미혼 \$14,880까지 혼인 \$20,430까지	월 4.9만 원(€38.1)까지																
최소	미혼 \$47,955	월 61.2만 원(€472.1)까지																
3자녀	혼인 \$53,505																	
칠레 (37년-, 1.785)	- 고용연계형+ 사회부조형+ 소득조사 - 공공 부문과 사회 부문 근로자 - 노령 및 질병 수당에 기여하고 있는 자영업자 - 연금 수급자 - 산업제해, 실업 수당 수급자	- 18세 미만 학생 24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아 소득 제한 없음. (15년 SSA 기준)	- 장애아 소득	○ 가족수당(15년 SSA 기준) - 소득 262,326 pesos 이하: 아동당 월 1.8만 원(€13.9) - 소득 262,327~383,156 pesos: 아동당 월 1.1만 원(€9.5) - 소득 383,157~597,593 pesos: 아동당 월 0.3만 원(€2.7) - 장애아동의 경우 월 수당액 2배	조세(tax-financed)	○ 임신부수당(maternity allowance)(15년 SSA 기준) - 고용연계+소득조사 - 임신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가족수당 지급 ○ 기타수당(15년 SSA 기준) - 가족보조금: 사회부조형 - 임신부보조금: 사회부조형 - Ingreso Etico Familiar - 청년고용보조금 - 여성근로보조금 - 영구적 가족보조금 - Chile Crece Contigo												

국가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들 자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자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 범원에 의해 성인에게만 적용 자 등					
에스토니아 (22년~ '15년, 1,540)	보편적 적용	- 16세 미만 - 한 생 생 출생 19세 위 미만 (EC 기준)		○ 아동수당(EC 기준) - 첫째와 둘째: 아동당 월 6.4만 원(€50) - 그 이후: 아동당 월 12.8만 원(€100)	조세(tax-financed)	○ 출산수당(childbirth allowance)(EC 기준) - 한 아동 또는 쌍둥이: 일시불 €320 - 세쌍둥이 이상: 일시불 €1,000 ○ 양육수당(child care allowance)(EC 기준) - 3세 미만: 아동당 월 €38.36 - 3세~8세: 아동당 월 €19.18 ○ 장애아동수당(MISSOC 기준) - 일반 장애: 장애인 사회급여(social benefits for disabled persons)의 270% - 중증 장애: 장애인 사회급여의 315% ○ 한부모 수당(EC 기준) - 월 €19.18 ○ 위탁양육수당(EC 기준) - 월 €240 ○ 고아 독립 수당(EC 기준) - 일시불 €383.60 ○ 태가복수당(EC 기준) - 아동 7명 이상인 경우 월 €168.74 ○ 임양수당(EC 기준) - 일시불 €320 ○ 부모수당(parental benefit)(MISSOC 기준) - 435일까지 기준임금의 100% ○ 임신복수당(maternity benefit)(EC 기준) - 140일까지 기준임금의 100% ○ 모성급여(maternity benefit)(SSA 기준) - 근로 중단 이전 3개월간 일평균 순임금의 100%를 14주간 지급: 7주간 부분 지급 ○ 기타가족수당(SSA 기준) - 소득 지원수당(자산조사)
이스라엘 (59년~ 3,090)	보편적 적용	18세 미만		○ 가족수당(SSA 기준) - 2003.6.1. 이전 출생 · 첫째: 월 4.5만 원(€35.3) · 둘째와 셋째: 월 5.7만 원(€44.2) · 넷째: 월 10.2만 원(€79.1)	○ 사회보험형(SSA 기준) - 가입자: 0%(단, 비근로 소득의 경우 전국평균임 금 60% 초과분의 1.1%~ 2.64%)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당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등 지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 다섯째 및 그 이후: 월 10.7만 원(€83.3) - 2003.6.1. 이후 출생 · 첫째: 월 4.5만 원(€35.3) · 둘째~네째: 월 5.7만 원(€44.2) · 다섯째 및 그 이후: 월 10.7만 원(€83.3) ※ 가족수당증액(family allowance increment) - 최소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셋째와 넷째 각각에 게 월 가족수당 기본 액(월 €32.9)의 70% 지급.	- 고8주: 전국평균임금 60% 초과분의 1.32%~2.08% - 자영업자: 전국평균임금 60% 초과분의 1.32%~2.4% - 정부, 피보험자 소득의 0.08%, 이민국에 대한 합업장려금 지원, 사회소 득부조 프로그램 비용 지 원, 전체 기여금 보조	- 생활지원(자산조사) - 학업보조금(보편적 적용)
폴란드 ('47년~ '132)	보편적 적용+ 자산조사	- 18세까 지 - 한 생 21세까 지 - 대학교 장에 아 동 24 세까지 (EC 기 준)	연령	○ 가족수당(자산조사)(EC 기준) - 5세까지: 아동당 월 2.8만 원(€21.8)까지 - 6~18세: 아동당 월 3.6만 원(€28.4)까지 - 19~24세: 아동당 월 4.0만 원(€30.9)까지 ※ 장애아동수당(EC 기준) · 장애아동 훈련과 재활 추가 수당(training and rehabilitation of disabled child supplement): 4세까지 아동당 월 2.6만 원(€20.6), 5세에서 24세 까지 아동당 월 3.2만 원(€25.2) · 그 외 의료돌봄수당(medical care allowances), 특 별간호수당(special attendance allowance) 등 ※ 한부모 아동 추가 수당(EC 기준) · 아동당 월 5.7만 원(€44.2), 가구 당 월 11.4만 원 (€88.5)까지 ·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당 월 8.0만 원(€62.6), 가구 당 월 16.1만 원(€125.1)까지	조세(tax-financed)	○ 출생 일시불 추가 수당(childbirth lump-sum as supplement to family allowance)(MISSOC 기준) - 아동당 €229.2 일시불 ○ 출생 일시불 보조금(one-off childbirth grant)(MISSOC 기준) - 아동당 €229.2 일시불 ○ 육아휴직 보조금(child-raising supplement during child- raising leave)(EC 기준) - 월 €91.7 ○ 아이돌봄수당(child-minding allowance)(MISSOC 기준) - 월 임금의 80% ○ 학기수당(commencement of a school year supplement) (MISSOC 기준) - 일시불 €23 ○ 그 외 school travel and board supplement(자산조사) 등
슬로바키아 ('45년~ '1370)	보편적 적용	- 16세 미만 - 만성질 환 아동 18세 미만 - 학생 또		○ 아동수당(MISSOC 기준) - 아동당 월 3.0만 원(€23.52)	조세(tax-financed)	○ 출산수당(birth allowance)(MISSOC 기준) - 셋째까지: 임시불 €829.86 - 넷째 이후: 임시불 €151.37 - 세 명 이상 다태아: 아동당 임시불 금액 50% 증가 ○ 양육수당(child care allowance)(MISSOC 기준) - 수당은 비용에 의존 - 공공보육: 월 €280까지

국가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들 자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는 장에 아 동 2.5 세 미만 (MISSOC 기준)				- (지방자치 또는 주) 학교시설 등록 보호시설: 월 €80까지 -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민간인(예: 조부모): 월 €41.1 ○ 다테아 출산 수당(multiple birth allowance)(MISSOC 기준) - 연 €110.36 ○ 육아휴직 수당(parental allowance)(MISSOC 기준) - 월 €203.20(다태 출산의 경우 아동당 25% 증가)
				○ 아동수당('16년 MISSOC 기준) - 가구소득이 국가 평균 순소득 18% 이하 · 첫째: 월 14.7만 원(€114.31) · 둘째: 월 16.1만 원(€125.73) · 셋째 이후: 월 17.6만 원(€137.18) - 가구소득이 국가 평균 순소득 18~30% · 첫째: 월 12.6만 원(€97.73) · 둘째 이후: 월 13.9만 원(€108.04) · 셋째 이후: 월 15.2만 원(€118.28) - 가구소득이 국가 평균 순소득 30~36% · 첫째: 월 9.6만 원(€74.48) · 둘째 이후: 월 10.7만 원(€83.25) · 셋째 이후: 월 11.8만 원(€91.98) - 가구소득이 국가 평균 순소득 36~42% · 첫째: 월 7.5만 원(€58.75) · 둘째 이후: 월 8.6만 원(€67.03) · 셋째 이후: 월 9.7만 원(€75.47) - 가구소득이 국가 평균 순소득 42~53% · 첫째: 월 6.2만 원(€48.04) · 둘째 이후: 월 7.2만 원(€56.06) · 셋째 이후: 월 8.2만 원(€64.03) - 가구소득이 국가 평균 순소득 53~64% · 첫째: 월 3.9만 원(€30.44) · 둘째 이후: 월 4.9만 원(€38.10) · 셋째 이후: 월 5.9만 원(€45.71) - 아동이 중등교육 중인 경우, 가구소득이 국가 평균 순	조세(tax-financed)	○ 출산수당(소득조사)(MISSOC 기준) - 일사불 €280 ○ 대가족수당(소득조사)(MISSOC 기준) - 3자녀 연 €395, 4자녀 이상 연 €480
슬로베니아 ('49년-, 1.580)	보편적 적용	- 18 세 미만	- 소 득 수 준 - 자 녀 수			

국가 (관련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차등 지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 2세 이 상 15 세 미 만 - 학 생 19세 미만; 장애아 18세 미만 (MISSOC 기준)		소득 53~56% · 첫째: 월 3.9만 원(€30.44) · 둘째: 월 4.9만 원(€38.10) · 셋째 이후: 월 5.9만 원(€45.71) - 아동이 중등교육 중인 경우, 가구소득이 국가 평균 순 소득 56~64% · 첫째: 월 5.6만 원(€43.44) · 둘째: 월 6.6만 원(€51.10) · 셋째 이후: 월 9.1만 원(€71.17) ※ 한부모인 경우 위의 수당 30% 증가 ※ 장애아동수당(16년 MISSOC 기준) - 특별양육수당: 월 €100,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 동: 월 €200 - 소득 손실 부분 보상(partial payments for loss of income): 월 €734.15		○ 출산수당(MISSOC 기준) - 아동당 일서불 €421.17 ○ 양육수당(균일수당)(child-raising allowance)(MISSOC 기준) - 18개월 미만 아동: 월 €171. 18개월~2년 아동: €42.69 - 양육수당 추가 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MISSOC 기준) - 18세까지 월 €213.43 ○ 부모수당(parents' benefits)(MISSOC 기준) - 아동 1세까지 반기를 위한 경우, 평균 보월 기여 임금의 60% - 아동 18개월까지 반기를 위한 경우, 평균 보월 기여 임금의 43.75% ○ 보육수당(care benefit)(SSA 기준) - 월 €49.80 ○ 기타 수당(SSA 기준) - 임양수당 - 법정 보호자 수당 - 법정 보호자 의무수당
라트비아 (90년~ 1.640)	보편적 적용 (MISSOC 기준)			○ 주 가족수당(state family benefits)(MISSOC 기준) - 1자녀: 월 1.5만 원(€11.4) - 2자녀: 월 2.9만 원(€22.8) - 3자녀: 월 4.4만 원(€34.1) - 4자녀 이상: 월 5만 원(€45.5) 조세(tax-financed) (SSA 기준)		

국가 (권리법 최초 시행, '15년 출산율)	수급 자격/과세여부	대상 연령	치들 지원 고려 사항	아동당 수당 금액	아동수당 재원/과세여부/기타	기타 아동지원 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 2016.7.1.부터 기존 CCTB & ucbs를 대체 하여 Tax credit 형태로 주어짐. - CCB canada child benefit - *16년 7월 기준 자녀장려금 및 통합아동 양육보조를 대체. 기존제도와 달리 저소득층과 일반 소득층은 상대 미만 18세(연방정부 기준)로 많은 양의 고소득층은 덜 받는 구조로 변경 *2016.7.1. 이전 자격기준 CCTB(캐나다 자녀장려제) 또는 보편아동 양 육 급여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일괄 지급		- 연령 연방정부 기준(연방정부 기준) 18세 미만	○ 캐나다 연방정부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CCB) - 0~5세: 최대 월 46.7만 원(€363.9, CAD 533.3) - 6~17세: 최대 월 39.4만 원(€307.1, CAD 450) ○ 개별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주정부 아동수당제도 병행 운용 - 앨버타 아동수당(Alberta child benefit): 가구 순소득 \$41,750 미만, 첫째아 \$92.83, 둘째아 이상 각각 \$46.41 - 유콘 아동수당(YCB):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68.33, 가구소득 \$35,000 초과 시 부분 지급 -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아동수당(NBCB): 18세 미만 아동, 첫째아 월 \$32.16, 둘째아 \$34.16, 셋째아 이상 \$36.66, 넷째 이상 \$ 39.33, 가구 순소득 \$17,397 이상 감액 지급 - 북서부권역 아동수당(Northwest Territories child benefit): 18세 미만, 가구소득과 자녀 수 및 연형 자 등 지급 1) 0~5세: 자녀 수 1명 월 \$67.91, 2명 \$122.25, 3명 \$166.41 4명 \$ 203.75, 자녀 수 추가 1인당 \$30.58추가 지급 2) 6~17세: 자녀 수 1명 월 \$54.33, 2명 \$97.83, 3명 \$133.08, 4명 \$163, 자녀 추가 1인당 \$24.41추가 지급 - Nunavut아동수당: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7.5, 가구소득 \$3,750 이상인 경우 자녀 수 반영 근로장려금 추가 지급되며 이때 가구소득 \$20,921초과 시 감액됨 - Ontario 아동수당: 18세 미만, 아동당 월 최대 \$114.83, 조정가구 순소득 \$21,037 초과 시 감액 지급 고소득층은 덜 받는 구조		- 위탁가족수당 - 위탁양육수당
캐나다 (44년, 1.6)					조세(tax-financed)	○ 출산휴가(모성휴가) 및 부모휴가 - 고용보험급여 - 출산 후 최대 52주(출산휴가 최대 15주), 보형가임 임금 수 중의 55%(17년 연간 최대 보형가임 임금 51,300달러, 휴직급여 주당 543달러) ○ 주정부 지원 - 브리티시컬럼비아(예시) · BC 가족 보너스(BC family bonus):18세 미만 자녀 양육 비 보조(저소득층 및 중산층 대상) · 가정양육수당: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 보육료 보조 대신 신청/지급

주: 1) OECD 회원 국 중 한국과 터키, 미국, 멕시코만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각국 화폐-유로화 간 환율은 Eurostat(ex.europa.eu/eurostat)의 annual exchange rates data를 이용하였고, 각국 화폐-원화 간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을 이용하였음(2017. 9. 7. 인출).

2) 유럽 국가들의 경우 2017년 EC(European Commission)를 우선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EC 상의 자료가 부재하거나 보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016년 MISSOC 자료를 이용하였음. 비유럽 국가들은 2016년 SSA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보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국(예: 호주) 공식 정부의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SSA(2015, 2016a, 2016b), EC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의 각국 정보, EC.EURYDICE(<http://webgate.ec.europa.eu/fpfis/eurydice/index.php/Countries>)의 각국 정보, PWC(<http://taxsummaries.pwc.com>)의 각국 정보.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http://www.missoc.org/INFORMATIONBASE/COMPARATIVETABLES/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earch.jsp>).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a.go.jp>)

일본 후생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hlw.go.jp/english/index.html>)

오스트리아 가족청소년부 홈페이지(<http://en.bmfi.gv.at>)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www.gov.uk>)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www.canada.ca>)

노르웨이 국세청 홈페이지(www.skatteetaten.no/en/person/Tax-Return);

노르웨이 정부 홈페이지(<https://www.nav.no/en/Home/Benefits+and+services/Family+related+benefits>)

Kela 홈페이지(<http://www.kela.fi/web/en>)

호주 휴먼서비스부 홈페이지(<http://www.humanservices.gov.au>)

첨부 1. 부모 설문 조사표

1) 어린이집 이용 가구 부모 설문조사

선문0.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시도 ()
2. 시군구 ()
3. 읍면동 ()

선문1.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설문 중단

선문2. 귀 가정에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0~2세 자녀가 있습니까?

- | | | |
|--------------|----------------------------------|-----------------------|
| ① 어린이집 이용 | ② 가정양육수당 수급 | ③ 해당 없음 |
| (☞ 질문 A1 이동) | (☞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설문지(B) 질문 B1 이동) | (☞ 조사를 중단하고 다른 가구 접촉) |

※가구 일반과 부모님의 경제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A1. 현재 응답하시는 분은 귀 가정의 0~2세 아동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기타(☞ 부모가 아닐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다른 가구를 접촉)

A1-1.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는 몇째이며, 생후 몇 개월 되었습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 ()명 중 ()째,
생후 ()년 ()개월

A1-2. 언제 처음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처음 어린이집에 등록했을 때 자녀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생후 ()년 ()개월째부터

15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1-3. 현재아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어떤 유형입니까?

- ① 가정
- ② 민간
- ③ 국공립
- ④ 기타
- ⑤ 잘 모름

A1-4. 현재 종일반에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맞춤반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종일반
- ② 맞춤반

A2.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총 몇 명입니까?

가구원수 ()명

A3. 다음의 보기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유형을 선택해주시시오.

- ① 맞벌이 (☞질문 A3-1)
- ② 아빠만 일하는 외벌이 (☞질문 A3-1)
- ③ 엄마만 일하는 외벌이 (☞질문 A3-1)
- ④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질문 A4로 이동)
- ⑤ 무응답 (☞질문 A4로 이동)

A3-1. 부모님 중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받고 있다
- ②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 ③ 앞으로 신청 예정이다
- ④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받지 못한다
- ⑤ 자격은 있지만 이용 시 불이익 등이 걱정되어 신청하지 못했다
- ⑥ 기타/무응답

A4.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A5. 귀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200만 원 미만
- ②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③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④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 ⑤ 500만 원 이상 ~ 800만 원 미만
- ⑥ 800만 원 이상

A6.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사교육비는 제외하고 현재 자녀 양육비는 매월 얼마 지출하십니까?

- ① 10만 원 미만
- ② 10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 ③ 20만 원 이상 ~ 30만 원 미만
- ④ 30만 원 이상 ~ 40만 원 미만
- ⑤ 4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 ⑥ 50만 원 이상 ~ 60만 원 미만
- ⑦ 60만 원 이상

※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최연소 자녀를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며, 가정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은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 ❖ 그리고 신정부의 아동수당 공약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0~5세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A7.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집에서 돌보는 대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양육수당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 ② 보육료 지원 금액이 양육수당보다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 ③ 육체적·정신적으로 육아가 힘들어서
- ④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 ⑤ 기타 ()

A8. 향후 6개월 이내에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볼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이다

A9. 신정부의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원 공약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양육수당을 받고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 ① 그렇다 (☞ 질문 A9-1)
- ② 아니다. 영향이 없다 (☞ 질문 A10)

15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9-1. 아동수당 도입 공약이 귀 가정의 자녀 양육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 ①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유인이 커졌다 (☞ 질문 A9-2)
-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집에서 아이를 돌볼 유인이 생겼다 (☞ 질문 A10)

A9-2. 아동수당 10만 원 지원에 추가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현재보다 얼마만큼 인상할 경우 집에서 아이를 돌보시겠습니까? (아동수당 10만 원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됩니다)

(❖아래 보기 금액을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단계별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기입합니다)

- ① 5만 원 인상
- ② 10만 원 인상
- ③ 15만 원 인상
- ④ 20만 원 인상
- ⑤ 25만 원 이상 인상
- ⑥ 영향 없음

(☞ 응답 기입 후 질문 A10)

❖ 신정부가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A10.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의 기본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 ② 양육 가정의 빈곤 완화
- ③ 출산 장려

A11.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원으로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줄어든 것이다
- ② 영향이 없을 것이다

A12.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원이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② 영향이 없을 것이다

A13.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현재의 소득 활동 또는 구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일하는 시간이나 구직 활동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 ② 늘어날 것이다
- ③ 영향이 없을 것이다
- ④ 잘 모르겠다

A14. 모든 소득계층 아동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하다
- ② 아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A15.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보다 둘째, 둘째보다 셋째에게 더 많은 금액 지원)

- ① 출생 순위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 ② 아니다. 차등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야 한다

A16.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없이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경우,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
- ② 아니다

A17. 아동수당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양육 도모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 ②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전제로 육아휴직자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 ③ (0~2세 무상보육 폐지를 전제로) 시설로 지급되는 0~2세 부모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
- ④ 아동수당이 도입되더라도 보육 지원 체계는 현행 그대로 유지
- ⑤ 기타 ()

2) 양육수당 수급 가구 부모 설문조사

선문0.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시도 ()
2. 시군구 ()
3. 읍면동 ()

선문1. 귀 가정에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0~2세 자녀가 있습니까?

- | | | |
|---|--------------------------------|-------------------------------------|
| ① 어린이집 이용
(☞ 어린이집 이용 가구 설문지
(A) 질문 A1 이동) | ② 가정양육수당 수급
(☞ 아래 질문 B1 이동) | ③ 해당 없음
(☞ 조사를 중단하고
다른 가구 접촉) |
|---|--------------------------------|-------------------------------------|

※가구 일반과 부모님의 경제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B1. 현재 응답하시는 분은 귀 가정의 0~2세 아동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 | | | |
|-------|-------|---|
| ① 어머니 | ② 아버지 | ③ 기타
(☞ 부모가 아닐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다른 가구 접촉) |
|-------|-------|---|

B1-1.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자녀는 몇째이며, 태어난 지 몇 개월입니까?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자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 ()명 중 ()째,
생후 ()년 ()개월

B2.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총 몇 명입니까?

가구원수 () 명

B3. 다음의 보기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유형을 선택해주시시오.

- ① 맞벌이 (☞질문 B3-1)
- ② 아빠만 일하는 외벌이 (☞질문 B3-1)
- ③ 엄마만 일하는 외벌이 (☞질문 B3-1)
- ④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질문 B4로 이동)
- ⑤ 무응답 (☞질문 B4로 이동)

B3-1. 부모님 중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받고 있다
- ②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 ③ 앞으로 신청 예정이다
- ④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받지 못한다
- ⑤ 자격은 있지만 이용 시 불이익 등이 걱정되어 신청하지 못했다
- ⑥ 기타/무응답

B4.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B5.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사용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B6. 귀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200만 원 미만
- ②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③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④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 ⑤ 500만 원 이상 ~ 800만 원 미만
- ⑥ 800만 원 이상

B7. 현재 자녀 양육비로 매월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 1명을 기준으로 하며, 사교육비는 제외합니다.

- ① 10만 원 미만
- ② 10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 ③ 20만 원 이상 ~ 30만 원 미만
- ④ 30만 원 이상 ~ 40만 원 미만
- ⑤ 4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 ⑥ 50만 원 이상 ~ 60만 원 미만
- ⑦ 60만 원 이상

※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최연소 자녀를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며, 가정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은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 ❖ 그리고 신청부의 아동수당 공약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0~5세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B8.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양육수당을 받고 집에서 돌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 ②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가정에서 돌보고 싶어서
- ③ 양육수당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 ④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경비가 부담이 되어서
- ⑤ 가족 내 어른이 많아 대리 양육이 가능해서
- ⑥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 ⑦ 원하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해서
- ⑧ 기타()

B9. 언제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계획이십니까?

- ① 12 개월 미만
- ② 12 개월 이상 ~ 24 개월 미만
- ③ 24 개월 이상 ~ 36 개월 미만
- ④ 만 3세
- ⑤ 만 4세
- ⑥ 만 5세 이상
- ⑦ 원하는 곳의 입학이 가능해지는 대로

B10. 신정부의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원 공약이 위와 같은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 ① 그렇다 (☞ 질문 B10-1) ② 아니다. 영향이 없다 (☞ 질문 B11)

B10-1. 아동수당 도입 공약이 귀 가정의 자녀 양육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 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유인이 커졌다 (☞ 질문 B10-2)
 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을 미루고 집에서 아이를 더 오래 돌볼 유인이 생겼다
 (☞ 질문 B11)

B10-2. 아동수당 10만 원 지원에 추가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현재보다 얼마만큼 인상할 경우 집에서 아이를 돌보시겠습니까? (아동수당 10만 원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됩니다)

(♣아래 보기 금액을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단계별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기입합니다)

- ① 5만 원 인상
 ② 10만 원 인상
 ③ 15만 원 인상
 ④ 20만 원 인상
 ⑤ 25만 원 이상 인상
 ⑥ 영향 없음

(☞ 응답 기입 후 질문 B11)

❖ 신정부가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B11.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의 기본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② 양육 가정의 빈곤 완화
 ③ 출산 장려

B12.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원으로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줄어든 것이다 ② 영향이 없을 것이다

- ① (가정양육 도모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 ②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전제로 육아휴직자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 ③ (0~2세 무상보육 폐지를 전제로) 시설로 지급되는 0~2세 부모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
- ④ 아동수당이 도입되더라도 보육 지원 체계는 현행 그대로 유지
- ⑤ 기타 ()

첨부 2. 설문 결과 기초분석

1) 부모 설문조사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만 0~2세 자녀를 둔 부모 1021명
표본 크기	어린이집 이용 가구 515,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506
조사기간 및 방법	2017년 5월 12일~2017년 5월 25일
조사 방법	전화 면접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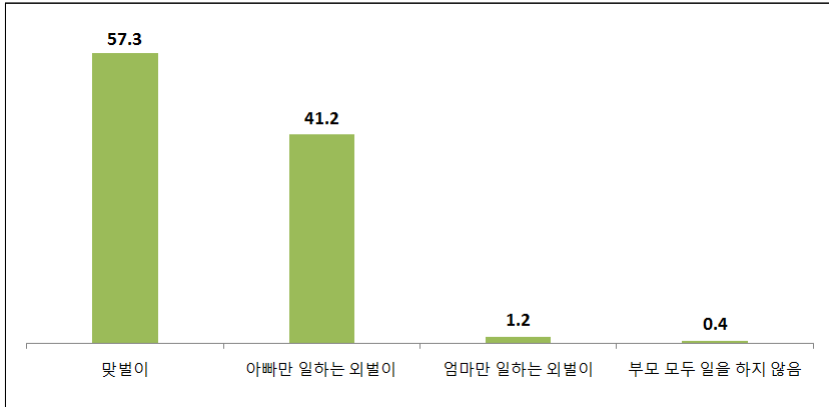
1.1) 어린이집 이용 가구 설문 결과

□ 일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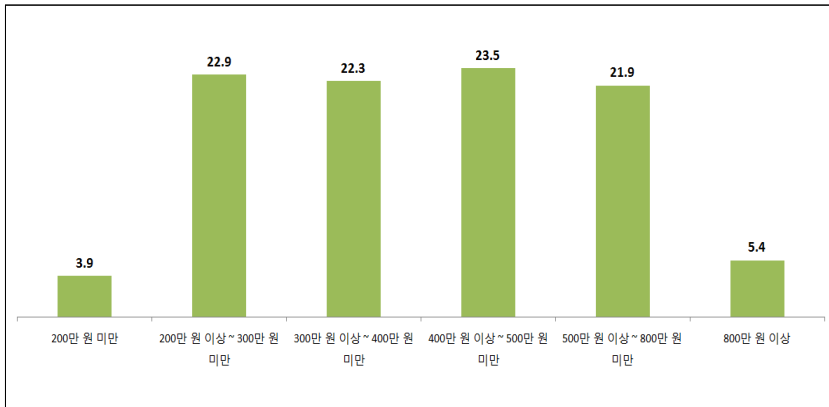
해당 아동과 응답자와의 관계를 물어보았을 때,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89.7%이고, ‘아버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10.3%였다. 0~2세 아동의 만 나이 비율을 살펴보면, ‘2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다. 0~2세 아동의 형제/자매 수의 경우, ‘2명’인 경우가 50.5%로 가장 높았으며, 출생 순위는 ‘둘째’라고 응답한 비율이 48.2%로 가장 높았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을 물어 보았을 때, ‘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6%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어린이집 형태의 경우, ‘종일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1%, ‘맞춤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9%로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의 가구원 수를 물어보았을 때, ‘4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소득 유형의 경우, ‘맞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3%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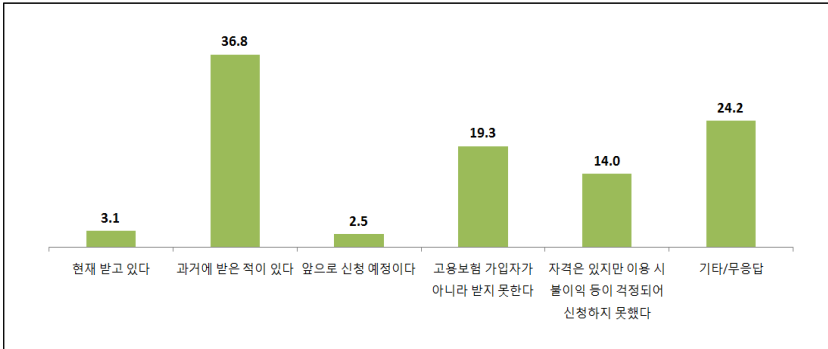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다.



□ 육아휴직 급여 수급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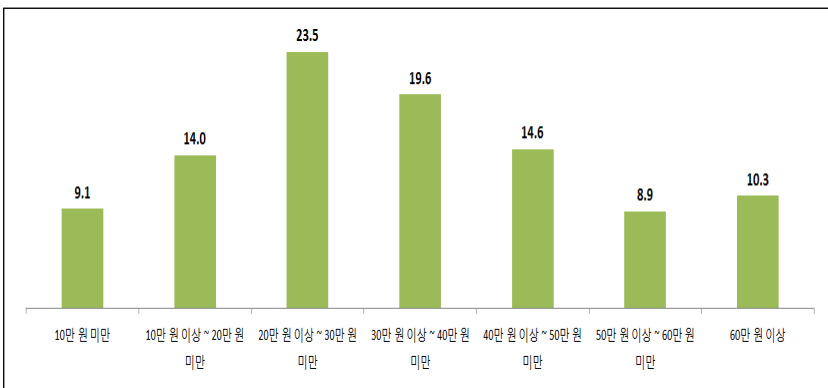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의 부모님 중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 보았을 때,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다.



□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경험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이용 경험을 물어보았을 때,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의 사교육비를 제외한 양육비를 물어보았을 때, ‘20만 원 이상 ~ 3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다.



□ 어린이집 이용 이유

현재 0~2세 아동을 집에서 돌보는 대신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육체적, 정신적으로 육아가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가장 높았다(단, 기타 보기 제외).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육아가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의 나이, 종일반/맞춤반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단, 기타 보기 제외).

□ 향후 자녀 양육 계획

향후 6개월 이내에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이었다. 아동의 나이별로 살펴보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세 아동의 가구’에서 1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일반/맞춤반 여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춤반 가구’가 8.1%로 ‘종일반 가구’(5.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만 원 미만의 가구’가 1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신정부의 아동수당 지원 공약의 영향

신정부의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원 공약이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8.7%이었다. 아동의 나이별로 살펴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세 아동의 가구’가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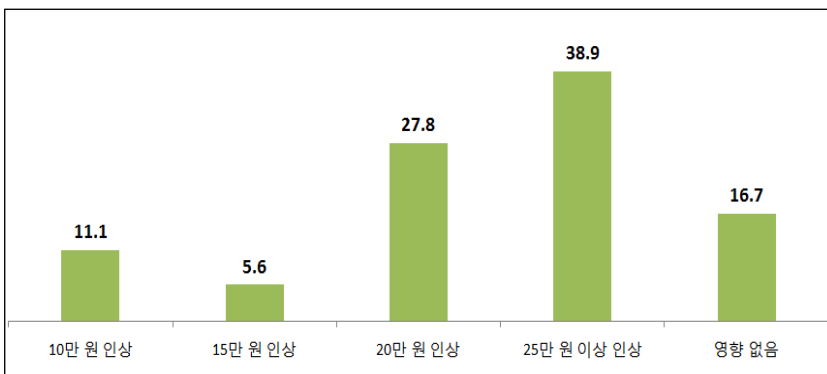
종일반/맞춤반 여부에 따라 보았을 때,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춤반 가구’가 11.8%로 ‘종일반 가구’(6.5%)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보았을 때,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만 원 미만의

가구'가 1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수당 도입 공약이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그렇다고 답한 가구 46)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유인이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40.0%이었다. 아동의 나이별로 보았을 때,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유인이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세 아동의 가구'가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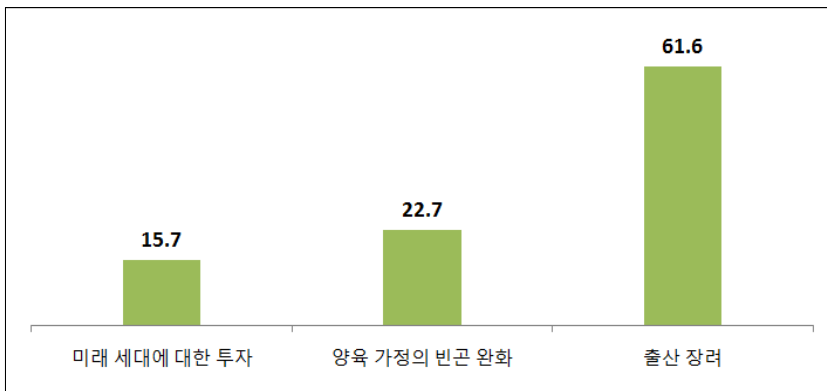
다음으로 종일반/맞춤반 여부에 따라 보았을 때,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유인이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춤반 가구'가 42.3%로 '종일반 가구'(36.8%)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보았을 때,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유인이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만 원 미만의 가구'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유인이 커졌다고 응답한 가구에 한하여, 아동수당 10만 원 지원에 추가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현재보다 얼마만큼 인상할 경우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25만 원 이상 인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세 아동을 둔 3가구를 제외한 가구에서는 '25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아동의 나이, 종일반/맞춤반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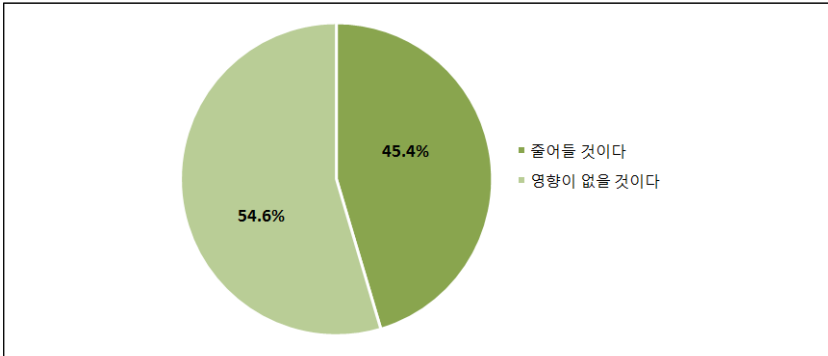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출산 장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6%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출산 장려’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의 나이, 종일반/맞춤반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아동수당 지원의 영향: 양육 부담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원과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줄어들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였다. 아동의 나이별로 물어보았을 때, ‘줄어들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0세 아동의 가구’가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일반/맞춤반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줄어들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종일반 가구’가 47.6%로 ‘맞춤반 가구’(4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보았을 때, ‘줄어들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5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의 가구’에서 응답한 비율이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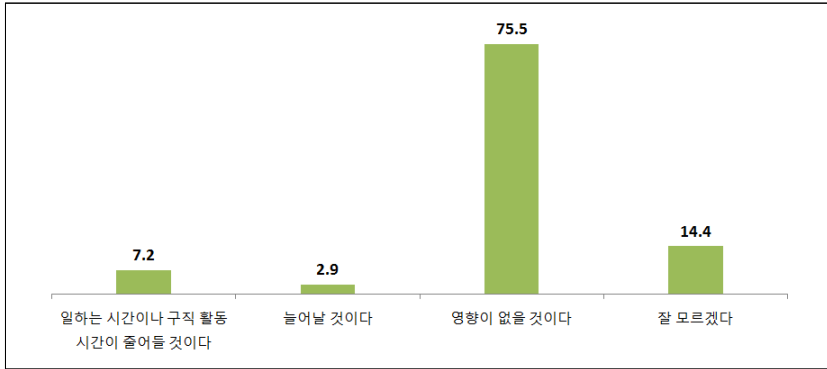
□ 아동수당 지원의 영향: 출산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원이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였다. 아동의 나이별로 보았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0세 아동의 가구’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일반/맞춤반 여부에 따라 보았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종일반 가구’가 32.3%로 ‘맞춤반 가구’(28.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보았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만 원 미만의 가구’에서 응답한 비율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아동수당 지원의 영향: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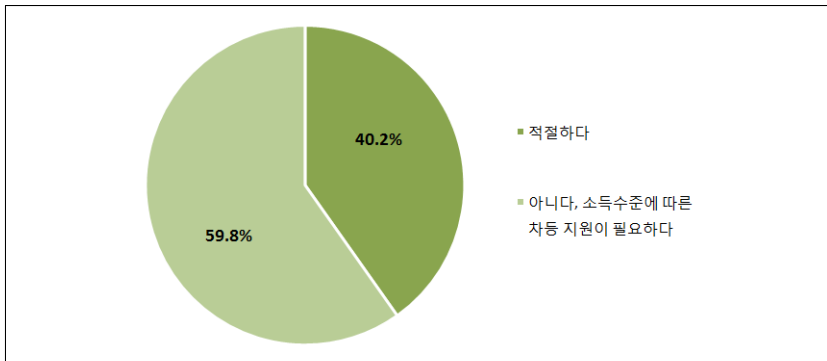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현재의 소득 활동 또는 구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의 나이, 종일반/맞춤반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 균일수당 지원의 적절성

모든 소득계층 아동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2%였다. 아동의 나이 별로 보았을 때,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세 아동의 가구'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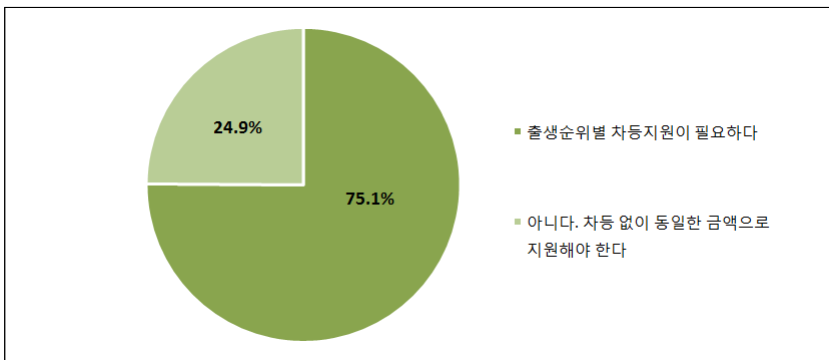
종일반/맞춤반 여부에 따라 보았을 때,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종일반 가구'가 40.8%로 '맞춤반 가구'(39.4%)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보았을 때,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의 가구'에서 응답한 비율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나이 별로 보았을 때,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0세 아동의 가구’가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일반/맞춤반 여부에 따라 보았을 때,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종일반 가구’가 75.5%로 ‘맞춤반 가구’(74.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보았을 때,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만 원 미만의 가구’에서 응답한 비율이 8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아동수당 지급 시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생각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없이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경우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4%였다.

아동의 나이별로 보았을 때,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세 아동의 가구’가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일반/맞춤반 여부에 따라 보았을 때,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

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종일반 가구'가 20.7%로 '맞춤반 가구'(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보았을 때,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 응답한 비율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현행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체계 개선에 관한 생각

'아동수당이 도입되더라도 보육 지원 체계는 현행 그대로 유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더라도 보육 지원 체계는 현행 그대로 유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의 나이, 종일반/맞춤반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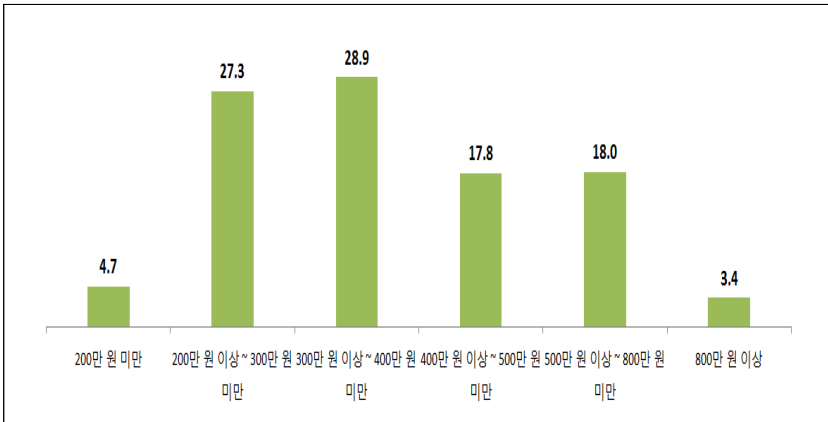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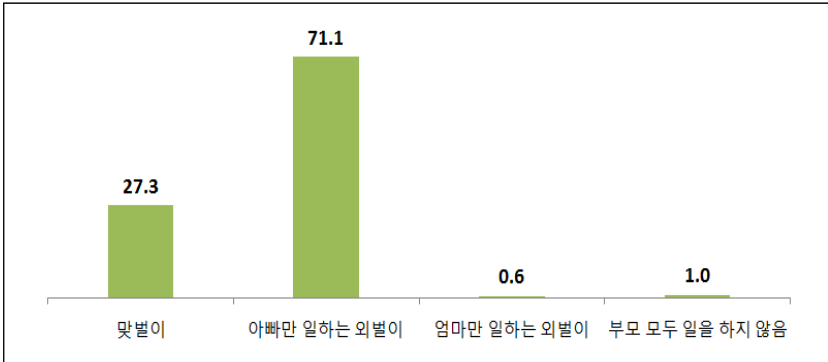
1.2)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

□ 일반 특성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0~2세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해당 아동과 응답자와의 관계를 물어보았을 때,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70.0%이고, '아버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30.0%이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아동의 만 나이를 물어 보았을 때, '0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아동의 형제/자매 수를 물어보았을 때, '1명'이라는 비율이 52.2%로 가장 높았다. 출생 순위의 경우, '첫째'라고 응답한 비율이 54.7%로 가장 높았다. 가구원 수를 물어보았을 때, '3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0%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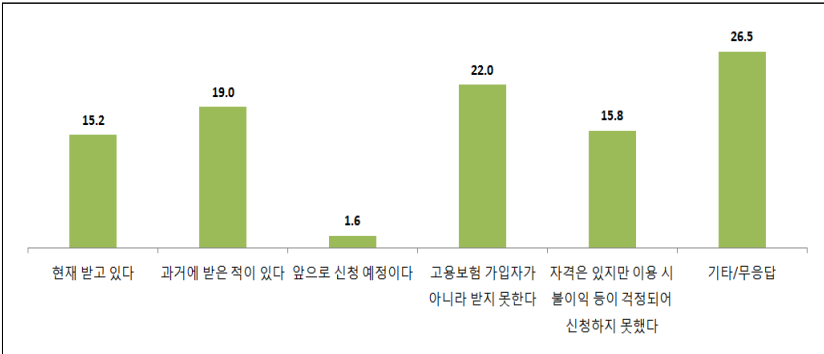
그리고 현재 가구소득 유형을 물어 보았을 때, '아빠만 일하는 외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1%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물어보았을 때,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9%로 가장 높았다.



□ 육아휴직 급여 수급 경험

-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가구 아동의 부모님 중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 보았을 때,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0%로 가장 높았다(기타/무응답 제외).

17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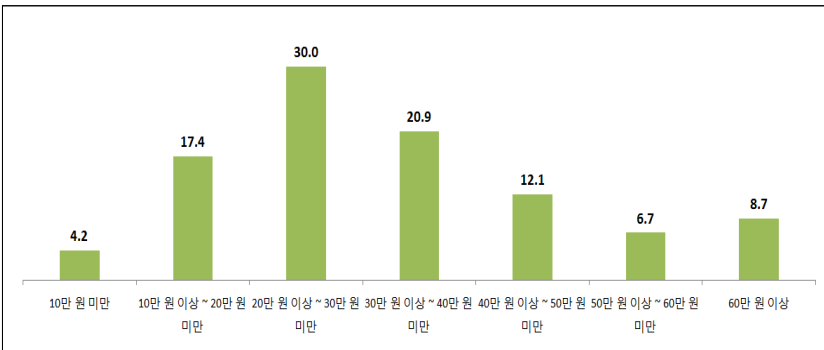


□ 시간제 서비스 이용 경험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가구에게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이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이었다. 또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이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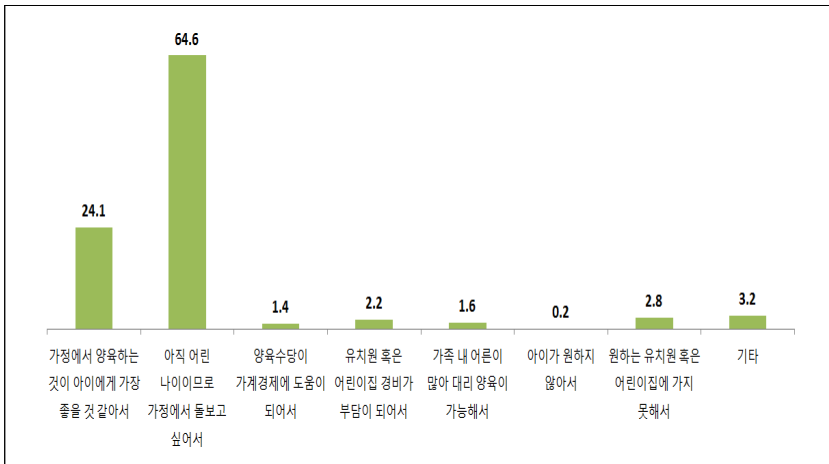
□ 양육비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구에게 아동의 사교육비를 제외한 양육비를 물어보았을 때,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0%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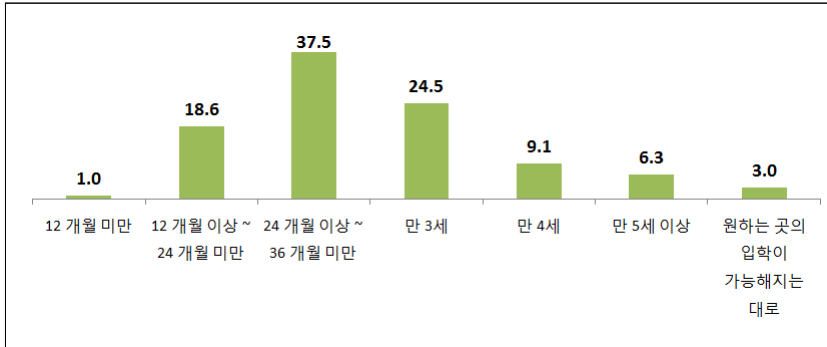
□ 가정 양육 이유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가구에게 0~2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양육수당을 받고 집에서 돌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가정에서 돌보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아동의 나이, 월평균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계획

현재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가구에게 0~2세 아동을 언제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계획인지 물어보았을 때,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아동의 나이, 월평균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대체로 높게 나타남



□ 신정부의 아동수당 지원 공약의 영향

아동수당 도입 공약이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는지 물어보았을 때,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7.6%이었다. 아동의 나이별로 보았을 때,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세 아동의 가구’가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800만 원 이상의 가구’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아동수당 도입 공약이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결정에 미친 영향(양육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 89가구)

아동수당 도입 공약이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물어보았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유인이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55.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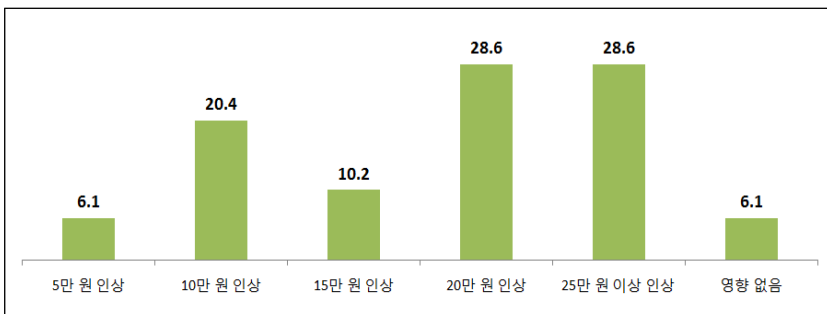
아동의 나이별로 보았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유인이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세 아동 가구’가 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보았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유인이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만 원 미만의 가구’가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정양육수당을 얼마만큼 인상할 경우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것인지에 관한 의향(어린이집 이용 유인이 크다고 답한 49가구)

아동수당 10만 원 지원에 추가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현재보다 얼마만큼 인상할 경우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20만 원 인상’이라는 응답과 ‘25만 원 이상 인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동일하게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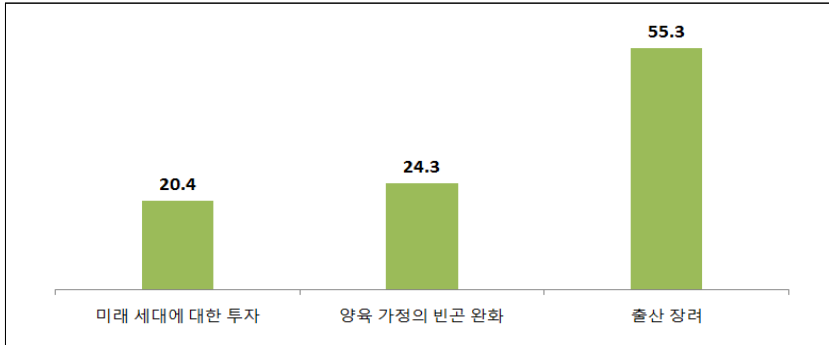
아동의 나이별로 보았을 때, ‘20만 원 인상’이라는 응답은 ‘1세 아동의 가구’에서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만 원 이상 인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세 아동의 가구’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보았을 때, ‘20만 원 인상’(50.0%)이라는 응답과 ‘25만 원 이상 인상’(50.0%)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800만 원 이상의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아동수당 제도 도입 이유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출산 장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3%로 가장 높았다. ‘출산 장려’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의 나이, 월평균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아동수당 지원의 영향: 양육 부담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원으로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줄어들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4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나이 별로 보았을 때, ‘줄어들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1세 아동의 가구’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보았을 때, ‘줄어들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만 원 미만의 가구’에서 응답한 비율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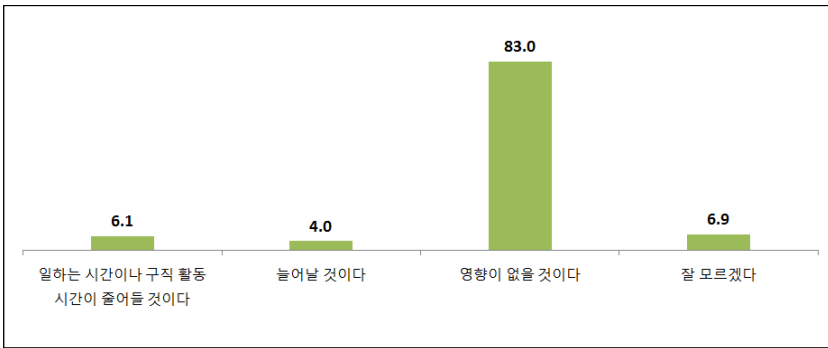
□ 아동수당 지원의 영향: 출산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원이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30.6%이었다.

아동의 나이 별로 보았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1세 아동의 가구’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보았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만 원 미만의 가구’에서 응답한 비율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아동수당 지원의 영향: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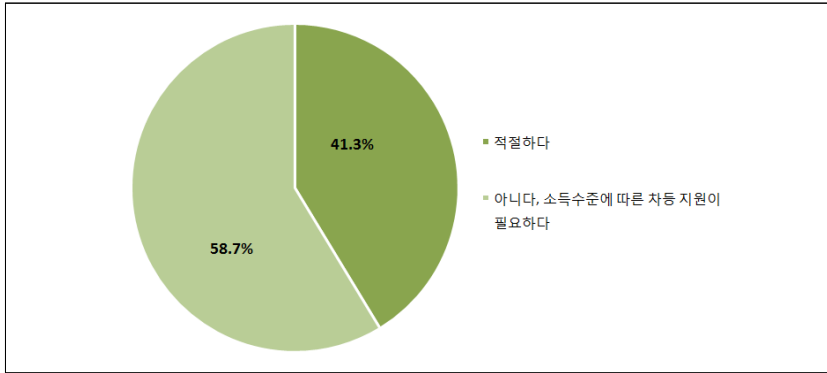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현재의 소득 활동 또는 구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응답 비율은 아동의 나이, 월평균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균일수당의 적절성

모든 소득계층 아동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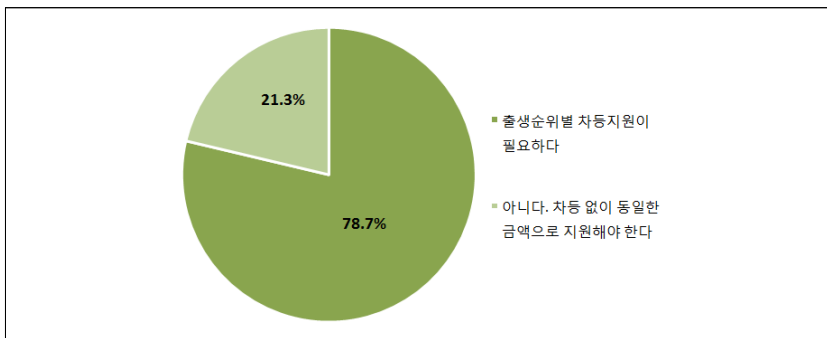
아동의 나이 별로 보았을 때,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세 아동의 가구’가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보았을 때,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0만 원 이상의 가구’에서 응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차등 지급의 필요성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출생 순위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나이 별로 살펴보면, '출생 순위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세 아동의 가구'가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출생 순위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의 가구'에서 응답한 비율이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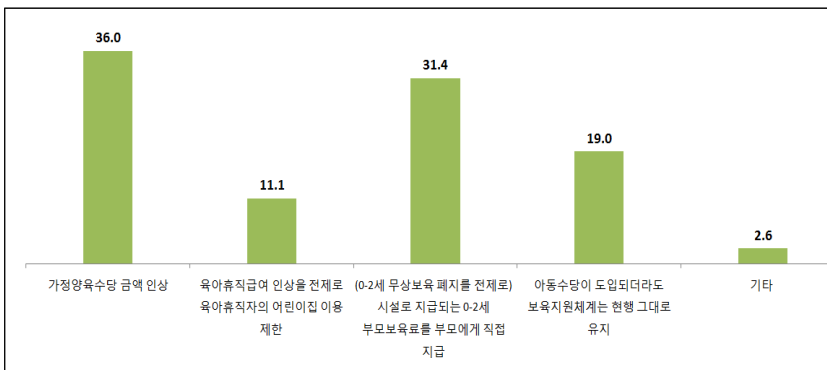
□ 아동수당 지급 시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생각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없이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경우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나이별로 살펴보면,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세 아동의 가구’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0만 원 이상의 가구’에서 응답한 비율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현행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체계 개선에 관한 생각

현행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비율은 아동의 나이, 월평균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